

정책연구자료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2008. 3

이 기 형

보험연구원

머 리 말

현대 산업사회에서 경제주체들은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많은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환경과 지구촌 환경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환경오염 사고는 일반적인 다른 사고에 비해 손해의 광범위성, 피해 복구의 장기간 소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민법에 의한 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원인입증을 하기 때문에 보상 받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 독일 등 국가들의 경우 책임당사자에게 엄격책임부과 및 입증책임 전환, 보험가입 등의 재무적 대책 의무화 등을 담은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5조에서 국민들의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44개 환경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및 오염지정화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재무적 대책을 규정한 법률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의 활용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과 같이 환경보험이 리스크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구제 및 오염지정화에 대해 유발자에게 엄격책임 부과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한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보험산업에서는 다양한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 개발, 리스크평가 및 효율산출을 위한 관련통계의 체계적인 집적과 전문가 양성 필요성, 보험가입 유인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나 동 민

목 차

요약	9
I. 서론	29
1. 연구배경 및 구성	29
2. 연구 방법 및 구성	31
3. 선행연구	31
II. 환경오염 리스크 개념 및 특징	37
1. 환경오염 리스크의 개념	37
2. 환경오염리스크의 특징	40
3.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46
III. 국내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및 보험활용 현황	57
1. 정부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현황	57
2. 기업의 환경오염리스크 관리 현황	62
3. 환경오염보험제도 활용현황	69
IV. 주요국의 환경오염보험제도 운영현황	76
1. 미국	76
2. EU	96
3. 일본	111

V. 국내 환경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 활용방안	118
1. 보험제도 활용 필요성	118
2. 국내 환경보험제도의 활용 방안	124
VI. 결 론	143
참고문헌	145
부록: 국내 환경법규 현황	149

< 표 차례 >

<표 II-1> 환경리스크의 구분	38
<표 II-2> 환경오염책임관련 법률의 내용	44
<표 II-3>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국제 비교(2004)	45
<표 II-4>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46
<표 II-5> 환경오염 피해 구제방법	47
<표 II-6> 연도별 환경 분쟁조정 · 처리현황	49
<표 II-7> 오염피해별 분쟁조정 현황	50
<표 II-8> 환경분쟁의 배상 결정금액 추이	51
<표 II-9> 분야별 환경소송 추이	56
<표 II-10> 시민단체의 환경소송 제기현황	56
<표 III-1> 정부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수단	57
<표 III-2> 국내 환경예산 지출규모	58
<표 III-3> 환경부 예산 투자내역	59

<표 III-4>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	60
<표 III-5> 환경오염 부담금징수 금액 현황	61
<표 III-6>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액	61
<표 III-7>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및 시장 활성화 전망	62
<표 III-8> 연도별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수	64
<표 III-9> 환경라벨링제도의 유형 및 주요내용	66
<표 III-10> ISO 14000 계열 인증제도	67
<표 III-11> ISO 14001 인증기업 현황	67
<표 III-12> 국내의 환경오염(급격, 우연) 담보 보험 현황	70
<표 III-13> 국내 손해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	73
<표 III-14>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환경배상책임 보험시장 전망	73
<표 III-15>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환경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요소	75
<표 IV-1> 미국의 환경관련 연방법 주요내용	77
<표 IV-2> 자원보존복구법상 재무적 책임 한도	79
<표 IV-3> 미국 수퍼펀드법 주요내용	82
<표 IV-4> 미국의 수퍼펀드 규모 및 지출액 추이	84
<표 IV-5> 미국의 환경금융 제도 주요내용	87
<표 IV-6> 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제도 변천 현황	89
<표 IV-7> 미국의 오염원별 보험 등 재무대책 현황	90
<표 IV-8> 1980년대 미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특징	92
<표 IV-9> 미국의 환경오염과 일반 배상책임의 법리 등 비교	93
<표 IV-10> 미국의 자동차운송환경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94
<표 IV-11>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의 책임법리	101
<표 IV-12> EU 국가별 환경지침 채택현황	104
<표 IV-13> EU 국가별 환경지침 채택현황	106
<표 IV-14> 일본 환경배상책임의 담보체계	114
<표 IV-15> 일본 환경배상책임보험 판매현황	115

<표 IV-16> 일본 보험사가 환경보험 인수하지 않는 이유	116
<표 IV-17> 일본 환경보험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필요사항	117
<표 V-1> 국내 기업의 오염기준 부적합을 현황	118
<표 V-2> 국내 대기 및 폐수 관련법규 위반업체 현황	119
<표 V-3> 향후 손해보험업의 환경경영관련 업무서비스	123
<표 V-4> 주요국의 환경사고 후 환경관련법 제정 현황	125
<표 V-5> 국내 환경책임법안의 주요내용	128
<표 V-6> 미국, EU, 국내입법안의 비교	130
<표 V-7>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 수준 추정	135

< 그림 차례 >

<그림 II-1> 환경오염손해 발생 체계	39
<그림 II-2> 분야별 환경분쟁 처리절차	48
<그림 II-3> 환경분쟁 조정결과 수용률	50
<그림 II-4> 분쟁조정 결과 불만족 부분(Base=불만족자 53)	52
<그림 IV-1> 독일의 환경법 제정전후 환경보험 보험료 추이	109
<그림 IV-2> 독일의 신 환경보험제도(2007)	111
<그림 V-1> 기업들의 환경기준 부적합을 추이	119
<그림 V-2> 국내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추정 보험료율 수준 및 추이	136

요 약

I. 서 론

- 지구촌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전환한 이후 경제적 부의 확충과 성장속도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 부산물에 해당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관리정책은 1980년에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1990년에는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분쟁조정법 등 7개법으로 분법화하고 환경오염방지 분야별 관련법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43개 환경관련 법률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환경오염유발자의 복구의무 이행과 피해자 복구를 위한 법적 조치는 없는 상태여서 오염유발자들의 리스크관리 인식은 매우 낮아 환경배상책임보험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환경오염에 대해 보험제도가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II. 환경오염 리스크의 개념 및 특징

1. 환경오염 리스크의 개념

- 환경오염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환경정책기본법)
 - 환경(environment)은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를 말함. 즉, 자연환경과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을 의미함

- 환경리스크(environmental risk)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나쁜 영향(adverse impact)을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환경오염리스크는 기업의 상업적 활용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물의 손상, 자연자원 오염으로 생태다양성(biodiversity)이 훼손될 가능성임

환경오염리스크의 구분

리스크 구분			리스크 형태	손인(peril)
환경 오염 리 스 크	제3자 배상책임 리스크		1.신체상해, 재물손괴, 경제적 손실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2.오염지역의 예방비용, 회복비용, 청소 비용 등 정화비용	
			3.생태다양성 감소, 자연자원 손실 등 생태계 손실	
	당사자 리스크	상기 1과 2		
	자연거대 재해 리스크	재물 및 신체상해, 경제적 손실	태풍, 폭설, 해일 등	

2. 환경오염 리스크의 특징

- 보험운영측면
 - 환경오염리스크는 엄격책임부담 등 특정한 제도를 통한 보험부보가능 리스크(Insurable Risk)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
 - 특히 환경오염리스크의 손해측정곤란, 역선택 등을 방지 위해 일반 보험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보상한도액, 의무가입방식, 공동인수제도)을 통해 해결
- 정부 및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제

- 환경은 유발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을 파괴하여 국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외부의 불경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으로 규정
- 각 국가들은 환경오염자에 대해 오염지에 대한 복구 등에 대해 엄격한 책임법리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에는 환경오염피해의 법 적용대상을 수질, 토양오염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까지 확대하여 오염유발자의 책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경향

3.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 환경오염피해 구제는 사법적 구제와 공법적 구제로 구분

환경오염 피해 구제방법

구제제도		구제방법	관련법
사법적 구제	민법에 의한 구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유지청구	민법 제217조
공법적 구제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실보상	개별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등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조정법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05),p.44

□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당사자 간 소송전에 해결하는 방법
 - 2006년까지 총 분쟁조정건수는 2,440건으로 연평균 300건 제기
 - 조정결과에 있어서는 재정 949건, 조정 202건, 알선(중재)합의 1,289건, 자진철회 396건임(분쟁조정결과 수용율은 89.1%)

- 분쟁조정 의 배상율(배상신청금액 대비 배상금액의 비율)은 9.5%이며, 결정 건당 4,183만원임
- 환경소송현황
 - 2006년 5월 현재 환경소송건수는 자연생태계파괴가 55건(37.9%)으로 가장 많으며 최근에 증가함
 - 수질오염(31건, 21.3%), 폐기물(21건, 14.4%), 대기오염(10건 6.8%), 소음진동(10건 6.8%), 일조방해 및 조망권 저해(10건, 6.8%) 등의 순임

III. 국내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 및 보험활용 현황

1. 정부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 정부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 수단으로는 기본적인 수단과 직접적인 수단,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오염의 사전방지 및 오염경감을 유도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수단

구 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수단	오염발생 원인자 통제수단
직접적 수단	-환경 인프라구조의 정비 ○ 오수처리서비스 ○ 하수도 서비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투자 -공유화	-직접규제 -토지이용규제
간접적 수단	-연구개발 -환경에 기반한 조달	-부과금, 보조금 -배출권거래제도, 감면세 -에코등급부여제도
기본적 수단	-공동체가 알아야 할 권리법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배상책임법 제정 -환경정보 공개제도 마련	

- 환경관리 예산규모는 2006년의 경우 3조 3,978억원으로 GDP의 0.39%, 정부 전체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이

(1996년의 경우 0.54%, 2.63%)

- 환경오염배출 부담금(effluent charges)을 2005년말 현재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룸
 - 효율적인 오염방지시설 설치 유도 및 환경오염방지노력 자극, 조성 자금으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나 환경 회복 활동에 충당

2. 기업의 환경오염리스크 관리

- 환경마크 인증제품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에 대한 자격 취득 및 환경친화기업 인증 취득, 환경경영인증(ISO14001) 취득 등을 통해 환경 경영을 추진
 - ISO 14001인증업체는 도입 초기인 1996년과 1997년에는 109개 업체, 2006년 2,437개 업체를 신규 인증해 큰 폭의 증가세(인증자격유지업체 5,693개 업체)를 보임
- 국내 기업들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개념 인식이 부족
 - 13.4% 기업만이 과단위 이상 조직 운영하고 있고, 52.3%는 담당자만, 34.3%는 담당자도 없음
 - 환경오염 문제가 기업경영에서 8.1%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39.6%는 다른 요소보다 중요, 52.3%는 다른 과제와 동일(33.9%), 나머지는 다른 과제보다 덜 중요 또는 무관심

3. 환경오염보험제도 활용현황

- 환경관련 보험상품 및 시장 규모
 - 국내 환경배상책임보험은 미국의 상품운영결과에 영향을 받아 약관상의 담보조건 등이 변화하여 왔음
 -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은 영업배

상책임보험(국문약관, 영문약관), 패키지보험에서 담보하고 있음

- 담보방식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환경오염을 보통약관에서 절대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특약(추가특약)을 첨부하는 형태임
- 보험시장규모는 공개된 보험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10건 내외로 추정됨

국내의 환경오염(급격, 우연) 담보 보험 현황

	국문영업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 보험
보통 약관	오염리스크와 티끌·분진·먼지·소음은 면책으로 규정	오염리스크는 면책으로 하고 있음	-
특별 약관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특약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I): 손해배상금 담보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를
추가 특약	환경오염사고 추가특약에서 손해배상금과 오염제거비용, 오염제거 작업 중의 사고를 담보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II): 손해배상금과 오염제거비용을 함께 담보	첨부하여 담보

□ 국내 보험회사들의 환경보험 인식

-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평가가 곤란하고, 관련 상품의 부재 등을 들고 있음. 한편에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음
- 환경배상책임보험시장이 향후에 지금보다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향후 환경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한 요소로는 9개 보험사가 수요개발을 위한 환경배상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개사는 국내 보험상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고, 1개사는 리스크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들고 있음

IV. 주요국의 환경오염보험제도 운영현황

1. 미국

- 미국의 환경오염 관련보험은 환경오염책임법 강화정도에 따라 리스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발전하여 왔음
- 환경관련책임법 체계
 - 자원보존복구법(RCRA 1976)
 - 위험폐기물을 취급(treat), 저장(storage), 처리(disposal)하는 업체의 소유주 및 운영자에게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배상책임과 매립지 사후관리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이상의 재무담보요건 확보 필요(financial responsibility requirement)

자원보존복구법상 재무적 요건

위험물질별 적용대상자		재무담보 요건	
		1사고당	연간 총한도액
비석유 물질	취급,저장, 처리업자	100만달러이상	200만달러이상
	매립업자, 지하저장업체	300만달러이상	600만달러이상
석유	생산, 정제, 판매자	100만달러이상	-탱크 100개이하 : 100만달러이상 -탱크 100개이상 : 200만달러이상
	비판매자	-월간 만꺠런이하 : 50만달러이상 -월간 만 꺠런이상 : 100만달러이상	

- 재무담보요건의 대책으로는 보험상품, 이행보증증권, 신용장, 에스 크로 현금예탁, 자가보험이 가능
-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 슈퍼펀드법 1980)
 - 1978년 러브운하오염사고를 계기로 방치된 오염시설을 정화하고 오염물질 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인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을 제정

- 동법은 잠재책임자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엄격책임과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부담하여 오염지 정화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을 의무화하였음
- 재정의무담보는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저 500만 달러 최고 5000만 달러이상 필요

□ 보험상품 운영현황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담보에서 1977년부터 독립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운영(점진적 오염 및 우연한 오염 모두 담보,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으로 운영)

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제도 변천 현황

구분	약관	담보형태	비고
'70년대	포괄배상책임보험(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olicy)	66년약관: 점진적오염 등을 포괄담보(occurrence basis)	오염면책조항 없었음
		70년약관: 점진적오염을 면책으로 하고, 우연/급격한사고만 담보	sudden & accidental pollution exclusion 도입
		73년약관: 급격/우연한 오염사고담보조항 보통약관에 규정화	occurrence basis로 담보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policy	77년 점진적 오염사고 담보(claims made basis)	RCRA시행(1976) : 오염자 책임 부담원칙 도입
'80년대	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86년 환경오염절대면책조항, 총보상한도액 도입 -오염사고확장담보특약 추가시 담보(claims made basis)	-CERCLA시행(1980) -전문인배상보험에도 첨부 -보험회사 파산 및 철수
'90년대	정화비용담보	Brownfields 수요 증가	
'00년대	다양한 상품 제공	계약자의 수요에 따라 상품 제공	-연간보험료 20억달러 -회사 : AIG, Chubb, XL, Zurich, Hudson

- 브라운필드보험
 - － 매사츠테츠크주, 위스콘신주, 뉴욕주, 코네티컷주 등의 주정부는 이전 공장이나 상업용건물 등 브라운필드(Brownfields)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에 대비한 “브라운필드보험(brownfields insurance products)”을 운영하며, 동보험이 환경배상 책임보험시장의 35% 점유
 - － 보험상품의 종류는 오염배상책임보험(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오염지의 오염정화비용보험(cost cap policy), 대출자보장보험(secured lender policy), 기타 보험이 있음

2. EU 및 독일

□ EU 환경배상책임지침

- EU 위원회는 2004년 4월 21일 환경배상책임지침(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채택하여 2007년 4월 30일 부터 시행
- 동 지침은 다양한 산업활동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환경파괴에 대하여 오염자부담원칙(Pollutes-Pay Principle)에 입각,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기업 등에게 환경파괴 예방과 회복의 경제적 책임을 부담
- 책임부담법리 및 재무보증대책 확보
 - － 오염유발자에게 엄격책임과 연대책임을 부과하며 소급책임은 없음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의 부담 책임법리

활동구분	환경손해	부담법리
위험스럽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업 활동 (hazardous or potentially hazardous activities)	수질오염 손해	엄격책임적용 (기본적 복구 보완적 복구 보상적 복구)
	토지오염 손해	
위험하지 않은 사업 활동 (non-hazardous activities)	보호종 및 자연서식지 파괴 손해	과실책임 적용 (기본적 복구)

- 사업자의 재무보증대책(financial security)으로는 의무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지침시행 후 8년 경과한 후에 최종 확정할 예정
- 회원국의 환경책임지침 채택현황
 - 영국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체코 등은 초안을 작성하거나 국회 심의단계에 있음. 채택 국가 중 의무보험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헝가리, 라투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임

EU 국가별 환경배상책임지침 채택현황

국가	자국법화 (상태)	생태계 보호중 확장	개발리스크면책	의무보험
오스트리아	'07.5(심의중)	-	○	○
벨기에	'07.4 시행	○	○	×
불가리아	'06.9(초안)	×	×	○
사이프러스	'07.12 시행	○	-	-
체코	'07.3(초안)	○	○	○
덴마크	'07.4 시행	부분적	부분적	×
에스토니아	'07.11 시행	○	○	×
핀란드	'07.3(심의중)	-	-	×
프랑스	'06.11(심의중)	×	○	×
독일	'07.11 시행	○	○	×
헝가리	'07.4 시행	○	×	○(일부)
이탈리아	'07.4 시행	○	○	×
라투비아	'06.11 시행	○	-	○
네덜란드	'06.12(초안)	○	-	×
폴란드	'07.4 시행	○	○	○(일부)
슬로바키아	'07.9 시행	○	○	○('12년)
스페인	'07.4 시행	○	○	○('10년)
스웨덴	'07. 8 시행	○	-	-
루마니아	'07. 6 시행	-	-	○
영국	초안작성 중	○	-	×

□ 보험상품 운영현황

- 독일,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는 독립적인 상품 운영
- 이중 프랑스(Assurpol), 이탈리아(pool Inquinamento), 스페인(Pool Espanol de Riesgos Meldio-amiente), 네덜란드가 환경책임보험품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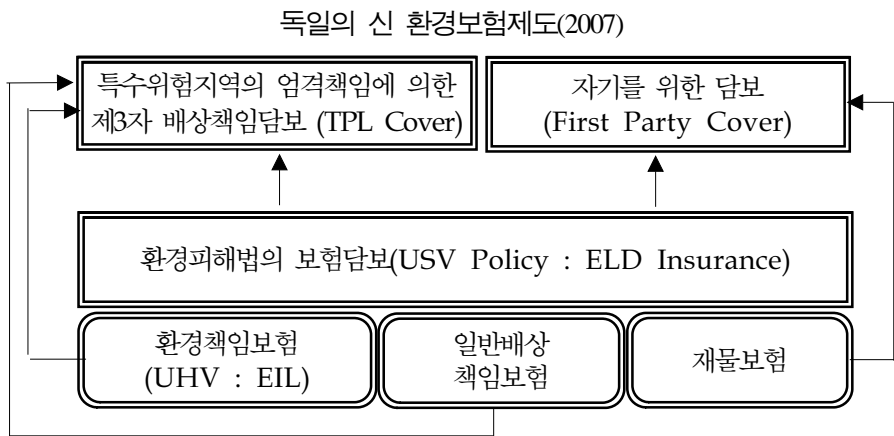
EU 국가별 환경책임보험 운영현황

국가	담보 리스크(extend cover)				담보 손해(covered loss)				풀 (상품)
	급격/우연	점진	운영 리스크	운영리스크 발전	인적물 적손해	결과 손해	순금융 손해	생태 파괴	
벨기에	○	-	×	×	○	○	○	×	-
덴마크	○	-	×	×	○	○	×	×	-
핀란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프랑스	○	×	×	×	○	○	○	×	Assurpol/CARE pool
독일	○	-	○	○	○	○	○	×	USV policy
이탈리아	○	-	○	○	○	○	○	×	Pool Inquinament
네덜란드	○	-	×	×	○	○	○	×	Milieu-Schade-Verzekering Pool
스페인	○	×	×	×	○	○	○	△	pool Espanol de Riesgos Medioambientales
스웨덴	○	-	○	○	○	○	○	×	-
영국	○	-	×	×	○	○	×	×	-

□ 독일의 최근 보험상품 운영체계

- 독일은 『환경배상책임지침』을 반영한 환경손해법(environmental damage act)을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지침과 관련된 보험은 기존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IL)이나 일반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독립된 환경손해담보보험(ELD 보험)을 새로 개발하였음

- 2003년의 경우 가입대상 시설 128,070건의 82%인 104,915건이 가입하였고 이중 의무가입은 1%이내임. 2007년의 경우 가입대상 시설의 90%이상이 보험에 가입
- 따라서 기업체가 환경오염리스크를 완전하게 담보받기 위해서는 환경배상책임보험이나 일반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경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3. 일본

□ 환경책임관련 법규

- 『공해건강피해보상법(1973년)』 : 입증책임을 완화, 원인자 책임부담원칙 적용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법) 1970년』 은 1991년, 1997년, 2000년 대폭 개정, 배출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 강화, 산업폐기물의 대량 배출사업자에게 처리계획 등의 작성의무 부과
- 1996년 『수질오탁방지법』 을 개정하여 지하수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하수 정화 조치 명령권을 발동

- 2002년 5월에는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문제를 포괄하여 규정한 『토양오염대책법』을 제정하여 2003년 2월에 시행하였음. 동 법은 자치단체장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폐업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오염조사를 의무화하고, 건강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정 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제출, 오염 제거조치 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

□ 보험 활용현황

- 일본의 경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1991년에 독립된 상품으로 개발되었으나 보험가입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일본 환경보험과 다른 보험과 비교

보험종류		영업배상 책임보험	유탁배상 책임보험	환경배상 책임보험	
신체장해 재물손괴	배수, 배가에 기인	×	×	○	
	상기 이외	급격한사고	○	△(재물)	○
		비급격한 사고	×	×	○
어업권침해	급격한사고	×	○	○	
	비급격한 사고	×	×	○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		×	×	○	
행정명령에 의한 정화비용	급격한 사고	×	△	○	
	비급격한 사고	×	×	○	

주 : 유탁배상책임보험은 석유물질이 대상시설로 부터 공공수역(바다, 하천, 운하 등)으로 유출되어 나타난 오염사고를 보상함.

-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은 오염확인 비용 및 컨설팅비용 등의 추가지출 비용을 담보하며 2001년부터 삼성주우화재 판매
 -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 배출자책임보험은 2000년 폐기물처리법의 개정에 따라 활성화되었음
- 보험회사의 시장 인식

-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적은 상태이며 보험실적 파악도 곤란한 실정임
- 환경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이유로는 환경리스크의 복잡성과 역선택 가능성, 재보험 곤란 등을 들고 있음
- 향후 환경보험의 활성화요소로는 리스크측정을 위한 기술축적, 재보험폴 도입, 정부의 재보험 담보 제공 등을 들고 있음

V. 국내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 활용방안

1. 보험제도 활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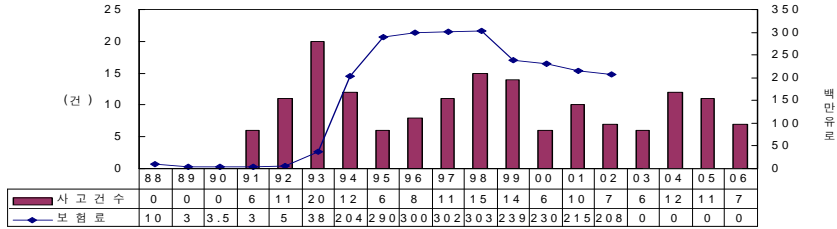
□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필요성 증가

- 2006년 현재 해양오염 외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진동,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기업체는 14만 217개이며, 이중 환경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기업은 5,859개 업체로 부적합율은 4.2%임. 이는 1996년에 6.1%에 비해 매년 3.7%씩 감소한 수치임
-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을 보면,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위반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가 더욱 잘 될 필요성이 있음

□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 유용성 증가

- 미국의 경우에 3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환경보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환경배상책임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제도를 통한 리스크관리 개념을 도입하였음
- 독일의 경우, 보험제도가 환경책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한 실증연구가 있음(Onno Fiffmееister · Reimund Schwarez(2007))

독일의 환경법 제정 이후 환경보험 보험료 추이



- 따라서 환경오염리스크를 인수불가능 리스크(uninsurable risk)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수가능리스크로 보고 미국과 EU처럼 법률적 보완과 보험상품화를 통해 리스크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국내 환경보험제도의 활용 방안

□ 환경책임법 제정

-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환경보험이 적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험산업은 인식하고 있음. 이는 국내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동일하며, 미국 및 EU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협력하여 공공재인 환경보존을 추진

주요국의 환경사고 후 환경관련법 제정 현황

구분	오염사고명	피해액	대응법안
국제적	Torrey Canyon호 (1967)	영국해안 원유유출	선주책임제도 도입 (P&I)
미국	Love Canal 오염 (1978)	토양오염(950가구피해), 2.2억달러 배상	슈퍼펀드법 제정(1980)
	엑스발데즈호 (1989)	해양생태계파괴, 200억달러 이상 보상	기름오염법제정(1990)
독일	산도스사 화재 (1986)	식수원 오염 등 피해액 400억달러이상, 1억 스위스프랑보상	환경책임법 제정(1991) 환경피해법 제정(2007)
한국	두산전자폐놀유출 (1991)	낙동강 식수원 오염 및 피해자 발생, 수백원보상	-
	씨프린스호 (1995)	여수앞바다 원유유출, 2,500억원 보상	환경책임법안 마련(97년, 00년), 폐기됨
	히베이스퍼리트호 (2007)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35,000ha 오염, 피해액 4,240억원	동 사고 특별법 제정

- 과거 3회에 걸쳐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음. 주요내용은 환경오염유발자에게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부과하고 보험가입 등을 제도화하여 피해자 구제가 목적임

국내 환경책임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1989년 법안	1997년 법안	2000년 법안
법명	환경오염피해배상법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법	97년과 동일
목적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대상 오염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과괴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책임법리	무과실책임/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	무과실책임/연대책임/소급책임, 입증책임전환	97년과 동일
보호 법익	제3자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 (휴업손해포함)	제3자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	97년과 동일
배상한도	-	한도설정	97년과 동일
보험가입	-	위험성이 높은 시설	97년과 동일
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결정 및 각하 등 심의	-	-
정보제공 요구권	-	피해자에게 부여	97년과 동일
벌칙	진술거부, 문서 미제출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배상조치불이행: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정보제공 불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97년과 동일

- 입법방향

- 입법 목적을 환경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복구방법 확보로 함
- 적용대상 오염원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일조권, 방사능 오염 등은 제외하고 심각한 오염인 수질, 토지오염으로 한정
- 오염자에 대한 책임부담을 위해 엄격책임, 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 조항을 둠
- 책임이행방법을 확보위해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유류오염배상보장법과 같이 손해배상보장계약조항과 미이행시 제재조항을 규정
- 책임이행에 대한 한도를 두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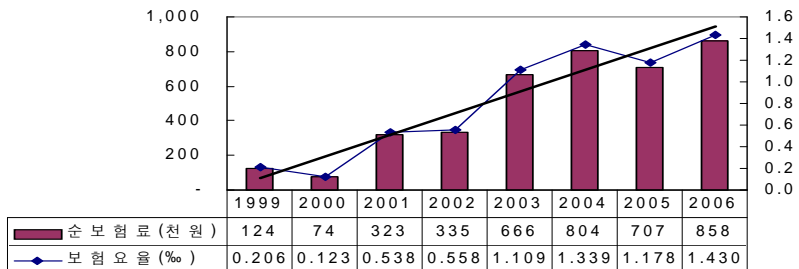
환경책임법 입법 제시의견

	미국	유럽	입법 제시의견
법명	수퍼펀드법(CERCLA)	환경책임지침	환경책임법안
목적	건강 및 환경보호	환경보호	건강 및 환경보호
대상 오염	수질, 토양오염	수질, 토양, 생태계파괴	수질, 토양으로 한정
대책시기	사후조치	사전예방, 사후조치	사후조치
보호 법익	오염지 정화책임(제3자배상책임 제외)	오염지 및 생태계 정화책임(제3자배상책임제외)	제3자 배상책임(인적, 물적), 오염지 정화
책임법리	엄격책임	엄격책임(과실책임 : 일부 생태계 다양성)	엄격책임(입증책임 전환)
	연대책임, 소급책임	연대 또는 개인부담 선택, 비소급책임, 확산오염 및 개발리스크면책	연대책임, 중단사업자의 소급책임
책임 부담자	잠재 책임부담자(현재 및 과거 소유주 등)	오염유발자	오염유발자
재무대책 의무화	보험, 이행보증, 신용장, 현금예탁, 자가보험 등	재무대책확보 필요(의무보험 논의 중)	손해배상조치(보험가입 또는 공탁), 가입한도 확정

□ 보험상품 개발

- 보험상품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과 국내의 실제 상황에서 보더라도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과는 별도로 약관과 요율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상품으로 운영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인적손해, 물적 손해, 정화비용)와 계약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담보
 - 계약상의 책임이나 기업휴지손실도 보상
 - 미국과 같이 보험기간을 1년 이상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계약자의 안정적인 리스크관리를 도모
- 리스크평가 및 보험요율
 - 환경오염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여 경제적인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사고 및 소송관련정보, 리스크평가기법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
 - 본 연구에서 분쟁 및 소송결과를 기초로 환경보험의 순보험료와 보험료율을 추정하여 본 결과 최근년도에 올수록 매우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추정 순보험료 및 요율 수준 추이



□ 보험가입방식

- 환경보험이 환경책임법에서 정한 환경오염사고 발생방지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선택을 배제하고 다수의 동질위험집단을 확보해야 함. 그러하지 않은 경우 1980년대 미국 처럼 환경보험의 시장실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위험기준 자본금제도(RBC)나 리스크평가제도(RAAS)가 전부 시행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인수하는 리스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음
-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환경책임법에 보험가입을 의무화(compulsory insurance)하여 보험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손해사정 기반 구축

-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액의 평가는 다른 보험에 비해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함. 따라서 프랑스의 Assurpol과 같이 산업 전체의 손해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

□ 위험분산 체계

- 위험분산을 위한 환경보험 풀제도 운영
 - － 유럽 국가들의 경우 환경보험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경쟁당국이 허용하고 있음
 - － 환경오염은 경제주체의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재인 환경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공동인수를 허용해도 될 것임(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 환경오염기금 적립
 - － 환경책임법상에 정한 보상한도액만을 보험에 가입하여 오염피해 및 정화비용이 그 한도를 초과하거나 오염유발자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에 적립된 환경오염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정화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회수하는 보완적

장치를 마련

- 기금은 환경오염 부담금의 20%를 매년 적립하여 특별회계로 관리

□ 보험가입 유인제도 도입

- ISO 14000을 인증한 기업에 대해 오염리스크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개별요율제도 실시
- 오염유발업체가 환경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부담금의 규모를 할인하여 기업의 리스크관리 촉진
- 환경오염리스크의 외적 통제제도 도입
 - 독일의 경우 기업의 이사에게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경영리스크에 대한 조기대응조치 수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통제투명법(Kon Trag)을 운영

I. 서론

1. 연구배경 및 구성

지구촌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된 이후 경제주체들은 경제적 부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부산물에 해당하는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현대 산업사회의 위험요소로 환경오염을 들고 있다. 환경오염은 오염지역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자연재해 발생, 자연생태계 파괴 등 지구촌 환경에 큰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경 충남 태안군 해안 앞바다에 정박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1만 500톤의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해변 및 바다가 오염되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사고는 오염원의 제거와 오염지의 정상적인 환경으로 복원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긴 복구기간이 필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손실까지 감안하면 태풍 등 자연재해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환경오염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체 등의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염 발생원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 다양한 오염 피해로 나타난다. 이러한 오염이 누적되면 생활 환경오염을 벗어나 지구온난화의 가속,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증가, 사막화 지역 확대 등의 지구환경문제로 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발생빈도와 인적, 물적 피해 등의 경제적 손해가 크게 증가하는 추이에 있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가 특정 국가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 또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 공조 및 UN을 중심으로 지구촌 오염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정책은 1980년에 헌법 제35조1)에 환경권

1)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공해배제청구권(국가 이외의 제3자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을 방지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환경보전청구권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을 처음으로 규정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졌고, 1990년에 들어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분쟁조정법』 등 7개법으로 분법화하는 등 보다 체계화된 환경법 체계를 갖추었다. 그 후 환경오염방지 분야별 관련법규가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43개 법률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환경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환경오염유발자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없는 상태여서 오염유발자들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등으로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 모델인 환경배상책임보험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환경오염 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80년대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통해 경제적 기능의 빠른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엄격책임과 재무적 이행수단을 강제화하여 오염자 책임부담원칙(let the polluter pay principle)을 기본 내용으로 한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2007년 4월에 시행된 EU의 『환경배상책임지침』은 이러한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오염 배상책임법리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은 어느 정도 되어있으나 책임이행을 위한 구체적 요건이나 방법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곤란하고 환경오염 관련 보험은 리스크관리의 수단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리스크관리는 국가적 사명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문제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환경리스크관리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험은 보험산업만의 역할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적 역할이 필요하다.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환경오염에 대해 보험제도가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서 환경보험도입과 관련된 환경책임법의 입법 경과 사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운영현황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의 환경책임법규와 관련 보험제도의 운영경과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공급자 측면의 국내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판매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파악하고자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언급한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국내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가 리스크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6개장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제 I 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방법, 선행연구를 정리하였으며, 제 II 장은 환경오염리스크의 개념, 특징 및 피해자 구제제도를 분석하였다. 제 III 장은 국내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 현황을 환경법규 등 정부정책 측면과 기업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 인식 및 보험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 IV 장은 미국, EU, 일본의 환경관련법규 제정 및 개정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보험상품의 변천 및 시장상황을 분석하였다. 제 V 장은 국내의 기업들이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활용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사항을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하고, 공급자측면에서 보험시장 활성화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VI 장은 결론으로써 동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3. 선행연구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효과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책임법 마련, 보험가입 등의 피해보상 이행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환경책임법제만의 연구로는 전재경(2003), 박노일(2002)의 연구가 있으며, 법제와 보험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이재현(1991), 이봉주(1997), 강만옥·민동기·임현정(2000), 남상욱·허준(2004)의 연구가 있다.

먼저 환경책임법제 연구를 보면, 전제경(2003)은 국내 환경정책의 기본개념을 담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책임에 대해 오염원인자책임과 무과실책임,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환경재판의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환경책임의 체계와 수단들을 다른 법률들에 구체화시키지 못해 피해자 구제 등에 있어서 법적 효과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험책임에 기초한 환경책임법을 만들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책임의 대상을 재산건강중심에서 생태계로까지 확대하고 책임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험가입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노일(2002)은 환경오염 피해가 일반적인 불법행위 피해와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보상대책은 여러 개별법에 분산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오염피해구제가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엄격책임, 입증책임완화, 손해배상 이행조치 확보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책임법제와 보험제도를 연계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이재현(1991)은 미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이용에 대해 관련법규와 보험상품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보험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봉주(1997)는 미국, 유럽, 일본의 환경규제와 보험제도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오염의 피해구제 및 억제를 위한 경제적인 방안으로 환경배상책임보험을 제시하였다. 보험화시 고려요소(손해발생의 우연성, 최대손해가능성, 사고발생시 평균손해액, 사고발생빈도, 보험료의 경제성, 도덕적 위태와 역선택, 공공성, 법적 규제, 보험가입한도)를 고려해볼 때 증권당 보험가입한도 설정, 의무가입제도 도입, 손해배상청구기준의 독립적인 상품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만옥·민동기·임현정(2000)은 국내 환경오염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 보상을 이행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분쟁조정제도도 임의적이어서 오염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유발자들은 환경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등의 환경보험제도와 비교한 결과, 환경피해 보상을 위한 환경책임법 마련,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 환경손해배상의 보장수단으

로 환경배상책임보험 도입, 위험평가체계 마련, 환경피해보상기금 조성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상욱·허준(2004)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오염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피해보상과 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하며, 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선행적으로 보험제도 도입의 공감대 형성, 손해배상청구기준 약관 운영, 담보범위 설정, 면책범위와 자기부담금제도 운영, 차등보험요율 부과,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보험 가입 강제화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창훈·이윤미(2006)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제품의 환경관리, 경영전반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성과에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의 경우 환경관련법제 마련과 보험이 활용 되고 있는 미국의 환경배상책임보험 관련 연구가 많으며, 최근에는 EU의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EU Directive o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의 시행과 자국법화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과 관련된 연구, 일본의 환경보험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Martin T. Katzman(1987)은 미국에서 『자원보존복구법(RCRA)』과 『슈퍼펀드법』의 제정으로 기업들의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한 책임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효율적이라고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환경관련 규제, 환경오염책임 부담법리 도입 및 보험제도가 삼위일체 되었을 때 리스크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urg Spuhler(1996)는 EU의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재무적 대책으로 강제보험을 도입하여 역선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태계파괴에 대한 배상책임과 연대배상책임은 제외할 것을 제시하였다. 보험상품은 사고당, 증권당 보상한도액을 두고 손해배상청구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David Pearce(2000)는 생태계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파괴의 예방, 복구,

보존에 있어 보험제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슈퍼펀드법과 같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험산업에서는 공동인수 풀(pool)의 운영, 환경오염리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탄소배출권거래 보험, 환경오염절감과 관련된 보험상품, 재활용품 전용상품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투자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ichael Faure · David Grimeaud(2000)는 EU의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부담법리에 따른 최적 보험제도 운영 방안인 의무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법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재무적 보상한도(financial cap)를 두는 경우 리스크관리에 소극적으로 되어 지침의 제정취지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두지 않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다른 재무적 대안으로 오염자와 관련된 보험상품 운영, 보증이나 예치금, 풀 등의 리스크공유장치, 보상기금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Michael Faure(2001)는 EU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이 채택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환경오염보험 운영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는 제3자 배상책임담보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배상책임보험 위기가 있었던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네덜란드가 손해배상청구기준의 자기를 위한 보험(first party insurance)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Benjamin J. Richardson(2002)는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의무보험제도를 활용하면 보험회사의 파산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엄격책임을 부과하더라도 거대재해채권 등을 통한 재보험 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무보험의 시행에 있어서 가입촉진을 위해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등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환경세나 정부의 직접규제 등도 병행되고 방치된 오염이나 책임부담자가 파산한 경우에 대비에 공공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국가의 종합적인 환경리스크관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George B. Flanigan(2002)는 미국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환경법 제정, 국가관리 등 환경정책 변화 및 법원의 보험약관 해석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연구하였다. 동 연구는 1973년

포괄배상책임보험(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에서 부터 1998년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약관에 환경오염 절대면책을 규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조사·분석하였다.

William H. Howard · Margaret A. Mackowsky(2002)는 미국의 환경책임법제는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부지나 시설에서 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이 제3자 배상책임보험보다는 당사자를 위한 환경손해담보보험(th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물담보보험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Howard Kunreuther · Peter Schmeidler · Shelley Metzengaum(2003)은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보험을 임의가입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잠재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며, 느끼더라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환경오염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환경책임법과 의무보험(mandatory insurance)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ECD(2003)는 OECD국가들의 환경리스크(자연재해리스크와 환경오염리스크) 관리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환경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정부와 민영보험시장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일본에서도 환경관련 정책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赤堀勝彦(2004)는 오염유발 기업들이 환경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의 이미지와 사회적 신용도 저하, 판매부진, 경영성과 악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위험전가를 해야 하며 일본의 환경관련 보험상품을 소개하였다. 八頭司 彰久(2004)는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 하며 금융보험서비스기관이 환경관리를 위한 융자업무, 투자업무, 보상기능 즉 환경배려형 업무를 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상기능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아직 미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조치 도입, 독일과 미국처럼

보험부보의 강제화, 재보험 풀제도 도입, 환경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桑名謹三(2006)은 환경보험은 피해자 구제기능, 환경감시기능, 환경손해의 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보험의 강제부보화, 재보험풀 도입 등과 같은 정부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EA(2007)는 2004년에 채택된 『EU 환경오염배상책임지침』을 회원국들이 자국법화와 보험제도를 연구 한 결과, 향후 보험상품을 운영할 때 지침의 법률조건이나 내용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대 손해규모를 추정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리스크 평가기법을 개발을 해야 하며, 강제보험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II. 환경오염 리스크 개념 및 특징

1. 환경오염 리스크의 개념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환경, 환경오염, 관련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를 말하며,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오염(pollution of environment)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훼손(environmental damage)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전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 하에서 환경리스크(environmental risk)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을 하여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리스크는 크게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리스크(environmental pollution risk)와 폭풍, 폭설, 폭우 등 지나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거대재해리스크(natural catastrophe risk)로 구분²⁾되는데, 여기서 후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2) OECD(2003),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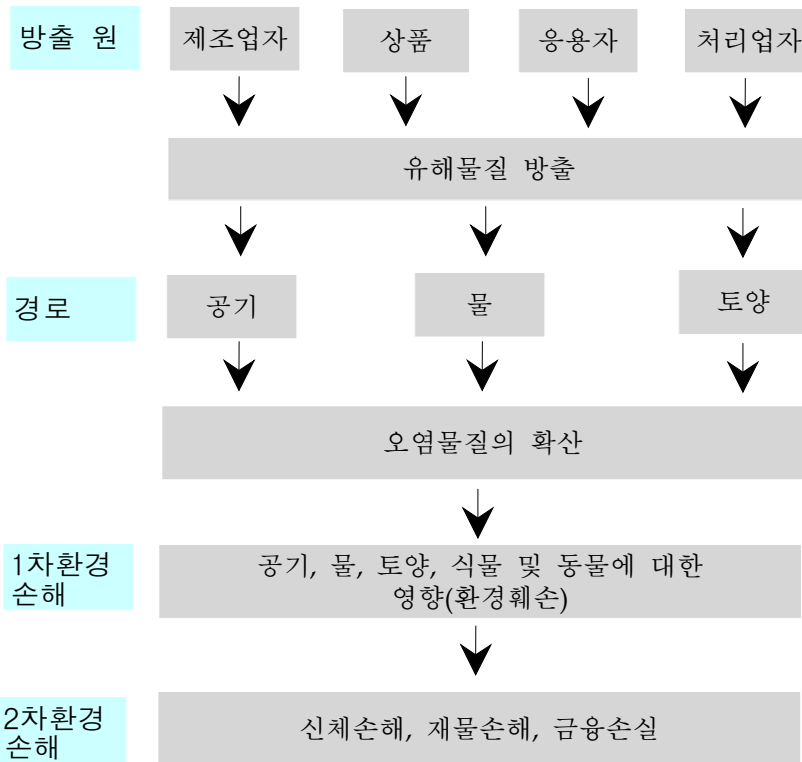
<표 II-1> 환경리스크의 구분

리스크 구분			리스크 형태	손인(peril)
환경 오염 리 스 크	제3자 배상책임 리스크		1.신체상해, 재물손괴, 경제적 손실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2.오염지역의 예방비용, 회복비용, 청소 비용 등 정화비용	
			3.생태다양성 감소, 천연자원 손실 등 생 태계 손실	
	당사자 리스크	상기 1과 2		
	자연거대 재해 리스크		재물손괴, 신체상해, 경제적 손실	태풍, 폭설, 해일 등

환경오염리스크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영활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물의 손상, 생태다양성(bio-diversity)이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복구 등의 조치를 부담할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더 세분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대한 손상을 미쳐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인 “제3자 배상책임리스크(the third party risk)”와 오염 유발자 자신의 재산이나 신체가 손상될 가능성이인 “당사자 리스크(the first party risk)”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오염 리스크의 손해 발생경로를 도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은 상품 제조업자, 완성된 상품, 제품을 응용사업자,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오염물질이 공기, 물, 토양 등 오염경로를 통해 방출되어 확산되면 공기, 물, 토양, 식물, 동물에게 1차적인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1차 환경오염 피해를 넘게 되면 2차적으로 사람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오염 유발한 기업에게는 오염지 정화와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 사업 불가동 등으로 인한 금융손실 발생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

<그림 11-1> 환경오염손해 발생 체계



자료 : SWISS Re.(2007), p.9.

또한 일반적으로 환경책임 또는 환경배상책임(environmental liability)이라 함은 “제3자 배상책임리스크”를 말한다.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 광의의 환경책임³⁾은 환경침해 행위로 인해 환경파괴(피해 또는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에 대한 불이익·부담 또는 비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책임은 1)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추상적인 의무가 전제되고, 2) 이 의무를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낭비하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존재하며, 3) 이로 인해 일정한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행위주체에게 원상회복 등의 불이익이나 부담을 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불이익이나 부담은 민법상 원상회복·손해배

3) 전재경(2003), p.36.

상·민사법상 벌 부과, 행정법상에 정한 의무이행·행정처분 또는 재정법상 보험·부담금 부담, 형사법상 자격제한·벌금·징역 등의 수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무과실책임(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과 제2항에서 연대책임(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환경오염 리스크의 특징

가. 보험운영관점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발생한 경우에 손실만 야기하는 순수리스크(pure risk)와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리스크(speculative risk)로 분류하며 순수 리스크를 보험부보가능리스크(insurable risk)라고 하고 있다. 보험부보가능리스크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통해 계약자가 전가하고자 하는 리스크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환경오염리스크를 비교하여 보면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 완전한 보험부보리스크가 아닌 준 부보가능리스크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리스크가 보험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covered risk → insurable risk)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우연하게 발생하여야 하며(accidental and unintentional loss), 다수의 동질 위험 집단이 존재하여야 하며(large number of homogeneous exposure), 담보하는 위험의 손실규모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determinable and measurable loss), 거대손해는 없고,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no catastrophic loss and calculable chance of loss). 또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시 보상함에 부족함이 없고 적정한 수익이 확보됨과 동시에 계약자들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economic premium)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오염리스크는 부보가능리스크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오염리스크는 일반 불법행위에 비해 손해가 광역적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전체 피해는 누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거대손해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손해를 누적 거대손해(accumulated catastrophic loss)라고도 한다. 또한 환경오염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장기간에 걸쳐 발생시키며, 원거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리스크의 발생확률과 평균 손해액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인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측면에서도 사고원인과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곤란한 원인의 불명확성이 존재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처리도 장기간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에 따라 주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보험약관의 체계, 보상한도 운영, 보험계약방식, 경쟁법 적용의 제한적 예외 허용 등을 통해 부보가능 리스크화를 하고 있다.

나. 정부의 엄격한 규제

환경오염은 유발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을 파괴하여 국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외부의 불경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으로 규정된다. 각 국가들은 환경오염자에 대해 오염지에 대한 복구 등에 대해 엄격한 책임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피해의 법 적용대상을 수질, 토양오염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것에서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까지 확대하여 오염유발자의 책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정과 규제체계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

여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동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 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유명무실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 허용기준,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 이전 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에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소극적인 공해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였다. 과거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은 그 대상을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해방지법』이 현재의 국민보건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환경보전법』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해져 복수의 환경법 체계로 이행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되었다. 1990년

대 이후에는 주로 생물다양성이나 수질 개선, 대기오염 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는 입법이 추진되었다. 2007년 현재 환경관련 법률은 총 44개 이른다(이에 대한 내용은 부록 참조). 현행 44개 환경관련 법률 및 민법 등 기타 법률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 <II-2>와 같다. 불법행위이론을 적용하는 민법상에서는 생활방지금지조항과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있다. 환경관련 법률에서는 환경오염예방의무, 방지의무, 오염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및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오염자에게 재정책임을 부과한 법률을 보면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보험계약을, 『수질환경보전법』은 배출부과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은 보증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관련 법체제의 마련으로 급속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간과된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왔지만 환경오염 책임과 관련된 법제의 경우 선진국 환경책임법 체제와 비교할 때 오염유발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부담과 오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책임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표 II-2> 환경오염책임관련 법률의 내용

구분	주요내용	
민 법 상	생활방해금지(217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 또는 방해예방청구권(214조)	
	불법행위상 손해배상책임(750조) 공작물배상책임(758조) 연대배상책임(760조)	
환 경 법 상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오염 예방의무, 위험발생 회피의무	-환경정책기본법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의2(환염오염 등의 사전예방) o 제10조(환경기준), 제11조(행정계획 수립에 활용) -자연환경보전법제4조(국가지자체의 책무) -유해화학물관리법제7조(영업자의 책무)
	손해배상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o 원인자 책임(제7조), 무과실책임(제31조제1항), 연대책임(제31조제2항) -원자력손해배상법(시설책임/결과책임, 책임집중, 배상책임한도 등)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무과실, 책임제한 및 책임한도액 인정) -해양오염방지법(국가가 해양환경의 관리주체로서 배출자에게 피해배상 청구) -광업법(시설책임, 결과책임, 연대책임,
	오염방지 책임	-수질환경보전법(배출허용기준/배출금지, 저감조치, 조업정지) -폐기물관리법(처리조치, 행정대집행) -자원절약법(분리배출 및 보관)
	오염정화 책임	-토양오염방지법(결과책임, 연대책임) -수질환경보전법(방제조치, 행정대집행)
	원상회복 책임	-광업법(원상회복) -수질환경보전법(사용중지, 폐쇄 명령)
	재정책임	-보험계약 : 원자력손해배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부담금 :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재활용부과금(자원절약법) -보증금 : 방치폐기물처리보증제(폐기물관리법), 빈용기보증금(자원절약법)
	의무이행 확보책임	-과태료 : 수질환경보전법(최대1000만원), 자원절약법(최대 100만원) -과징금 : 수질환경보전법(3억원 이하) -형사벌 : 수질환경보전법(징역과 벌금 규정, 최대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폐기물 관리법(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정리하였음.

다. 국제 협력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는 없거나 오히려 규모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OECD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공기오염물질 배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이산화황가스를 10킬로그램 배출해 OECD(평균 25킬로그램)와 G7(평균 29킬로그램)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90년에 비해 46%나 감소하였다. 산업폐기물의 배출은 40(톤/GDP백만달러)으로 일본과 동일하며, G7(60)과 OECD평균(60)보다는 적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UN과 OECD 등을 통해 범 지구촌의 환경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협정이나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제적 제재조치 등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표 11-3>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국제 비교(2004)

구분	공기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배출		CO ₂ 배출	
	SO ₂ (kg/인)	증감율	NO ₂ (kg/인)	증감율	산업 (톤/GDP)	도시 (kg/인)	(톤/인)	증감율
한국	10	-46	24	47	40	390	0.75	104.6
일본	7	-14	16	-2	40	410	0.25	14.8
미국	49	-31	64	-19	60	630	0.54	19.8
영국	17	-73	27	-43	0	740	0.34	-3.7
G7	29	-45	41	-22	60	630	0.44	13.9
EU15	15	-65	24	-31	40	580	0.39	6.5
OECD	28	-40	34	-17	60	550	0.47	16.5

주 : 증감율은 90년에 비교한 것이며, 산업폐기물은 GDP 백만달러 당 톤임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6-2007*, pp.48-50

그동안 환경관련 협력체제의 구축과정을 보면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의 “인간 환경회의”에서 환경권을 처음으로 채택했으며, 1972년에는 “리우 환경회의”⁴⁾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환경관련 회의의 지속적 개최를 통

4)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향후 지구 환경질서의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환경보전 실천계획인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산림원칙 성명을 채택하였다. ‘리우선언’은 “환경적

해 국제적 동조 및 규제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 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분야에서 220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생물다양성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사막화 방지협약」 등 47개의 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 협약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규제 조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체결된 협약의 부속의정서 제·개정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등 미가입 협약에도 조만간 가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표 11-4>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구 분	대기기후	담수보호	해양어업	생물보호	핵안전	유해물질	기 타	계
채 택	14	15	86	50	13	13	30	221
발 효	10	9	66	40	12	8	19	164
가 입	8	-	16	7	7	2	7	47

자료 : 환경부, 『2007환경통계연감』, p.641, 세세한 국제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동 자료의 pp.642-647 참조

2.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방법은 크게 사법적 구제방법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현을 위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서 전문과 27개 원칙을 선언하였다. '의제 21'은 리우선언의 구체적 실천계획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대책과 대기, 해양 폐기물, 토양 등 부문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재정지원, 기술이전 및 제도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제 21'의 실행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추진상황을 평가,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과 공법적 구제방법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는 공법적 구제방법에 의거 구제요구를 신청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민법에 의한 소송에 의거 사법적 구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5> 환경오염 피해 구제방법

구제제도		구제방법	관련법
사법적 구제	민법에 의한 구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유지청구	민법 제217조
공법적 구제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손실보상	개별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등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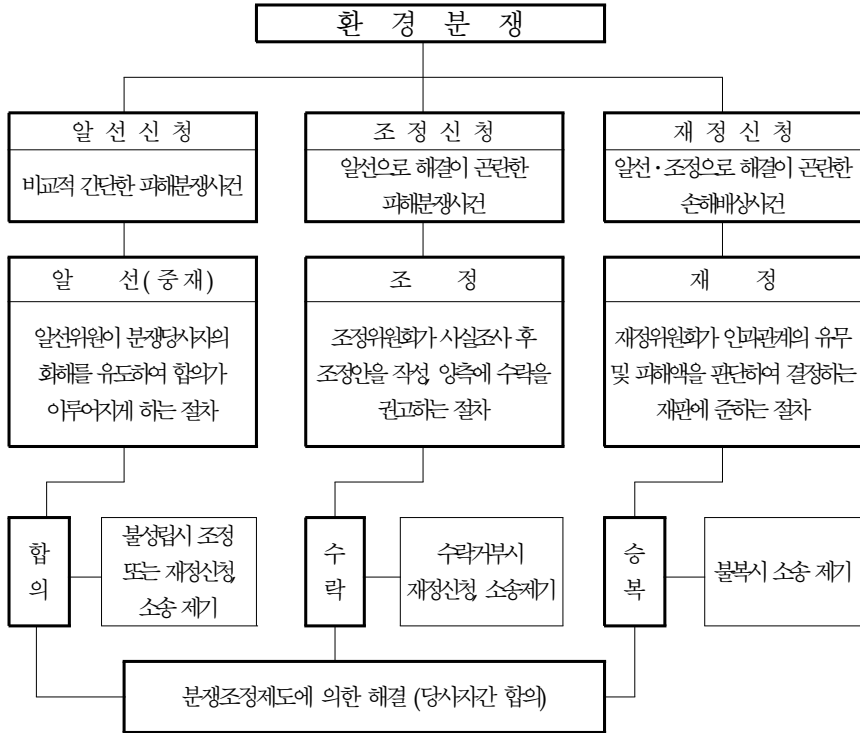
자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05),p.44

가. 환경분쟁 조정제도⁵⁾

환경분쟁제도는 재판지연, 과도한 법률비용, 재판과정의 기술적 난해성 및 경미하거나 특수한 분쟁에 대한 소송절차의 부적합성 때문에 소송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재판외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분쟁조정)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기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기초한 환경분쟁조정법이 1990년에 독립법 체계로 제정되어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다.

5)환경분쟁 조정제도의 연혁 및 현황, 실적, 향후발전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장민 외 4인(2006) 참조.

<그림 11-2> 분야별 환경분쟁 처리절차



자료 : 추장민의 3인(2006),p.34.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강제절차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해자가 조정 또는 재정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임의조정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즉, 가해자가 보상금액 등과 같은 판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강제집행력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006년까지 환경분쟁 조정건수를 보면 중앙분쟁위원회와 지방분쟁위원회가 처리한 총 건수는 2,440건으로 매년 300건 이내로 나타났다. 조정 결과의 형태로 보면 재정은 949건, 조정은 202건, 알선(중재)합의는 1,289건, 자진철회는 396건이 있었다.

<표 II-6> 연도별 환경 분쟁조정·처리현황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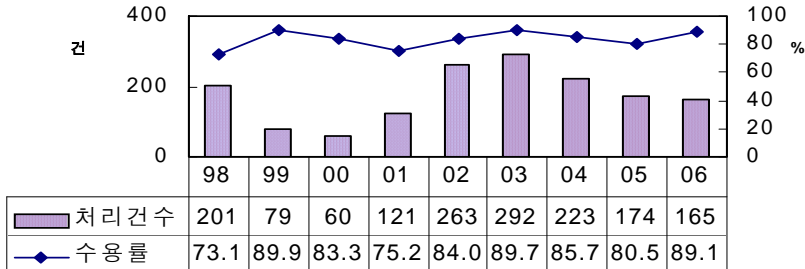
구분	조정·처리현황								자진철회	
	계		재정(裁定)		조정(調停)		알선(중재)			
계	2440		949		202		1,289		396	
소계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1578	862	782	167	39	163	757	532	251	145
'06	165	231	83	84	2	8	80	139	32	48
'05	174	210	100	50	4	9	70	151	18	22
'04	223	179	101	30	1	10	121	139	49	25
'03	292	57	87	3	-	19	205	35	81	4
'02	263	34	118	-	2	33	143	1	30	6
'01	121	46	68	-	7	30	46	16	10	15
'00이전	340	105	225	-	23	54	92	51	31	25

주 : ※ 지방위원회가 조정한 중재합의사건 중 알선사건 132건 포함됨
 자료 : 환경부, 『2007 환경백서』, p.224.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처리 결과에 대해 환경분쟁 당사자들은 처리결과에 대해 70%이상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들어 9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6년의 경우 분쟁조정처리건 165건 중에서 89.1%가 처리결과에 승복하고 10.9%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재정이란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관하여 재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법성,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 7)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적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간에 상호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8)알선(중재)이란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및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하여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이다.

<그림 11-3> 환경분쟁 조정결과 수용률



자료 : 환경부(2007)

또한 우리나라 환경 분쟁을 피해원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환경오염 문제의 핵심인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보다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까지 분쟁처리 된 2,440건 중 86%에 해당하는 2,110건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대기오염은 8%인 190건, 수질오염은 4%인 86건으로 나타났다.

<표 11-7> 오염피해별 분쟁조정 현황

(단 위 : 건수, %)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계	2,440 (100)		2,110 (86)		190 (8)		86 (4)		9 (-)		45 (2)	
(%)	1,578 (100)	862 (100)	1,366 (86)	744 (86)	124 (8)	66 (8)	58 (4)	28 (3)	9 (1)	-	21 (1)	24 (3)
'06	165	231	150	202	8	17	3	6	-	-	4	6
'05	174	210	151	187	11	8	5	3	-	-	7	12
'04	223	179	206	159	8	9	3	8	1	-	5	3
'03	292	57	264	52	19	-	8	2	-	-	1	3
'02	263	34	229	27	26	6	4	1	-	-	4	-
'01	121	46	103	37	11	6	7	3	-	-	-	-
'00 이전	340	105	263	59	41	41	28	5	8	-	-	-

주 : 기타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일조권, 입지선정 등임

자료 : 환경부(2007)

환경 분쟁 조정결과 배상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평균배상율(배상신청금액대비 배상금액의 비율)은 9.5%이며, 건당 배상금액은 4,183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율은 2001년에 17.7%로 최고에 도달한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 5.3%로 연평균보다 낮다. 또한 건당 배상금액도 감소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로는 2,500만원에 불과하다.

<표 11-8> 환경분쟁의 배상 결정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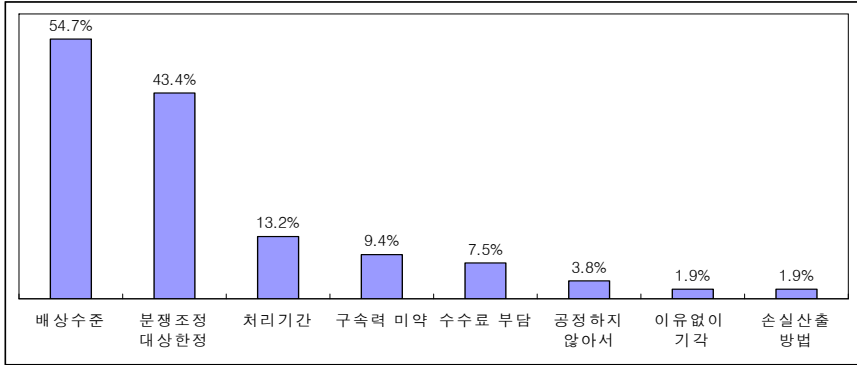
(단위 : 건, 천원, %)

구 분	배상 신청 금액		배상결정 금 액(C)	배상율 (C/B)	건당금액 (C/A)
	건수(A)	신청금액(B)			
계	628	220,587,900	26,268,998	9.5	41,830
'06	62	29,794,319	1,577,988	5.3	25,451
'05	74	30,469,412	2,566,881	8.4	34,688
'04	80	28,267,030	2,645,041	9.4	33,063
'03	66	25,246,840	4,020,242	15.9	60,913
'02	105	40,737,955	4,250,725	10.4	40,483
'01	59	15,445,239	2,735,743	17.7	46,369
'00	32	11,500,719	899,000	7.8	28,094
'99	32	11,266,595	675,276	6.0	21,102
'98이전	118	81,373,661	6,898,102	8.5	58,458

자료 : 추장민외 4인(2006),p.50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조정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율이 9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환경소송에 대한 대체적·보완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분쟁이 점점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분쟁 조정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조사자의 54.7%는 배상액 수준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생각하며, 분쟁조정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불만족한다는 사람은 43.4%이며, 처리기간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사람은 1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4 > 분쟁조정 결과 불만족 부분(Base=불만족자 53)



주 : 조사대상자 104명 중 51.0%인 53명이 불만족으로 나타남

자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월드리서치), 2006.7,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관련 여론조사』, p.50

이와 같이 환경분쟁 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율은 높지만, 배상책임 이행 방법과 배상이행 강제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 또는 오염현장 복구 등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EU 등과 같이 엄격책임법리와 더불어 책임이행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오염유발자 책임부담원칙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나. 법원 소송 방법

1) 민사소송 방법

가) 손해배상청구

민법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과 “민법 제217조 유지청구”에 의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제받는 방법이다. 유지청구는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오염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구제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관련법에서는 더욱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입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규⁹⁾에서는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과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책임이행수단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인과관계”라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환경위험의 특성상 일반적인 피해자가 사고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설사 사고유발자와 손해배상책임이 명백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는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분쟁의 경우 원인물질 및 원인자의 특징이나 원인물질의 도달 경로의 명확한 추정 등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분쟁에 있어서도 일반 불법행위 사건에서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입증곤란 때문에 피해자는 패소하거나 가해자 측의 화해압력에 굴복하기 쉽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를 완화 내지 경감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개연성이론, 일부추정설, 위험영역설 등의 이론이 대두되어 종래의 입증책임 이론을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다¹⁰⁾. 환경책임법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 과실책임에서 엄격책임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나) 유지청구

민법 제217조에 의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유지청구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9) 행위자에 대해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규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방지법, 광업법이며,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은 원자력손해배상법, 수산업법 등이 있다.

10) 오석락(1976), 공해소송과 인과관계의 증명도

적당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훼손, 인체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이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생산조업의 제한·정지나 일정한 예방 또는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 이러한 행정조치와 달리 오염시설에서 장래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이 유지청구이다.

추장민의 4인(2006)은 이러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유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피해의 정도가 인정할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야 한다. 둘째, 침해행위가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침해행위가 사업활동이라는 허용된 행위에 기인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하여 곧 유지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허용치 않음으로써 생길 피해자의 불이익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관적 욕망(慾望)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유지청구의 허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은 유지청구 인정에 제약조건이 되며,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구조상 유지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유지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조업 혹은 개발정지·중지 내지 제한보다는 적정한 방지시설 혹은 보호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¹⁾

2) 공법의 쟁송에 의한 방법

공법적인 규제방법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행정상의 손해전보방법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11) 추장민의 4인(2006), p.19

경우에 자연환경보전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 의거 행정상의 손실 보상을 받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거 행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생긴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3) 환경소송 현황¹²⁾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사회화에 따라 80년까지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룬 현 시점에서는 성장주도 과정상에서 간과되었던 환경문제 해결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강과 노후 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 대해 이해관계자(개인, 집단, 정부, 지방자치단체)간에 많은 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법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분쟁은 사인간에 발생하는 유형보다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대형국책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환경분쟁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하기 보다는 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공법적인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 그 규제조치의 발동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대부분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강화되고 있지만 국가가 진행하는 대형국책사업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¹³⁾.

12) 추장민의 4인(2006),pp.58-59.

13) 국가와 인근 주민 및 시민단체 간의 환경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화호 사업, 영월댐 건설사업, 새만금 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천성산 구간), 서울 외곽도로사업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이다. 이중에서 시화·반월공단 지역의(시화호의 수질 악화) 환경갈등은 갈등당사자간의 협상 및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였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은 5년 동안 행정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표 II-9> 분야별 환경소송 추이

년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해양 오염	소음 진동	악취	유해 물질	일조방해· 조망저해	폐기물	기타	계
계 (%)	10 (6.8)	31 (21.3)	55 (37.9)	3 (2.1)	10 (6.8)	2 (1.3)	1 (0.6)	10 (6.8)	21 (14.4)	2 (1.3)	145
'06. 5	1	2	8	1	1	-	-	1	1	-	15
'05	6	6	10	-	1	-	1	1	7	-	32
'04	1	11	7	-	6	1	-	4	3	-	33
'03	-	-	3	1	-	-	-	-	3	-	7
'02	-	2	2	-	1	1	-	-	1	-	7
'01	1	2	7	1	1	-	-	-	1	-	13
'00	-	1	4	-	-	-	-	-	-	-	5
'99	-	-	2	-	-	-	-	3	-	-	5
'98	-	4	6	-	-	-	-	-	1	1	12
'97	-	1	3	-	-	-	-	1	4	1	10
'96	1	2	3	-	-	-	-	-	0	-	6

주 : 표에서 제시한 분야별 환경소송 건수는 종합법률정보의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임
 자료 :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

2006년 5월 현재 환경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건수를 살펴보면, 자연생태계 파괴가 55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질오염(31건, 21.3%), 폐기물(21건, 14.4%), 대기오염(10건 6.8%), 소음진동(10건 6.8%), 일조 방해 및 조망권 저해(10건,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추이에 있어서는 “자연생태계 파괴”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며, “수질오염” 소송은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 “관계행정기관에 민원 제기” 등의 방법보다 “소송”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II-10> 시민단체의 환경소송 제기현황

년 도	대기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조망저해	폐기물
총계	1	31	3	1	1	6
2006.8	-	5	-	-	-	-
2005	-	10	-	-	-	6
2004	-	7	1	-	1	-
2003	-	4	-	-	-	-
2002	-	2	2	1	-	-
2001	1	3	-	-	-	-

Ⅲ. 국내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및 보험활용 현황

1. 정부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현황¹⁴⁾

가. 환경오염리스크관리 수단

환경은 모든 국민, 더 나아가 지구촌 인구가 공유하고 장래 후대에까지 넘겨주어야 하는 공공재이다.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은 물론이며 국민과 정부도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는 각 오염원별 오염방지를 위해 오염원별 배출허용기준, 방지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염원이 방출된 경우 오염지 정화 및 복구를 위한 비용 부담이나 오염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상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표 III-1> 정부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수단

연도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수단	오염발생원인자 통제 수단
직접적 수단	-환경 인프라구조의 정비 o 오수처리서비스 o 하수도 서비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투자 -공유화	-직접규제(인허가, 오염물질 배출기준, 기술기준) -토지이용규제
간접적 수단	-연구개발 -환경에 기반한 자금 조달	-부과금, 보조금 -배출권 거래제도, 감면세
기본적 수단	-공동체가 알아야 할 권리 규정(환경교육, 환경지표)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배상책임법 제정(엄격책임, 보상기금, 강제보험) -환경정보공개제도 마련(회계, 감사), 환경라벨링제도	

자료 : 植田和弘(1997),p.107 및 김승우 외 7인(2006) p..203

정부는 이러한 법률적 기반과 더불어 오염유발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간접

14)여기서 인용한 통계자료는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 2007』 및 『환경백서 2007』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적인 수단으로 환경부담금, 보조금,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에코등급부여제도 운영, 환경관리등급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도는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방지노력을 실천하여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이 되어 있다.

나. 환경개선 중심 예산 집행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예산규모는 2006년의 경우 3조 3,978억원으로 GDP의 0.39%, 정부 전체예산의 1.94%이다. 과거 10년간 경제규모와 정부예산이 연평균 7%이상 증가한 것에 비해 환경예산은 연평균 4.3%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이나 시설 규모의 대형화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환경관리 등을 위한 예산도 증가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예산은 경제규모와 정부예산의 증가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책정되고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다. 또한 환경정책 예산규모도 관리대상이 증가하는 만큼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의 환경정책 예산은 총 2조 9,992억원으로 환경예산의 88.3%에 해당하며, 자연 및 환경보전관리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표 III-2> 국내 환경예산 지출규모

(단위 : 억원, %)

연도별	GDP (a)	정부예산 (b)	환경예산 (c)	환경예산 점유비	
				GDP(c/a)	정부예산(c/b)
1996	4,184,790	853,083	22,406	0.54	2.63
1998	4,443,665	1,103,139	28,121	0.63	2.55
2000	5,786,465	1,251,792	30,581	0.53	2.44
2002	6,842,635	1,497,133	33,465	0.49	2.24
2004	7,784,446	1,612,627	32,323	0.42	2.00
2005	8,158,099	1,679,332	35,578	0.44	2.12
2006	8,769,957	1,753,882	33,978	0.39	1.94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7』, 2007, p.596

<표 III-3> 환경부 예산 투자내역

(단위 : 억원)

분 야	1996	1998	2001	2003	2004	2005	2006
합 계	8,851	11,131	14,143	14,037	14,519	28,557	29,992
자연 및 환경 보전,관리비	8,545	10,786	13,573	13,334	13,853	27,850	29,177
환경분쟁조정비	7	7	10	12	13	13	13
유역관리비	166	194	326	371	327	328	393
교 육 및 연구	132	144	233	320	326	366	408

자료 : 환경부, 『2007 환경통계연감』 제20호, 2007, p.597

다. 환경부담금 제도를 통한 관리

통상 환경정책수단은 지시 및 통제방식의 직접규제와 시장 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제도로 나눌 수 있다. 직접규제는 시행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므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세계 각 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출행위의 인·허가, 지도·점검, 환경기준이나 시설기준 설정 등 정부가 오염시설이나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오염자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방법이다. 경제적 유인수단으로는 부과금(charge), 보조금(subside), 예치금(deposit refund), 시장형성(market creation), 이행인센티브(enforcement incentives), 배출권거래제(tradable permit system) 등을 들 수 있으며, 시장 기구를 통해 오염저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수단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 문제를 시장 기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직접규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오염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9월 1일부터 환경부담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1990년 이전까지 직접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수단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1990년 이후부터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25종의 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징수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III-4>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

유형(목적)	현행 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억제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축산),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시설물), 협의기준초과부담금(대기, 수질),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 등 3대강유역)
환경자원의 보전	수질개선부담금(지하수), 물이용 부담금(한강 등 4대강 유역), 생태계보전 협력금
폐기물배출저감 및 재활용촉진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예치금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원상회복예치금
사업비용 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 하수도), 손괴자 부담금(수도, 하수도), 환경오염 방지사업 비용부담금

자료 : 환경부(2007 b)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제도가 오염억제, 안정적인 투자자원 조달 등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평가 및 통합·보완하여 환경세로 전환, 새로운 환경세제의 도입 등 경제적 유인제도의 보완과 신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배출 부담금(effluent charges)¹⁵⁾ 징수액은 2005년말 현재 800억원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는 추이다. 이는 공단폐수처리장의 설치·운영 등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업자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는 배출허용기준량과 조세부과제도를 동시에 채택하는 것으로서 일정수준의 배출허용기준량을 설정하여 이 기준량을 초과하여 오염을 배출할 때는 조세와 같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장점으로는 첫째, 확대 오염자 부담원칙에 부분적으로 부합되며, 둘째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오염방지노력을 하도록 자극시킨다. 셋째, 조성된 자금으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나 환경을 회복시키는 활동에 충당할 수 있다.

15) 대기오염물질(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악취 등 10종), 수질오염물질(BOD, COD,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연(납) 화합물, 비소, 수은,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5종), 축산폐수 분야 (BOD, 부유물질 2종) 등 총 27종이 부과되고 있다.

<표 III-5> 환경오염 부담금징수 금액 현황

(단위 : 천만 원)

	환경	재활용	수질	배출금	폐기물	합계
1996	1,577	338	225	-	242	4,379
1997	2,189	418	186	-	430	5,220
1998	2,673	385	110	-	451	5,616
1999	2,976	267	132	-	434	5,808
2000	3,418	308	96	-	207	6,029
2001	4,088	321	107	-	515	7,032
2002	4,526	138	137	163	499	7,464
2003	4,829	35	133	143	468	7,611
2004	5,247	41	146	131	352	7,922
2005	5,238	34	170	113	449	8,008

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시행

환경부는 기존 이원화되어 있는 친환경상품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구매 규정을 통합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2006년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은 8,616억원으로 2005년 대비 10% 가량 증가하였다.

<표 III-6>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액

(단위 : 억 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금액	2,099	2,626	2,549	7,870	8,616

친환경상품 분야의 국가종합계획인 “제1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기본계획(’06

~'10"에서는 2010년까지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을 80% 이상으로 달성하여 16조원의 친환경상품 시장규모 달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친환경상품 공급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시행하여 목표 달성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표 III-7>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및 시장 활성화 전망

구 분	'04	'07	'10
공공기관 구매비율	31%	60%	80% 이상
공공기관 구매금액	2.6천억원	9천억원	1.4조원
친환경상품 시장규모	3.2조원	10조원	16조원
환경마크 대상품목	102개	130개	155개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7』, p.233

2. 기업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현황¹⁶⁾

가. 친환경상품 인증 취득

친환경상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 중금속의 사용 제한, 오염물질 방출량 제한 등을 통해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품 환경성규제가 국제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친환경상품의 생산·사용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지속가능 소비·생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10개년 프로그램 수립을 권장하였다. OECD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정책과 공공구매 정책을 접목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16) 여기서 인용한 통계자료는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 2007』 및 『환경백서 2007』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추진하고 있다. 특히 OECD에서는 2003년 “환경친화적 정부구매 정책” 보고서를 통하여 친환경적 정부구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친환경상품의 정부구매 정책이 강제성을 지닐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03년 6월 18일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채택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제품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근원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¹⁷⁾.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구매 규정을 통합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과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친환경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 환경친화기업 인증취득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EFC : Environmental Friendly Company)는 기업이 환경규제치만 준수하는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1995년 4월에 제정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과 동년 12월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제도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03년 5월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근거 규정을 일원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7) 환경부, 『환경백서 2007』, p.229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제품설계에서 원료 조달, 생산공정, 사후관리까지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오염물질 저감계획과 방법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개선, 관리개선, 현장 재이용 및 방지시설의 운영 최적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원칙적으로 면제하여 주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체하여 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과 융자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행위라도 2년에 3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지정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유역 오염행위에 따른 방제조치 미이행,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미이행 등의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의 오염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표 III-8> 연도별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수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업체수	122	99	126	134	146	157	167	174

다. 환경라벨링 취득¹⁸⁾

오염원에 대한 직접적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 개선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상품을 선택·사용하게 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는 환경라벨링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18) 환경부(2007 a), pp.244-253 참조

환경마크제도는 1992년 4월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994년 12월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가 관련법령 운영, 관계기관 협의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대상제품 선정, 환경마크 사용의 인증,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인증은 제도 도입 첫 해인 1992년에 재생종이류, 재활용 화장지류 등 4개 품목을 선정한 이래 대상제품을 꾸준히 확대하여 2007년 9월말 기준 총 120개 대상품목이 선정되었으며, 1,178개 업체에서 5,198개 제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였다.

환경라벨링 제도는 3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그중 “Type I”이 잘 알려진 환경마크제도이다.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제조·유통·사용 또는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Type II”는 생산자 자신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조건 등을 규정하는 제도(제품의 환경성 자기주장제도)로서 소비자 기만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다. “Type III(환경성적표지제도)”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재료 및 제품의 생산·유통, 소비 및 폐기단계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잠재적인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도표나 그래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표 III-9> 환경리벨링제도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제도유형	주요내용
환경마크 (Type I)	-제품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기준 및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에 합당한 경우 환경마크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 -동일 제품군 중에서 환경성과 품질 등이 탁월한 상품(통상적으로 상위 20%정도)에 대하여 환경마크 사용을 인증
환경성 자기주장 (Type II)	-제품의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 과 준수요건을 규정하는 제도 -공급자의 무분별한 환경성 주장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 및 혼란 예 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함
환경성적 표지 (Type III)	-제품에 대한 전 과정평가(LCA)가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검 증하고 계량화된 환경정보를 인증하는 제도 -소비자에게 제품의 생산·소비로 인한 환경영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자의 환경적 수요에 맞는 선택적 구매를 유도

라. 환경경영인증(ISO14001) 취득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 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사회집단의 공동의 노력을 촉구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공동으로 “환경에 관한 전략자문그룹”을 설치하였다. 동 그룹은 환경경영의 통일된 접근방법 개발 및 보급, 환경성과의 개선을 달성하고 측정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 배양, 환경을 빌미로 한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제 교역을 촉진하는 것 등 환경경영 국제표준화작업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표준화 작업 필요성을 ISO에 제시하였고 이에 의해 탄생된 것이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00시리즈이다. 동 시리즈는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규칙과 환경심사, 환경레이블의 선언, 환경성과 평가, 전과정 평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의사소통, 온실가스 등으로 구성된다(다음표 참조). ISO 14001은 1996년 10월 국제규격으로 제정 공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제도의 운영주체는 한국표준인증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약정기관은 3년이며 인증비용은 50~12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표 III-10> ISO 14000 계열 인증제도

구분	내 용	규격번호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	ISO 14001/4
환경심사(EA)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칙, 심사절차와 방법, 심사원자격을 규정	ISO 14010/11/12
전과정평가(EPE)	주식활동의 환경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	ISO14031, ISO/TR14032
전과정평가(LCA)	어떤 제품, 공정, 활동의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영향 평가 방법.	ISO 4040/41/42/43 ISO/TR 14049
환경라벨링(EL)	제3자 인증을 위한 환경마크 부착 지침 및 절차, 자사 제품의 환경성 주장의 일반지침 및 원칙 등을 규정	ISO 14020/21/24 ISO/TR 14025
용어 정의	환경용어 정의	ISO 14050

자료 : 국제인증컨설팅(주) 홈페이지(<http://www.icc-iso.com/>)

국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인증받은 국내 업체는 도입 초기인 1996년과 1997년에는 109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2003년 이후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증대해짐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2006년의 경우 2,437개 업체가 신규로 인증받았으며 인증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5,693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입증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인증이 취소되는 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번 인증받은 환경경영시스템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표 III-11> ISO 14001 인증기업 현황

구분	'96~'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발급	109	45	98	184	265	371	595	1,240	2,903	2,437
취소	0	7	5	21	40	90	106	246	515	1,524
증감	109	38	93	163	225	281	489	994	2,388	913
유지	109	147	240	403	628	909	1,398	2,392	4,780	5,693
계	109	147	240	403	628	909	1,398	2,392	4,780	5,693

자료 : 환경부, 2007환경통계연감, p. 662.

마. 환경오염리스크 관리 조직 및 경영 인식정도

기업이 환경오염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고, 사전 및 사후 대책을 포함한 리스크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 전략으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선택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의 절차를 보면 기업에 존재하는 리스크의 파악이다. 이는 기업이 안고 있는 환경오염리스크를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및 진동, 악취, 기업휴지 등으로 분류하고 그 리스크별 손인과 위태를 파악해야 한다. 파악된 리스크별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발생빈도와 손해 규모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된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리스크 통제와 사후적인 대책인 보험가입 등의 리스크재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개념에 대해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의 질적인 평가에 앞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전담조직 운영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13.4%의 기업만이 과단위 이상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52.3%는 담당자만이 있으며 34.3%는 아예 담당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조직운영상의 큰 차이가 있는 나타났는데, 300명이상의 기업의 경우 71.8%가 과단위 이상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28.2%는 담당자를 두고 있는 반면에, 20명 미만 기업의 경우 50.9%의 기업은 전문조직을 갖추지 않고 담당자만 두고 있으며, 49.1%는 담당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 리스크에 아주 취약한 실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¹⁹⁾. 또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인식을 보면 중소기업의 8.1%만 경영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9.6%는 다른 요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52.3%는 다른 과제와 동일(33.9%)하거나 다른 과제보다 덜 중요하거나 무관심하다라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환경오염리스크 관리는 주로 정부가 정해준 배출허용기준, 부담금 납부 등의 정부정책에만 따르는 형태에 치중되어 있을 뿐 기

19) 이창윤·이윤미(2006), p.65.

업 스스로 오염사고 발생 후의 보험가입 등의 적극적인 재무적 대책 마련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우리나라에 미국이나 EU와 같이 환경책임법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기업들의 리스크관리 형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 활동(normal operation)을 하였더라도 오염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3. 환경오염보험제도 활용현황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리스크관련 보험제도는 관련환경법규에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이행을 강제화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 등이 스스로 보험을 이용한 환경오염 리스크를 강구하는 체제로의 발전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국내 환경보험의 종류와 운영경과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보험상품의 종류 및 시장 규모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민영보험시장 형태로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조치 이를테면 최저 보험가입금액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보험상품은 미국 등과 같이 독립적인 환경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 못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의 특약형태로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 운영의 변화는 주로 미국의 환경오염리스크의 담보 동향과 해외재보험시장의 동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변천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2> 국내의 환경오염(급격, 우연) 담보 보험 현황

	국문영업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Package Policy
보통 약관	오염리스크와 티끌·분진·먼지·소음은 면책으로 규정	오염리스크는 면책으로 하고 있음	-
특별 약관	시설소유권리자 도급업자 특약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 (I): 손해배상금 담보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 (II): 손해배상금과 오염제거비용을 함께 담보	Pollution Liability Extension Clause를
추가 특약	환경오염사고추가특약에서 손해배상금과 오염제거비용, 오염제거작업 중의 사고를 담보	-	첨부하여 담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국문과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담보, Package Policy에서 특약담보, 별도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전자의 3가지 형태는 환경오염 중 급격하고 우연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이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오염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오염사고도 담보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이다. 특히 패키지보험에서는 해외재보험시장의 담보력에 따라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해주거나 제외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계약자들의 리스크관리 목적이 아닌 해외재보험자의 제공의지에 의해 제공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국내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환경오염리스크의 담보의 변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문약관의 경우 1988년 이전까지는 보통약관에서 급격한 오염손해에 한정하여 담보하였으나, 1988년에 약관을 개정하여 환경오염리스크를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하는 대신에 급격하고 우연한 환경오염 사고(sudden and accident)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오염지의 오염제거비

용 및 제거작업 중의 사고를 “환경오염사고추가특약”으로 담보하고 있다. 현재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은 오염손해와 티끌·먼지·분진·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후자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종종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영문배상책임보험에서 환경오염리스크의 담보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변화와 매우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손해보험시장이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분석 기술 등이 미흡하여 해외담보력을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영문 배상책임보험에서 환경오염리스크 담보는 1973년에 약관을 개정하여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를 보통약관에서 담보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에 미국의 배상책임보험 위기로 인해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약관도 이에 맞게 1986년에 개정되었다. 주요사항은 환경오염리스크를 보통약관에서 절대면책으로 처리하고, 급격하고 우연한 환경오염사고(sudden and accident)에 한하여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도록 한 것이다. “오염배상책임 담보특약 I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 I)”을 첨부한 경우에는 오염사고의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오염배상책임 담보특약 II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 II)”를 첨부한 경우에는 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오염제거비용을 동시에 담보하도록 하여 계약자의 선택 폭을 넓혀 준 것이 특징이다. 영문약관에서 담보하는 손해로 “Liability arising out of the seepage, pollution contamination caused by sudden, unintended and unexpected happening”로 규정하고 있다. 동 약관의 문제점으로는 오염제거 비용(clean-up costs)을 손해액의 합계로 볼 것인지, 부수적 비용(supplementary payments)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비용의 보상한도액 적용여부는 명확하지 못한 상태이다²⁰⁾. 최근에는 환경책임법리를 강화한 미국, EU 등의 보험상품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외에 점진적인

20) 지수현(1998), pp.388-389.

사고(gradual pollution)까지 담보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증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 EU와 같이 환경책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 등 환경오염책임부담자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환경오염보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손해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판매실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개사가 최근 2년간 영문약관 2건(2억 4천900만원 보험료)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계약 건수는 패키지약관에서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2건 이상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환경오염배상책임 활성화 요소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또 수요만 있으면 그 수요에 맞추어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국내 손해보험회사²¹⁾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환경책임범위, 리스크평가 곤란, 회사의 담보력 부족, 환경 관련 전문인력 부족, 환경담보 상품 부재, 위험분산 체계 미흡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선적인 1순위로는 환경오염리스크의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대해 36.4%가 응답했으며, 상품부재에 대해 27.3%가 응답했으며, 위험분산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18.2%가 응답했다. 반면에 가장 영향력이 낮은 요인인 6순위 응답결과를 보면, 담보력 부족이 54.5%, 위험분산체계 미흡에 대해 36.4%가 응답하였다. 또한 회사규모별로 보면 대형사들은 주로 환경오염리스크 평가를 위한 방법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들

21) 국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10개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2개 외국사 국내 지점(미쯔이, 페더럴)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은 관련 보험상품의 부재를 주로 들고 있어 회사 규모에 따라 시장의 인식에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국내 손해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개사,%)

사유	순위별 응답회사수							순위별 응답회사 비중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환경책임범위	1	5	2	1	2	-	2.8	9.1	45.5	18.2	9.1	18.2	-
리스크평가곤란	4	2	3	1	1	-	2.4	36.4	18.2	27.3	9.1	9.1	-
담보력 부족	1	-	2	-	2	6	4.8	9.1	-	18.2	-	18.2	54.5
전문인력부족	-	3	2	4	2	-	3.5	-	27.3	18.2	36.4	18.2	-
상품부재	3	1	2	2	2	1	3.2	27.3	9.1	18.2	18.2	18.2	9.1
위험분산체계미흡	2	-	-	3	2	4	4.4	18.2	-	-	27.3	18.2	36.4

주 : 순위가 1이면 가장 시급한 것이며, 6은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함.

다음은 국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성장 전망을 설문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들의 25%(3개사)는 “환경보험시장이 현재와 같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75%(9개사)는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환경배상책임 보험시장 전망

(단위 : 개사, %)

항 목	응답회사 수	점유비
현재 보다 매우 활성화될 것이다	-	-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9	75.0
현재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25.0
현재보다 축소될 것이다	-	-
거의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	-
합 계	12	100.0

이는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환경오염배상책임법 제정 등을 통해 오염유발자에 대한 책임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예상하며,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예로는 정부가 2005년 11월에 발표한 「국가 환경종합 계획」²²⁾ 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정부는 환경오염책임제도를 강화하고 환경분쟁 관련 제도의 개선책으로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중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배상책임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였으며 기업들은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법규 준수 차원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환경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활성화요소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였다. 설문은 활성화요소로 “환경책임법 제정, 리스크평가 전문기술인력확보, 국내 환경보험상품개발, 공동인수제도 도입,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국가보험료 보조” 등을 제시하고 가장 우선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했다. 이에 대해 가장 시급한 1순위는 환경책임법 제정(75%, 9개사), 국내 실정에 맞는 상품개발(18.2% 2개사)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가장 시급하지 않는 6순위 사항으로는 국가재보험제도 (33.3% 4개사),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보험료 보조(27.3%,3개사)가 응답해 비교적 위험분산체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 국가의 환경정책과 보험제도를 연계한 환경책임제도를 강화하고, 2)우리나라 환경피해자의 정보 요구권을 정립, 3) 잠재적 환경오염자에게 환경위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오염유발자의 무과실·연대책임을 강화하여 오염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의무를 완화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부족한 정보력 보완, 5)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환경피해구제제도의 정립, 6) 에너지·자원 관련법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검토하여 재정책임 내지 책임보험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 7)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 환경관리체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표 III-15>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환경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요소

(단위 : 개사,%)

활성화 요소	순위별 응답회사 수							순위별 응답회사 점유비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환경책임법제정	9	2	-	1	-	-	1.4	75.0	16.7	-	8.3	-	-
리스크평가전문기술인력확보	1	1	6	1	1	1	3.3	9.1	9.1	54.5	9.1	9.1	9.1
국내 상품개발	2	4	1	2	1	1	2.9	18.2	36.4	9.1	18.2	9.1	9.1
공동 인수폴제도	-	1	1	4	4	1	4.3	-	9.1	9.1	36.4	36.4	9.1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	2	2	2	2	4	4.5	-	16.7	16.7	16.7	16.7	33.3
중소기업에 국가보험료 보조	-	3	1	1	3	3	4.3	-	27.3	9.1	9.1	27.3	27.3

이는 국내 환경보험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그동안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험상품의 제공을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일부 보유하고 나머지는 출재하여 리스크인수에 따른 부담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규모가 증대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리스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험상품 영위에 있어 위험분산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주요국의 환경오염보험제도 운영현황

1. 미국

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오염유발자에 대한 책임부담법리와 책임이행을 위한 재무적 대책 등을 담은 환경법의 제정의 영향을 받아 잠재오염유발자들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상품 및 약관체계가 글로벌 마켓의 표준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의 변화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다음에서는 미국의 환경관련법에서 책임법리 등의 변천에 따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관련법규

미국에서 환경관련 법률의 법리체계와 판례의 경향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1970년대 초기까지는 1948년 『수질오염방지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1970년 『수질개선법(Water Quality Improvement Act)』 등의 법률에 의거, 특별기금을 통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 이후 1978년 Love Canal 사건²³⁾을 계기로 이들 법만으로는

23)1892년 윌리엄T.러브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약 7마일에 상당하는 운하를 건설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던 중 1910년 미국의 경제 불황과 교류전류의 발명으로 인한 장거리송신의 무용화로건설이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건설현장에는 길이 1마일, 너비 10야드, 깊이10~40피트인 러브운하라고 부르는 웅덩이만 남게 되었다. 그 후 몇 십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1940년대에 들어와 Hooker Chemical사가 인수하여 공장에서 버리는 화학물질을 철제 드럼통에 넣어 이 웅덩이에 매립하였는데. 이때 매립된 화학물질은 PCB, 린덴, 다이옥신, 트리클로로페놀,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등 매우 유독한 물질이었다. 1942년부터 1950년 사이에 무려 2만여t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운하에 매립한 후 1953년 이 회사는 이곳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시교육위원회에 1달러를 받고 기증하였고, 교육위원회는 이곳에 초등학교와 주택을 건설하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피부병과 두통이 자주 발병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높았다. 1976년 큰 홍수가 있는 후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어 갔고. 연못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토양에서도 유독 물질을 포함한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왔다. 또한 많은 주민이 신체의 통증을 호소했다. 뉴욕 주 보건당국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이 지역의 오염도가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연방환경청은 1978년 미국 역사상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복구와 방지가 곤란함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법체계가 마련되었다.

<표 IV-1> 미국의 환경관련 연방법 주요내용

법 명	주 요 내 용	시행 연도
Clean Water Act	연방수질오염방지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은 수질기준과 규제권한을 각주에 위임했으나 석유유출 오염 등으로 법률기능 발휘가 미흡했음	1948
	식수원 등에 오염물질의 방류를 규제 또는 금지하여 지표수의 질적 향상을 도모. 유류취급업체는 누출방지/통제 등 관리계획의 시행이 의무화됨	1977
Clean Air Act	고정적 또는 동적으로 공기오염물질의 방출을 규제하여 청정한 공기유지, SOX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1955
Toxic Substance Control Act	적절한 안전대책을 하지 않은 유독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방지 등 화학품 제조업체를 규제	1976
RCRA	위험폐기물을 제조, 운송, 취급, 저장, 처리를 하는 자에게 엄격한 관리요건을 부과하고, 지하저장탱크, 의료폐기물, 비위해성 고체폐기물도 규제함. 보험가입 등의 재무적인 요건을 부과함	1976
CERCLA	위험한 물질이 통제하지 않는 장소에 있거나 방치된 경우, 잠재책임자에게 정화비용을 엄격책임, 소급책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킴	1980
Motor Carrier Act	주간 주내 자동차 운송시 유해물질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유해물질 운송업체는 재무적인 최소책임을 부담(자동차보험의 특약담보)	1980
Oil Pollution Act (1990)	석유 또는 유해물질의 미국 연근해 누출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표준규격을 적용해야 하며, 재무적인 책임을 보증해야 함	1990

자료 : Maleki · Flitner · Trupin(2005).p. Environmental Loss Exposures and Insurance 11.7, 및 <http://www.epa.gov/lawsregs/laws/index.html> 참조.

처음으로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문제의 학교를 폐쇄하였다. 연방환경청은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1980년 주변 88여 가구를 환경재난지역으로 추가하였다. 그 후 이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소모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유령도시로 남아 있다.

1) 자원보존복구법

『자원보존복구법 (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24』은 도시와 산업에서의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원 보존 및 생산되는 폐기물의 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1976년 10월에 기존의 『고체폐기물처리법(Solid Waste Disposal Act 1965)』에 위험폐기물 관리를 추가하여 개정한 법률로 현재까지 9번의 개정이 있었다. 동법은 위험폐기물(hazardous waste)을 생산하는 자와 운송하는 자(generators and transporters) 그리고 위험폐기물의 취급·저장·취급·처리시설(TSD :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관리요건(management requirement)²⁵을 부여하여 요람에서 무덤 까지 위험폐기물을 통제하는 규제법이다. 동법에서 관리되는 대상은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solid waste program), 위험폐기물 프로그램(hazardous waste program)²⁶, 지하저장탱크 프로그램(underground storage tank program)²⁷으로 구분되어 있다.

24)자원보존복구법은 U.S.C Title 42(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CHAPTER 82(SOLID WASTE DISPOSAL)에 조문화되어 있어 “SOLID WASTE DISPOSAL ACT”라고도 하며, 10개의 하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법 운영에 필요한 규제조항(regulation) 30개(40 CFR 240~40 CFR 282)를 운영하고 있다.

SUBCHAPTER I—GENERAL PROVISIONS

SUBCHAPTER II—OFFICE OF SOLID WASTE; AUTHORITIES OF THE ADMINISTRATOR

SUBCHAPTER III—HAZARDOUS WASTE MANAGEMENT

SUBCHAPTER IV—STATE OR REGIONAL SOLID WASTE PLANS

SUBCHAPTER V—DUTIES OF SECRETARY OF COMMERCE IN RESOURCE AND RECOVERY

SUBCHAPTER VI—FEDERAL RESPONSIBILITIES

SUBCHAPTER VII—MISCELLANEOUS PROVISIONS

SUBCHAPTER VIII—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INFORMATION

SUBCHAPTER IX—REGULATION OF UNDERGROUND STORAGE TANKS

SUBCHAPTER X—DEMONSTRATION MEDICAL WASTE TRACKING PROGRAM

25)위험폐기물의 정보관리를 위해 목록(manifest)을 첨부하는 등 관리요건을 부과하였다.

26)위험폐기물의 대상을 법의 하부 규제조항인 “40 CFR §261.31~261.33”에서 발화성, 부식성, 반응성, 독성에 따라 유해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http://www.epa.gov/epaoswer/osw/hazwaste.htm>).

27)1986년에 개정하여 석유지하저장탱크와 위험폐기물 등 기타 물질의 환경오염도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동 법의 운영주체는 환경청(EPA)으로 위험폐기물을 판정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 폐기물이 처음 생성되는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처리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관리하게 된다. 동 법의 제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다음과 같이 1) 위험 산업폐기물의 확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위험 산업폐기물의 생성에서부터 최종적인 처리까지의 과정에 대한 등록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위험산업폐기물의 처리업체에 대한 보관 및 처리의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4) 주정부의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폐기물 취급업체의 재정책임 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 자원보존복구법상 재무적 책임 한도

적용 대상자		재무적 책임 한도액	
		1 사고당	연간 총한도액
비석유 물질	취급, 저장, 처리업자	100만달러 이상	200만달러 이상
	매립업자, 지하저장업체	300만달러 이상	600만달러 이상
석유	생산, 정제, 판매자	100만달러 이상	-탱크 100개 이하 : 100만달러 이상 -탱크 100개 이상 : 200만달러 이상
	비판매자	-월간 만 겔런 이하 : 50만달러 이상 -월간 만겔런 이상 : 100만달러 이상	

자료 : EPA(2008)

이중에서 배상책임보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험폐기물을 취급(treat), 저장(storage), 처리(disposal)하는 업체의 소유주 및 운영자에게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오염사고와 매립지의 사후관리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이상의 재무적 책임요건(financial responsibility requirement)²⁸⁾을 규정한 다섯 번째 사항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무적인 담보는 오염지의 정화(clean up cost)등의 시정활동(corrective action)과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bodily in-

28)재무적 요건을 명시한 미국의 환경법은 Oil Pollution Act,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Safe Drinking Water Act, Atomic Energy Act,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이 있다.

jury and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third party compensation)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그 금액은 <표 V-2>와 같이 차등되어 있다.

먼저 위험폐기물을 취급, 저장 또는 처분하는 기업의 소유주 및 운영자는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사고(sudden and accidental occurrence)와 급격하지 않은 오염사고(non-sudden)에 대비하여 1 사고당(per occurrence coverage) 최저 100만 달러이상, 연간총한도액(annual aggregate coverage) 200만 달러 이상의 재무적 담보가 필요하다. 위험폐기물의 매립업체(landfills)와 지하저장업체(surface impoundments)는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사고(sudden and accidental occurrence)뿐만 아니라 점진적(gradual accident) 오염사고를 대비하여 1 사고당 300만 달러이상, 총한도액 600만 달러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석유사업자의 경우에도 취급량에 따라 담보가 차등되어 있다.

이러한 재무적 담보대책으로 가능한 것은 보험 상품(insurance product)²⁹⁾, 이행보증증권(surety bond), 신용장(letter of credit), 에스스로 현금예탁, 자가보험(self insurance)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폐기물관리의 개선을 위해 보조금 부여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방식을 도모하고 있다. 동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1일당 5만 달러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상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것인 경우에는 하루당 25만 달러 벌금(1개 기업 당으로는 100만 달러) 또는 15년 징역을 부과한다. 또한 의도적이지 않은 위반(not criminal conduct)인 경우에는 1일당 25,000달러를 부과한다.

2)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1980년 미국 의회는 1978년 러브운하 오염사건으로 계기로 위험폐기물시설(facility)³⁰⁾ 또는 선박으로부터 위험물질(hazardous substances)³¹⁾을 환경으로

29)환경청이 발표하는 보험회사, 판매자(대리점, 중개사) 목록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AIG, ACE,, XI Environmental 등 14개사이며, 판매자는 94개사이다. 또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사항도 안내하고 있다(EPA, List of Known Insurance Providers for UST Owners and Operators).

30)시설에는 “건축물, 구조물, 기기, 파이프라인(하수도 또는 공적인 처리공장의 파이프를 포함), 저수(impoundment), 매립지, 컨테이너 저장시설, 자동차, 열차, 항공기”와 “유해폐기물이 저장, 보관, 처분 또는 배치된 지역(단,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용 제품 또

방출하거나 방출할 우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복지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 환경대응 보상책임법(CERCLA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³²⁾』을 제정하여 1981년부터 시행하였다. 1986년 10월에는 동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슈퍼펀드수정 및 재승인법(SARA :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이를 “슈퍼펀드법”이라 한다³³⁾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동법은 통제되지 않거나 방치된 위험폐기물 장소(uncontrolled or abandoned hazardous waste sites)에서 석유 이외의 물질로부터 오염이 생긴 경우에 그 오염지 정화와 자연환경파괴의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RCRA와 차이점은 제 3자에 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화사업은 오염지역의 항구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는 수복조치(remedial action) 및 긴급한 위협을 없애기 위한 제거조치(removal action)가 있다. 수복조치는 위험등급시스템(hazard ranking system)에 의거 "전국 오염정화지역 순위표(NPL : National Priorities List)"³⁴⁾에 등록된 지역의 해당 잠재책임부담자(PRP : potential responsible parties)³⁵⁾가 1년 이내에 정화작업을 종료해야 된다.

는 선박은 제외)“이 해당된다.

31)수질오염관리법311조(b)(2)(A)에 지정된 물질, CERCLA 102조에 지정된 물질, 폐기물처리법 3001조에 특정 또는 열거된 성질을 가진 위험폐기물, 수질오염법 307조(a)에 열거된 독성오염물질, 대기정화법 11조에 열거된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등이다.

32)동법은 연방법(U.S.Code Title 42(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CHAPTER 103(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에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조문화되어 있다.

SUBCHAPTER I-HAZARDOUS SUBSTANCES RELEASES, LIABILITY, COMPENSATION

SUBCHAPTER II-HAZARDOUS SUBSTANCE RESPONSE REVENUE

SUBCHAPTER III-MISCELLANEOUS PROVISIONS

SUBCHAPTER IV-POLLUTION INSURANCE

33)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정화기준 신설, 법인 환경세(부가세소득의 0.12%)를 적용한 기금확충(85억달러), 화해방법기술, 주정부의 관여조항, 정화방법 선택에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알 권리 신설, 건강리스크 평가기관(ATSDR :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권한 확대, 연방정화시설프로그램 도입, 선의취득자의 항변조항 도입, 제거조치기간 및 경비 완화 등이다. 안전종합연구소(1996), pp.54-56 및 <http://www.epa.gov/superfund/policy/sara.htm> 참조.

34)<http://www.epa.gov/superfund/sites/npl/npl.htm>

35)잠재책임부담자(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는 오염시설소유자 또는 점유자(the current owners and operators of a site (even if they had no involvement with the

<표 IV-3> 미국 수퍼펀드법 주요내용

구분	세부사항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
사업대상 과 오염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	석유, 천연가스, 합성가스 및 이들 혼합물을 제외한 물질
	시설(facility)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용 제품 또는 선박을 제외한 건축물, 구조물, 저장탱크 등
	환경 및 방출	사업소내 방출로 종업원만 오염되거나, 엔진배기장치의 배기, 핵사고에 의한 연료 및 부산물 또는 특정해물질의 방출, 비료의 정상적인 사용을 제외한 모든 사항
대응조치 및 종류	대응권한	중대한 경우 대통령에게 정화실시명령 권한 부여
	제거조치	NPL 기재 지역에 관계없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 200만 달러 이내, 12개월 이내
	수복조치	NPL 등록지역의 오염지역에 대해 항구적인 회복조치(슈퍼펀드프로그램), 평균 3000만 달러와 10년 기간 소요
정화기준 및 기법	정화기준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확보를 위한 기준을 환경청이 정하며, 주법 또는 연방법기준을 원용
	정화방법	비용편이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선택
정화사업 과정	장소 선정	환경청이 위험장소를 조사평가하여 NPL에 등록
	사업계획 결정	등록 지역에 대한 수복조사 실시, 실행가능성조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하여 주민, 관련자의 의견수렴 후 확정
	사업실시 및 유지관리	수복조치상세설계에 실시하고 유지관리관계로 이전
잠재적 책임자와 책임부담	부담자 범위	오염지의 현재 및 과거 소유자 및 관리자, 유해물질 발생자, 유해물질 운송자 및 중개자, 대출기관
	부담책임	제거조치, 수복조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 천연자원 손해, 건강평가 및 관련연구 비용을 부담
	책임원칙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 인관관계증명은 규정되지 않음
	책임부담절차	화해, 명령(이행하지 않은 경우 1일당 25,000달러이하 벌금부과), 비용회수(이행하지 않은 경우 3배액까지 징벌배상 청구)
슈퍼 기금	사용	잠재책임자가 불명확하거나 도산한 경우
	구성	석유세(9.7센트/원유배럴), 법인세(0.12%), 화학품세(톤당 0.22~4.88달러) 등으로 조성

자료 : 安全總合研究所(1996), pp.56-64 및 미국 환경청 홈페이지의 법률을 참조하여 정리함.

original waste disposal activities)), 과거에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prior owners and operators who may or may not have been involved with the site during the disposal of hazardous materials), 유해폐기물질을 생산하는 자(the generators of the waste materials disposed of at the site), 자신이 선정한 토지에 유해물을 운송하여 폐기하는 자(the transporters who hauled waste to it and anyone who "arranged" for the disposal of materials at the site) 임.<http://www.armr.net/userguide1.htm>

잠재적 책임부담자에게 적용되는 배상책임법리는 오염행위로 인한 훼손된 자연자원의 복구비용에 대해서 엄격책임이 적용되나, 제3자의 인체손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에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위험물질이 오염원을 방출한 시설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 위험물질이 환경에 배출되거나 배출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 누출이 대응비용 지출을 초래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보다 완화된 것이며 법원에서도 입증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오염을 유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joint & several liability)이 적용된다. 결국 동법에서 잠재적 책임부담자는 천재지변(acts of God), 전쟁(acts of war), 자신과 무관한 제3자의 행위(acts of an unrelated third party)로 인한 오염이 아닌 한 모든 오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책임부담은 모든 유발업자에게 동일하지 아니하며 대응조치에 따라 다른데, 위험 폐기물질 생산자, 매립지를 확보한 운송자, 처리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는 천연자원 파괴에 대한 대응비용을 위험물질 운송방법에 따라 다르게 부담한다. 즉, 위험물질을 전문 소각처리 선박(incineration vessel)이 아닌 일반선박으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톤당 300달러 또는 500만 달러 중 큰 금액을 부담하며, 위험물질을 자동차, 항공기, 배관 수송하는 경우에는 5,000만 달러를 부담한다. 전문 소각 처리 선박의 경우에는 모든 대응비용과 5,000만 달러의 합계액을 부담한다³⁶⁾. 또한 잠재책임부담자가 부주의, 과실, 안전기준(규제나 표준)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한 배상을 부담한다.

책임부담자가 충분한 이유없이 환경청의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이 부과된다. 잠재책임 부담자에게 재무적 요건으로 보험가입(pollution insurance)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으로 인정되는 것은 원보험, 초과보험(excess insurance), 재보험, 초과라

36) U.S.Code TITLE 42, CHAPTER 103, SUBCHAPTER I-HAZARDOUS SUBSTANCES RELEASES, LIABILITY, COMPENSATIONSec. 9607. Liability

인보험, 기타 위험전가 및 배분을 위한 장치이다.

연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보유하여 과거에 방치된 유해폐기물 현장 (abandoned or uncontrolled sites)에 대한 정화를 촉진하며, 오염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오염책임자의 지불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여 오염시설을 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청(EPA)은 오염된 부지를 신속히 정화하기 위하여 직접 정화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은 슈퍼펀드에서 조달한 뒤, 잠재책임당사자에게 정화비용을 구상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슈퍼펀드는 석유 및 정유회사 등으로 부터 거수된 세금으로 조달된다.

또한 환경청은 잠재책임당사자의 책임부담원칙(let the polluter pay)을 확립하기 위해 엄격책임(strict liability)과 소급적용(retroactive)원칙에 기초하여 오염부지에 대한 정화를 명령하며,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일당 2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 IV-4> 미국의 슈퍼펀드 규모 및 지출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기금액	18.8	17.6	15.6	14.8	15.4	16.4	16.2	14.8	13.1	12.9	12.7
지출액	15.9	17.3	16.8	14.7	15.1	14.6	16.3	15.9	14.5	13.7	15.2
지출율	84.6	98.3	107.7	99.3	98.1	89.0	100.6	107.4	110.7	106.2	119.7

자료 : GAO, Superfund program current status and future fiscal challenges, July 2003

2002년에는 슈퍼펀드법이 규모나 오염원 책임당사자의 구분없이 무차별로 적용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배상책임 구제 및 브라운필드 재활성화 법(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 Pub .L.No. 107-118, 115 stat. 2356, “the Brownfields Law”)³⁷⁾』을 제정하였다.

37) <http://www.epa.gov/brownfields/sblrbra.htm>

동법의 주요내용은 소규모오염유발자와 도시고체폐기물³⁸⁾을 처리하는 경우, 브라운필드³⁹⁾에 슈퍼펀드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브라운필드 사이트에 대한 복구기금 조성 및 지원을 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브라운 필드사이트에 대해 해당 주정부나 지역사회가 정화나 회복사업을 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체제이다. 미국 환경청은 브라운 필드의 정화를 위해 1)브라운필드의 평가(characterization and assessment), 2) 대부기금, 3) 환경정화보조금을 지급한다. 평가시 소요되는 보조금은 2년 동안 매년 20만 달러가 제공되는데 오염지의 특성 묘사, 평가 그리고 계획과 관련 공동체를 인도하는데 이용된다. 대부 기금(revolving loan fund)은 환경정화 활동(remediation)에 이용하며 5년 동안 매년 백만 달러를 대부해 준다. 환경정화 보조금(brownfields program)은 2년 동안 해마다 20만 달러가 제공된다. 또한 이들 3개의 절차에 대해 보험가입 조항을 두고 있다.

3) 자동차운송법 등 기타

1980년에 제정된 『자동차운송법(Motor Carrier Act)』은 유해성물질을 자동차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충돌사고 등으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재무적 책임대책(minimum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MCS 90 Endorsement”라 한다. 이는 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에 특약으로 첨부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에 제정된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⁴⁰⁾은 엑슨 발데즈(Exxon Valdez)오염사고⁴¹⁾이후 제정되었다. 동법은 석유나 위험스러운 물

38) 소규모사업자는 고체물질 200파운드 또는 액체물질 110갤론 미만인 경우이며 도시 고체 폐기물(가정 및 상업용 건물 폐기물) 처리업자 중 3년 동안 100명 이내 종업원을 가진 사업자 또는 비영리기관인 경우를 말한다.

39) 브라운필드라 함은 잠재적인 유해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확장, 재개발, 재이용에 제한을 받는 부동산을 말한다.

40) U.S. Code TITLE 33 CHAPTER 40 OIL POLLUTION

41) 1989년 3월, 알래스카 해안에서 엑슨발데즈 사의 유조선이 좌초되어 1,100만 갤론의 원유가 유출되어 2,000km 이상의 해변이 오염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안 생태계가 크게 파괴되었다. 이에 대한 오염정화비용은 30억달러 소요되었으며, 제3자 배상책임 부담액은 10억달러에 이른다.

질(hazardous materials)을 미국 해안 혹은 연안으로 운송하는 동안에 누출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시설 운영하는 동안에 발생한 오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 의무 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배상책임한도는 탱크선박인 경우 톤당 1,200달러 또는 3,000톤이상시 1,000만 달러(3,000톤 미만시 200만 달러) 중 큰 금액이며, 기타선박인 경우 톤당 600달러 또는 50만 달러 중 큰 금액이다. 해안시설(offshore facility)인 경우 제거비용과 7,500만 달러의 합계이며, 해변가 시설은 3억 5,000만 달러 이상이다(US Code 2704 Limits on Liability). 이와 관련된 자는 『자원보존복구법(RCRA)』과 같이 보험, 보증증권(surety bond), 신용장(letter of credit), 자가보험(self insurance) 등의 재무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나. 환경금융제도 발전⁴²⁾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80년 슈퍼펀드 법의 시행에 따라 엄격한 환경오염책임을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금융기관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오염사고를 일으킬만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이의 주된 배경은 1990년의 『Fleet Factors Case』⁴³⁾ 법원 판결에 있다. 미국 법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이 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이행해야 하나 그 기업이 파산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해 준 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법원은 은행이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은행에게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연방준비은행 감독관들에게 “환경배상 책임 및 은행의 환경리스크 관리체제 확립에 관한 지침”⁴⁴⁾을 내려 은행들이 대출기업에 대한 환경관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42) 日本 環境廳(2003), pp.6-8, (http://www.env.go.jp/policy/kinyu/rep_h1403/02.pdf).

43) Alistair Ulph · Laura Valentini의 연구에 의하면, 동 판결 전후로 은행이 대출행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대책임을 부과된 이후에 현저한 대출감소 등의 행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4) <http://www.federalreserve.gov/boarddocs/SRLETTERS/1991/SR9120.HTM>

<표 IV-5> 미국의 환경금융 제도 주요내용

금융업무	주요내용
환경대출 업무	-대출심사시 환경친화도 및 환경리스크관리 상황을 반영 -환경비즈니스 및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출우대조치
환경투자 업무	-투자종목 선정시 환경친화도 반영, 환경벤처 투자,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 증개
환경보험 업무	보험인수시 환경친화도 반영, 신종보험 개발(오염보험, 비용초과보험, 담보가치보증보험)
환경부하 저감	ISO 14001 취득, 환경감사, 자원절약
기 타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정보 제공 등

자료 : 日本 環境廳(2003),pp.6-8에서 요약하였음.

이러한 영향을 받아 유럽, 호주, 캐나다 등의 금융기관들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유럽 은행들이 주축이 되어 환경친화형 금융상품을 연이어 개발하였으며, 기업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서 환경리스크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 이들 은행 중 일부는 경영방침, 법령준수 및 기타 환경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환경성과가 양호한 기업'에게 대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새로운 환경관련 기술에 대한 대출에 주력하는 금융기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 배경에는 금융기관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기업시민으로서의 입장을 자각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고객기업의 리스크가 금융기관 자신의 브랜드 및 평판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그 결과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전담직원을 고용해 환경문제가 조직의 경영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또한 대출심사 등 은행 업무에 환경평가를 연계하는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차입자의 원리금 연체와 담보가치의 손실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환경문제가

이들 문제에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Structured Finance 나 Project Finance의 경우 사전 환경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문제도 고려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환경 문제가 단순히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의 대만에 관한 비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환경관리와 주가를 연계한 “다우존스 지속가능한 그룹지수(DJSGI)”가 1999년에 탄생했다. 최근에는 『Financial Times』지와 런던증권거래소의 합병회사인 “FTSE International 회사”가 만든 “FTSE4Good Indices”도 개발되었다. 또한 투자자에게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기관(미국 Innovest Strategic Advisors)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경우 “환경배려 행동”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2002년도에는 기업의 구체적인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공시범위를 크게 확대한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⁴⁵⁾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배상책임도 평가하여 공시해야 하는데, 환경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보험운영현황

1) 보험상품 변천 내용

미국의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관련 환경오염책임관련 법규의 제정, 법원의 판결 등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하여 왔다. 미국의 환경오염위험은 1970년대까지는 크게 인식되지 못해 환경리스크관리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수요가 없어 발전하지 못했다. 즉 1960년대까지는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한 면책내용을 포괄배상책임보험(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관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45) http://en.wikipedia.org/wiki/Sarbanes-Oxley_Act

만족하는 한 담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회사들은 환경오염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인수하는 바람에 대다수 회사가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당시에 판매되었던 포괄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담보조건은 점진적인 위험(gradual hazard)도 담보되며 특히 사고가 알려지고 고의적인 작동으로 발생된 것도 담보되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문제되었다. 보험업계는 이를 극복하고 환경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과학에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을 보다 과학화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조건에 자기부담금조항(self retention or deductible)과 손해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policy)을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보험제도와 상품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환경보험에 전문성이 있는 보험회사가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추이이다.

<표 IV-6> 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제도 변천 현황

구분	약관	담보형태	비고
'70년대	포괄배상책임보험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olicy)	66년 약관: 점진적 오염 등을 포괄담보(occurrence basis)	오염면책조항 없었음
		70년약관: 점진적 오염을 면책으로 하고, 우연/급격한 오염사고만 담보	sudden & accidental pollution exclusion 도입
		73년약관: 급격/우연한 오염사고담보조항 보통약관에 규정화	occurrence basis로 담보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policy	77년 점진적 오염사고 담보 (claims made basis)	RCRA시행(1976) : 오염자 책임 부담원칙 도입
'80년대	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86년 환경오염절대면책조항, 증권 총보상한도액 도입 -오염사고확장담보특약 추가시 담보(claims made basis)	-CERCLA시행(1980) -보험회사 파산 및 철수
'90년대	정화비용담보	Brownfields 수요 증가	
'00년대	다양한 상품 제공	계약자의 수요에 따라 상품 제공	-연간보험료 20억달러 -회사 : AIG, Chubb, XL, Zurich, Hudson

현재 미국에서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을 보면 환경오염원이 고정

된 것과 유동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유동적인 오염의 경우 대부분 선박으로 인한 해상유류오염과 자동차 등 운송기구의 사고로 인한 오염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해상오염은 선주배상책임(P&I : protection and indemnity) 등을 통한 국제적 공조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주로 육상에서 오염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법규에 의한 가동이 중단된 개발예정오염지(Brownfields)의 정화와 관련된 보험이 다양한 형태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환경오염보험을 판매중인 보험회사는 ACE, AIG, Gemini, XL, Zurich 등 10개사 등이며, 미국의 연간보험료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10억~2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⁶⁾.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AIG의 홈페이지⁴⁷⁾를 방문하면 볼 수 있다.

<표 IV-7> 미국의 오염원별 보험 등 재무대책 현황

구 분		연방 또는 주정부제도	민영보험
고정 오염원	가동 중	자원보존복구법	-Contractors Pollution Liability Policy(CPL)
	가동 중단	-슈퍼펀드법 -Brownfields법	-Site Specific Environmental Impairment Insurance -Brownfields Insurance Program
유동 오염원	자동차	자동차운송법	MCS 90 Endorsement (ISO의 CA 99 48)
	선박	유류오염법	Protection & Indemnity, 기타 보험

자료 : Maleki · Flitner · Trupin(2005), .p. Environmental Loss Exposures and Insurance 11.7-11.41에서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환경오염리스크 담보

포괄배상책임보험약관(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olicy)의 담보조건은 1960년대 초반까지는 사고기준(accident)이었으나 1966년에 사고발생기준

46) Richard S. Betterly(2007),p.2.

47)http://www.aigenvironmental.com/environmental/public/envproductcategory/0,1345,65,00.html

(occurrence basis policy)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담보한 환경오염리스크의 노출범위(exposure)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특히 1967년에 발생한 유조선 “Torrey Canyon호의 오염사건”⁴⁸⁾은 환경배상책임 보험상품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동 오염사고로 보험회사들은 환경오염리스크의 광범위성과 거대성 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작업이 추진되었다. 표준약관 서비스 제공기관인 보험서비스기구(ISO : Insurance Service Organization)는 1973년에 급격하지 아니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오염손해(non-sudden, gradual damage)를 면책으로 하는 대신에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사고(sudden and accidental)만 보상하도록 포괄배상책임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법원⁴⁹⁾ 등에서 급격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해석문제가 대두되고 가능한 보상으로 유도하여 보험수지는 좋지 못했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변경으로 계약자들은 점진적인 환경오염을 담보하는 상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1977년에 이를 담보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IL: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이 개발되었다. 당시에 환경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 자원보존복구법상 재무적 책임요건의 도입과 수퍼펀드법에 엄격책임 도입됨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가 진입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환경책임법의 도입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확률과 손해심도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포괄배상책임보험약관의 보험조건을 강화하고 보험료도 높게 부과하였으며, 언더라이팅도 엄격히 하였다. 그 결과 토지매립업자나 폐기물운송업자와 같이 법적으로 재무적 대책이 필요한

48)1967년 3월 18일 영국 밀포드하벤(Milford Haven)으로 향하던 유조선 Torrey Canyon호가 실리섬(Scilly Isles) 부근의 데븐스톤리프(Deven Stones Reef)에서 좌초됐다. 18개의 화물탱크 중 14개에 구멍이 났으며 약 3만톤 가량의 기름이 유출됐고 영국 정부의 구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두 동강으로 부러지기 시작하자 잔여 기름을 태워버리기 위해 영국공군기가 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당시의 시스템이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으며 1969년 OILPOL 54 (MARPOL 이전의 해양오염방지조약)를 개정하는 단초가 됐다.

49)법원 판결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담보조건인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사고”에 대한 해석을 서서히 생긴 오염사고라 해도 계약자가 예상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neither expected nor intended)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자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환경오염 리스크의 노출이 경미한 사업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과 1985년에 보험가격이 급등하고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한정하는 현상을 보이며 보험시장은 경색화(hard market)되었다. 그 이후 소수 보험회사들만 환경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으며, 파산보험회사도 생겨나 환경보험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표 IV-8>이다.

<표 IV-8> 1980년대 미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단위 : 개, 백만 달러, %)

구분	회사 수			증권 수			담보금액			보험료율		
	급격	점진	복합	급격	점진	복합	급격	점진	복합	급격	점진	복합
'82	35	7	22	120	14	34	2,871	232	519	3.33	1.20	5.00
'83	37	19	28	154	54	59	4,006	896	1,253	3.80	2.50	1.45
'84	42	19	33	180	76	70	5,044	1,394	978	2.60	2.70	3.00
'85	38	16	23	146	54	73	3,444	766	825	6.80	7.50	6.63
'86	31	12	17	70	17	57	1,355	212	1,008	20.50	13.17	19.63
'87	8	6	8	16	8	20	679	51	149	25.00	12.50	19.80

자료 : GAO(1988), p.15.

199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오염 관련보험이 조금 활성화되었다. 이는 상품측면에서 환경오염담보체계를 환경오염리스크가 일반 배상책임리스크와 다른 특성(<표 IV-9> 참조)을 감안하여 포괄배상책임보험의 환경오염 담보를 보통약관에서 절대면책사항(absolute exclusion)으로 처리하였다. 보험회사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 손해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리스크평가 및 요율산출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언더라이팅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우하우를 습득하고, 손해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표 IV-9> 미국의 환경오염과 일반 배상책임의 법리 등 비교

구분	일반 배상책임 사고	환경오염사고
인적 사고측면	-개별적인 상해 발생 -보험자가 한정 -한정된 손해액 발생 -인과관계가 명확 -급격히 발생 -자주발생/관련성 없음	-다수 인명 상해 발생 -다수 보험자가 관계됨 -확대되는 손해액 발생 -인과관계가 복잡함 -잠재 -빈번하지 않게 발생/관련성있음
법리적 측면	-노출정도에 따라 배상액 한정 -과실책임 -개별 배상책임	-상해의 발견에 따라 배상액 한정 -엄격책임 -연대배상책임
보험상품 측면	-점진적 오염 면책 -사고발생기준 담보 -계리적 방법 적용 -장래담보성격/사고억제	-점진적 오염 담보 -손해청구기준 담보 -리스크분석 -소급담보성격/사고억제 곤란

자료 : Martin T. Katzman(1988),p.92.

환경오염의 면책조항의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ISO는 1986년에 포괄 배상책임보험약관의 환경오염리스크 담보에 대해 슈퍼펀드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의 정화명령 비용을 면책으로 하였고, 오염사고가 점진적이든지 또는 급격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절대면책(absolute pollution exclusion)으로 하였다. 또한 오염배상책임담보특약을 첨부하는 경우에만 환경오염을 담보하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증권의 총보상한도액(policy aggregate limit)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보험약관명칭이 “포괄적인 배상책임담보”를 표현하고 있어 환경오염 소송 등의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관명칭을 “상업배상 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환경오염리스크를 독립적으로 담보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을 개발하여 보험인수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주로 Brownfields Insurance Program에 대응한 보험상품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3) 자동차유해물질 오염배상 책임보험(MCS 90 Endorsement)

슈퍼펀드법에 의거,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사업자도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과

정상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화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인수하기 위한 상품으로 “자동차운송환경배상책임보험(MCS 90 Endorsement)”이 개발되어 판매 중에 있다. 동 상품의 운용에 대한 근거는 『자동차운송법(Motor Carrier Act of 1980)』 Section 29-30에 기초하고 있다.

<표 IV-10> 미국의 자동차운송환경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운송업자 구분	자동차규모	운송물질	보험금액
州間 또는 州內 국제 무역에 고용된 운송자 및 사업자	총중량 일반과 운드 이상	3,500갈론 이상 위험물질을 탱크로 운송 등	500만달러
주간 또는 국제무역에 고용된 운송자와 사업자	총중량 일반과 운드 미만	폭발물, 독가스, 방사능물질	500만달러
양으로 한정된 주간, 국제 무역에 고용된 운송자 및 사업자(벌크형태의 주내 무역 포함)	총중량 일반과 운드 이상	기름, 위험폐기물, 위험한 물질	100만달러
주간 또는 국제무역에 고용된 운송자	제한없음	위험성없는 물질	75만달러

자료 : Maleki · Flitner · Trupin(2005).p. Environmental Loss Exposures and Insurance 11.7-11.41에서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이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을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고 사본을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 혹은 주간통상위원회(ICC)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동 보험은 주로 적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배상책임(토지, 수질, 대기오염, 자연환경 오염에 대한 최소한 방지조치비용)을 담보한다.

4) 브라운필드보험(brownfields insurance products)⁵⁰⁾

미국의 주정부는 『소규모사업자 배상책임 구제 및 브라운필드 재활성화법(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에 의

50)Krisen R. Yount · Peter B. Meyer(2006)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거 이전한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 등 브라운필드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운필드보험(brownfields insurance products)”을 운영하고 있다. 브라운필드보험은 환경보험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는 매사츄세츠 주, 위스콘신 주, 뉴욕 주, 코네티컷 주 등이며 기타 다른 주⁵¹⁾도 이와 관련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제도에서 판매중인 보험상품은 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보험(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오염지의 오염정화비용보험(cost cap policy), 대출자보장보험(secured lender policy), 기타 보험 상품이 있다⁵²⁾.

오염배상책임보험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증권으로서 재개발사업자(투자자) 또는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공사현장 또는 인접지역으로 전파된 오염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 배상책임, 정화비용에 대한 배상책임(third party claim), 현장에 존재하는 계약자의 재물 오염사고의 정화비용(first party claim),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법률방어비용을 보통약관에서 담보한다. 계약상 책임, 기업휴지담보 등은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보험기간은 1년~10년, 보상한도액은 1백만 달러~최고 1억 달러, 자기부담금은 25달러~25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보험료는 최저 400달러에서 최고 25만 달러로 운영되고 있다.

정화비용담보보험(cost cap policy)은 재개발사업부지의 오염정화비용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통상적으로 가입한도는 100만 달러이며 자기부담금은 정화비용의 10%내지 30%를 적용한다. 보험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정화예정비용의 6~25% 수준이다.

대출자보장보험(secured lender policy)은 금융기관인 대출자가 수요자에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재개발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로 인해 대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한다. 보험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운영된다. 단일현장에 대해 보험기간 5년, 보상한도액 3백만 달러~1000만 달러, 자기부담금 10,000달러~100,000달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료는 45,000~

51)인디애나, 아이다오, 텔라웨어, 오하이오, 오리건,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아이오밍, 뉴저지,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주 등이다.

52)http://www.epa.gov/brownfields/insurance/policy_coverage_chart.pdf

70,000달러이다. 기타 보험 상품으로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먼저 환경경서 비스산업종사를 위한 보험(environmental services industry products)으로 전문컨설턴트를 위한 하자보증보험(Error & Omission Coverage), 건설업자오염배상책임담보(contractors pollution liability), 환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있다. 개별 건설업자의 보상한도의 차이와 모든 당사자에 대한 오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계약자통제보험(Owner Controlled Policy)도 운영된다.

또한 주별 보험제도는 통일되지 않았으며, 오염지의 신속한 정화를 위한 주별 특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1988년에 가장 먼저 도입한 매사츄세츠 주를 보면 명칭은 “MassBRAC (Massachusetts’s Brownfields Redevelopment Access to capital)”으로써 주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50% 보조하여 준다. 보험료 보조는 개인 계약자에게 5만달러가 한도이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준공공기관 포함)에 15만 달러가 한도이다. 위스콘신 주는 2006년도에 도입하였다. 오염배상책임증권을 포괄적으로 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하여 주며, 주정부의 보험료 보조는 없다. 보험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증권을 사용하나 주정부가 요구하는 특약을 첨부해야 한다.

뉴욕주는 2003년에 『브라운필드정화법(Brownfields Cleanup Act)』을 제정하여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자가 뉴욕주정부와 재개발부지 지정협정서를 체결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환경보험료의 50% 또는 3만달러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해준다. 코네티컷주는 브라운필드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보조와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 EU

가. EU 환경배상책임지침

1) 제정배경 및 구성

EU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환경배상책임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2000년 2월 유럽위원회는 환경배상책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별 법제 등을 비교하여 단일지침의 방향을 담은 백서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⁵³⁾를 채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EU 환경위원회는 2002년 1월에 현재의 "환경배상책임지침의 내용을 담은 초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remedying of environmental damage)"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 및 이사회는 2004년 4월 21일에 이를 『환경배상책임지침(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⁵⁴⁾으로 채택하였다. 회원 국가는 동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2007년 4월 30일까지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동 지침은 다양한 산업 활동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환경파괴에 대하여 오염자부담원칙(pollutes-pay principle)⁵⁵⁾에 입각하여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기업 등에게 환경파괴 예방과 회복의 경제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환경배상책임지침은 보호 종이나 자연 생식환경(natural habitats), 물, 토지의 파괴 등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환경파괴(environmental damage)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위험한 활동을 행하는 사업자는 그 파괴에 대해 회복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과실이나 태만에 의하여 보호종이나 자연생태계의 손괴를 일으킨 사업자도 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무력행사나 적대행위, 내란, 불가피한 특성의 자연현상, 방위활동,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활동에 의한 환경파괴, 핵에 의한 사고, 바다에서의 원유유출사고(배상책임이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범위에 있는 경우), 확산하는 성질이 있는 오염(공기 오염이나 초산오염 등) 등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리는 환경위험의 경중에 따라 엄격책임(strict liability)과 과실책임(fault liability)을 분리하여 적용된다. 동 지침은 환경파괴

53) <http://ec.europa.eu/environment/liability/consultation.htm>

54) DIRECTIVE 2004/35/C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environmental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remedying of environmental damage.

55) 오염자부담원칙(Pollutes-Pay Principle)은 공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채택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OECD가 1972년에 주창한 것으로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 공해대책의 대응정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원칙으로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에서 책임분담의 기초가 되었다.

에 대한 예방 및 회복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당해 사업 활동이 환경파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실제로 손괴된 경우에는 직접 예방·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부담자의 특정 또는 파괴정도의 평가, 파괴에 대한 회복 조치의 결정 등의 임무를 부담한다. 관할당국은 사업자에 대하여 손괴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 외에도 필요한 예방·회복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부담한다. 동 지침은 개인이나 NGO 등의 공익법인이 관할당국에 대하여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특정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관할 당국의 대처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사고에 관한 관련정보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대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대처에 대한 결정을 직접 요청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은 관할당국의 결정이나 대처의 이행, 불이행 등의 절차나 합법성에 대하여 사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환경파괴의 예방 및 회복비용의 회수는 오염자부담원칙에 기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지불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재무적 보증대책(financial security) 마련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보증에 있어 보험가입의무화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침발효 후 6년(2010년 4월 30일) 이내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지침은 총 20개 조문과 4개 부속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목적(subject matter)

제2조 정의(definitions)

제3조 적용범위(scope)

제4조 예외(exceptions)

제5조 예방조치(prevention action)

제6조 회복조치(remedial action)

제7조 회복방법의 결정(determination of remedial measures)

제8조 예방 및 회복 비용(prevention and remediation cost)

제9조 다수자 유발 사고에 대한 비용배분(cost allocation in cases of multiple party causation)

제10조 비용회수의 기간제한(limitation period for recovery of cost)

제11조 관할관청(competent authority)

제12조 조치의 요구(request for action)

제13조 절차의 검증(review procedures)

제14조 재무보증(financial security)

제15조 가맹국간 협력(cooperation between member states)

제16조 국내법과의 관계(relationship with national law)

제17조 임시적용(temporal application)

제18조 보고 및 검증(reports and review)

제19조 국내법화(implementation)

제20조 발효(entry into force)

제21조 수신자(addressees)

Annex I 제2조 (1)(A)와 관련한 기준(Criteria Referred to in Article 2(1)(A))

Annex II 환경손해의 회복(Remedying of Environmental Damage)

Annex III 제3조(1)에 관련한 활동(Activities Referred to in Article 3(1))

Annex IV 제4조(2)와 관련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ventions Referred to in Article 4(2))

2) 환경배상책임지침의 주요내용

환경배상책임지침의 주요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제1조(목적), 제12조 조치의 요구(request for action), 제13조 절차의 검증(review procedures), 제15조 가맹국과 협력(cooperation between member states), 제16조 국내법과의 관련(relationship with national law), 제21조 수신자(addressees), Annex I, II, III”를 제외하였다. 또한 제2조의 정의에서도 환경손해 등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기술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조문별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조 정의(definitions) : 환경손해와 보존상태 등 16개 용어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주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손해(environmental damage)는 보호종과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손해(damage)는 자연자원 혹은 직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자원서비스의 심각한 훼손에 대한 측정가능한 나쁜 변화(measurable adverse change)로 정의하고 있다. 2003년 이전의 원자력과 오일탱크 사고에 의한 손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범위(scope)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부속서(Annex III)⁵⁶⁾에서 특정한 사업상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잠재 환경피해 위험이 높은 경우, 지정외의 업무상의 활동에 기인하거나 기인하더라도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어 보호해야 할 자연생식지에 대한 피해 및 그와 같은 피해가

56)부속서에는 12개의 위험활동을 열거하고 있다.

1. 신상품과 프로세스의 연구/개발/시험, 96/61/EC지침에 정한 장치의 운영,
2. 폐기물관리운영사업자(수집, 운송, 처리),
3. 승인이 필요한 지표수로의 모든 방출물,
4. 승인이 필요한 지하수로의 물질의 방출,
5. 오염물질의 지표수 혹은 지하수로의 주입 또는 방출,
6. 물의 추출 및 저수,
7. 위험한 물질, 위험한 준비, 플랜트보호제품, 생명과피제품의 수송, 방출, 제조, 사용, 가공, 충전
8. 위험한 물질 또는 오염가능 물질을 도로, 철로, 내륙수로, 바다, 대기로 운송
9. 산업플랜트의 대기오염과 관련한 장치의 운영
10. 유전적으로 수정된 마이크로 유기물의 한정 사용(수송 포함)
11. 유전적으로 수정된 마이크로 유기물의 시장방출, 수송, 대기로 방출
12. 폐기물을 EU역내 또는 역외로 선박운송

발생할 잠재위험에 대해 적용한다.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리는 환경위험의 경중에 따라 엄격책임(strict liability)과 과실책임(fault liability)을 분리하여 적용된다. 즉,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위험화학물질의 생산·보관·사용·배출·폐기물처리 등과 같은 위험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업무에 의한 환경과피의 예방과 회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엄격책임이 적용된다. 반면에 기타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는 자연생태지 또는 생물에 대한 손해에 과실·부주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이 적용된다(<표 IV-11> 참조).

<표 IV-11>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의 책임법리

활동구분	환경손해	책임법리(복구조치)
위험스럽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업 활동 (hazardous or potentially hazardous activities)	수질오염 손해	엄격책임적용 (기본적 복구 보완적 복구 보상적 복구)
	토지오염 손해	
	보호종 및 자연서식지	
위험하지 않은 사업 활동 (non-hazardous activities)	과피 손해	과실책임 적용 (기본적 복구)

제4조 예외(exceptions) : 이 지침은 적대행위,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비가역적인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경우, 과거에 발생한 오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예방조치(prevention action) : 환경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에 대한 즉각적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사업자에게 당해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방지조치 강구, 채택할 대응조치에 대해 지도한다(자유재량으로 필요한 방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관할당국은 사업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못하거나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지침에 의거한 비용부담을 의무화할 수 없는 경우에 스스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회복조치(remedial action) : 사업자는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감독당국에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피해방지를 위한 오염물질등을 제거하거나 기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이와 같은 수단

등의 행사나 필요한 회복조치에 대해 지도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회복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할 없는 경우, 혹은 이 지침에 기초한 비용 부담을 의무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당국은 스스로 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 회복방법의 결정(determination of remedial measures) : 사업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임시회복조치가 부합한지를 확인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그 회복조치가 “부속서(Annex) II”에 따라 부합여부를 판단한 뒤 조치실행을 결정한다. 조치는 다음 3가지가 있다. 기본적 복구(primary remediation)는 파괴된 자연자원, 훼손된 서비스를 평상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복구 조치를 말하며, 보완적 복구(complementary remediation)는 기본적 복구로 파괴된 자연자원 이나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보완차원에서 취하는 회복조치를 말한다. 또한 보상적 복구(compensatory remediation)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기본적 복구조치의 완전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자연자원 혹은 서비스의 잠정손실(loss)을 보상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8조 예방 및 회복 비용(prevention and remediation cost) : 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른 예방 및 회복조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할 당국은 피해나 긴박한 위험을 일으키는 사업자로부터 이 지침에 기초하여 채택된 방지 혹은 회복조치에 요하는 비용을 회수한다. 다만, 비용이 회수가능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업자는 상기 피해나 그 위험이 제3자에게 기인하는 경우,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발생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강제적 조치 등을 준수하다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가맹국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과오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거나, 환경피해 원인이 a) “부속서(Annex) 3”에 명기된 EU법을 실시하는 국내법에서 인가를 받았으나 그 조건에 완전하게 한 배출이나 사고(event or incident)로 생긴 것 또는 b) 배출물의 방출 혹은 활동이 행해진 시점에서 최신 과학기술(state of art)의 지식으로서는 환경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회복조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제8조 4)

제9조는 다수자 유발 사고에 대한 비용배분(cost allocation in cases of multiple party causation)이나 비용배분내용인 관계로 생각하였다.

제10조 비용회수의 기간제한(limitation period for recovery of cost) : 회수 기한은 조치가 완료된 시점 혹은 책임있는 사업자 혹은 제3자가 특정된 시점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관할관청(competent authority): 가맹국은 이 지침에 대해 성실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감독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예방 또는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을 요구하거나 그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제14조 재무보증(financial security) : 가맹국은 사업자가 이 지침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부담에 대한 재정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맹국은 채무초과 케이스에 대비한 재정메커니즘(financial mechanism)을 포함하여 금융업자의 재정보증(financial security)의 제 수단 및 시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 지침 시행 후 8년 이내에 본 지침의 실제 회복에 대한 유효성, 적정비용의 이용도 및 “부속서 3”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대한 보험, 기타 재정보증 상황에 관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 보고를 참조하여 비용편익분석 등의 평가를 한 뒤 단일화된 강제적 재정보증제도(a system of harmonized mandatory financial security)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임시적용(temporal application) : 이 지침은 “이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법의 시행이전에 행해진 배출, 사고(event or incident)에 기인하는 피해”, “이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법의 시행이전에 행해져 종료된 특정의 활동에 의하여 생긴 배출, 사고에 기인하고 그 기간이후에 제기된 피해”,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배출, 사고가 발생하여 30년 이상 경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 보고 및 검증(reports and review) : 유럽위원회는 지침발효 후 9년 이내에 제출토록 된 가맹국의 지침적용실적 보고서에 기초하여 10년 이내에 지침의 수정안을 포함한 보고를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19조 국내법화(implementation) : 가맹국은 동 지침발효 후 늦어도 3년 이내(2007년 4월 30일)에 이 지침에 따른 법률, 규제 및 행정

규범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발효(entry into force) : 이 지침은 관보 (office journal)에 공표된 날에 발효된다.

3) 회원국의 지침 채택현황

EU 국가들은 2007년 4월까지 위에서 언급한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을 국내 법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국가들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법규를 개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국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체코 등은 초안을 작성하거나 국회 심의단계에 있다. 또한 채택한 국가중 의무보험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이다.

<표 IV-12> EU 국가별 환경지침 채택현황

국가	지국법화(상태)	생태계 보호종 확장	개발리스크면책	의무보험
오스트리아	'07.5(심의중)	-	○	○
벨기에	'07.4 시행	○	○	×
불가리아	'06.9(초안)	×	×	○
사이프러스	'07.12 시행	○	-	-
체코	'07.3(초안)	○	○	○
덴마크	'07.4 시행	부분적	부분적	×
에스토니아	'07.11 시행	○	○	×
핀란드	'07.3(심의중)	-	-	×
프랑스	'06.11(심의중)	×	○	×
독일	'07.11 시행	○	○	×
헝가리	'07.4 시행	○	×	○(일부)
이탈리아	'07.4 시행	○	○	×
리투아니아	'06.11 시행	○	-	○
네덜란드	'06.12(초안)	○	-	×
폴란드	'07.4 시행	○	○	○(일부)
슬로바키아	07.9 시행	○	○	○('12년)
스페인	'07.4 시행	○	○	○('10년)
스웨덴	'07. 8 시행	○	-	-
루마니아	'07. 6 시행	-	-	○
영국	초안작성 중	○	-	×

자료 : Swiss Re(2007)p.43 및 CEA(2008),pp.42-47

가. 보험상품 운영현황⁵⁷⁾

유럽의 환경보험은 1980년대부터 각 국가별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법리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배상책임지침 채택과정에서 보험제도가 논의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1985년부터 급격하고 불확정한 사고(sudden uncertain event)에 한정하여 담보하고 있다. 스위스는 1989년에 담보범위를 단일의 급격한 예기치 않은 사고(single, sudden, unforeseen event)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1991년에 급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고의적이지 아니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sudden identifiable unintended and unexpected incident)를 담보하였으며, 프랑스는 1994년에 오염사고로 인한 신체손해, 재물손해, 금융손실을 면책으로 하였다.

환경오염배상책임 보험상품에 대한 시장 구조는 일반 리스크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상품운영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표준화된 상품을 운영하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별개의 독립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핀란드는 상품 운영에 대해 특별한 제한 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를 보면, 프랑스(Assurpol⁵⁸⁾), 이탈리아 (Pool Inquinamento), 스페인(Pool Espanol de Riesgos Medioambiente), 네덜란드(Mileu Pool)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9년에 일반배상책임보험과 독립적인 환경과피보험(environmental damage insurance : MSV(Milieuschderverzekering))을 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자를 위한 보험(first party cover)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 보험은 오염자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급격 또는 점진적인

57) Simon White, *Insurance for ELD Liabilities*, EUROP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SEMINAR ON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14-15 JULY 2006, pp.4-6.

58) http://eur-lex.europa.eu/smartapi/cgi/sga_doc?smartapi!celexplus!prod!CELEXnumdoc&lg=en&numdoc=392D0096

오염으로 인한 비용 즉 자신 및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지하수 및 표면의 정화비용과 제3자에 대한 재산에 미친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공기오염과 자신과 타인을 불문하고 신체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표 IV-13> EU 국가별 환경지침 채택현황

국가	담보 리스크(extend cover)				담보 손해(covered loss)				풀 (상품)
	급격/우연	점진	운영 리스크	개발 리스크	인적물 적손해	결과 손해	순금융 손해	생태 파괴	
벨기에	○	-	×	×	○	○	○	×	-
덴마크	○	-	×	×	○	○	×	×	-
핀란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프랑스	○	×	×	×	○	○	○	×	Assurpol/CARE pool
독일	○	-	○	○	○	○	○	×	USV policy
이탈리아	○	-	○	○	○	○	○	×	Pool Inquinament
네덜란드	○	-	×	×	○	○	○	×	Milieu-Schade-Verzekering Pool
스페인	○	×	×	×	○	○	○	△	pool Espanol de Riesgos Medioambientales
스웨덴	○	-	○	○	○	○	○	×	-
영국	○	-	×	×	○	○	×	×	-

자료 : Doutora Maria Bapista Antus(2002),pp.28-29

나. 독일의 환경배상책임 보험 운영 현황

1) 환경책임법 체계

독일의 환경책임법 체계는 1991년에 신환경보험법이 도입됨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91년 전까지는 환경오염책임배상은 민법상에 정한 일반 불법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이 어려웠다. 독일의 환경배상책임을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된

동인은 1986년에 발생한 산도즈(Sandoz)사의 나일강 오염사고⁵⁹⁾이다. 동 사고로 인한 피해자구제를 위해 1990년에 『환경배상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 Environmental Liability Act)』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⁶⁰⁾. 동법은 환경보호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일정 위험 시설 소유자의 리스크관리 유도를 목표로 하여 총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오염책임은 기존 특정 대상시설의 수질오염에 추가하여 대기, 토양오염을 포함한 모든 환경오염에 대하여 엄격책임이 적용된다.

동법의 환경책임을 부담하는 시설은 모든 시설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 96종⁶¹⁾의 시설에만 해당하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해당업종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표 1>에 규정한 시설로부터 환경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또는 물건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그 시설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또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normal operation)을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생긴 오염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책임 부담자는 손해가 불가항력(자연현상, 암살계획, 제3자 개입에 의한 노동쟁의)으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신체손해 및 재산손해에 대해 각각 8,500만 유로를 한도로 배상해야 한다(제4조). 또한 인과관계 입증의 경감조항을 제6조 제1항(개개의 사례에 있어서 사정에 비추어 시설이 손해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시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에서 규정하여 오염피해자는 시설의 침해에 대한 적합성만 입증하면 되며, 이해관계를 완전히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오염 시설소유자는 오염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 또는 금융

59) 1986년 스위스 Basel 소재 Sandoz사의 창고노동자가 많은 양의 화학물질을 운송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30톤의 농화학물질이 소방수와 함께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로 인해 300km 거리까지에 있는 어류가 몰살되었고 독일과 네덜란드의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다.

60) Onno Hoffmeister · Reimund Schwarze(2007),pp.2-8.

61) 이 96종은 연방방출통제법(federal emission control act)에 의거, 허용된 용광로, 가스터빈, 냉각탑, 화학약품 제조장치, 의약품 제조장치, 페인트 상점, 위험물질 저장시설 등이다.

기관의 신탁 또는 보증 등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 제8조는 오염피해자가 “시설소유자 등에 손해발생에 대한 사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제공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 또는 경치에 관련된 소유권 침해인 경우에는 비용 상환청구를 인정하며, 제19조에서는 특별히 위험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배상능력의 확보를 강제화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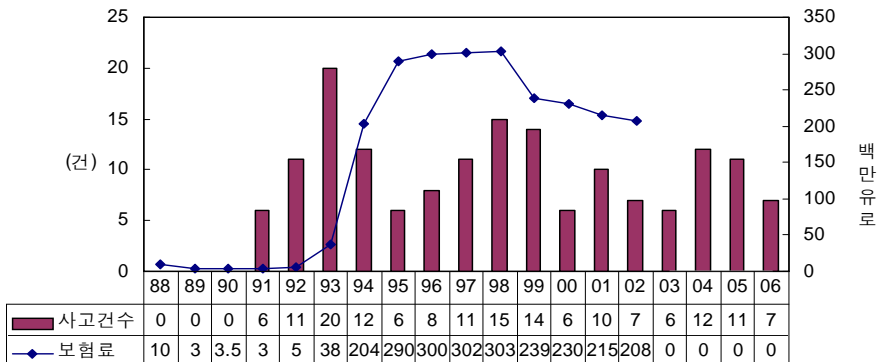
2) 환경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독일의 환경배상책임보험은 1991년 환경책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사인간의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에 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환경관련 법이 환경요소별로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보험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960년에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WHG))』이 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배상 책임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에는 포괄적 『환경오염배상책임법(Environmental Liability Act(UHG))』의 도입으로 보험수요가 증대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수요확대는 1991년에 제정된 신환경책임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환경책임법리의 도입으로 보험산업에서는 1993년에 기존의 3개 상품(일반배상책임보험, 수질오염배상책임보험 및 구 환경배상책임보험)을 통합하여 독립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HUK 약관”이라고도 한다)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다. 또한 보험산업에서는 환경책임법의 제정으로 계약자의 책임부담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안전진단(safety audit)과 리스크컨설팅이 있는 경우에만 인수하는 형태로 전환되었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보다 정확한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고 우연하고 점진적인 오염으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미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동 보험은 보험기간동안에 특정시설에 유출된 오염물 피해(소급담보없음)와 3년이라는 보고 연장기간을 통하여 장기간 위험을 담보한다. 담보 위험은 제3자에 대한 신체 및 물적 손해 배상

책임(civil liability)이며, 생태계 다양성 훼손과 같은 손해(public liability)는 제외된다. 또한 담보하는 환경오염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만 해당되며, 정상적인 가동(normal operation)으로 인한 오염손해와 과거 오염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담보기준(trigger)은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경우(verifiable first discovery)를 담보요건으로 하는 표명담보기준(manifestation trigger : verifiable first discovery)⁶²이다. 통상적으로 보상한도는 2백만에서 5백만 유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IV-1> 독일의 환경법 제정전후 환경보험 보험료 추이



자료 : Onno Fiffmeeister · Reimund Schwarez(2007),pp.5-9.

보험료 실적은 환경책임법 입법 1차 연도인 1991년 3백만 유로에서 입법 3 연도인 1993년에는 3,800만 유로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2억 400만 유로까지 성장한 이후 현재까지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건수도 입법 전에는 10건 내외였으나 입법 당해연도에 20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6건에서 15건 이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가입대상 시설 128,070건의 82%인 104,915건이

62)표명 담보는 보험기간 중에 담보하는 사고라고 환경부나 평가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보험사고로 하는 것으로 손해사고발생주의기준(occurrence basis policy)과 손해배상청구기준(claims-made policy)과는 차이가 있다.

가입하였고 이중 의무가입은 1%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의 경우에는 가입대상 시설의 90%이상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EU 환경배상책임지침 반영 후 보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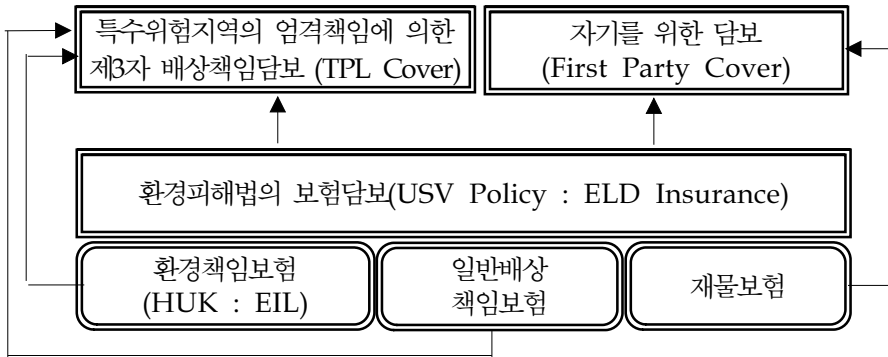
독일은 유럽 『환경배상책임지침(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2004/35/EC)』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7년 4월 말까지 자국법화를 가장 먼저 하였다. 지침의 반영은 기존의 환경책임법과 별도의 독립적인 『연방환경피해법(Environmental Damage Act: Umweltschadensgesetz)』⁶³⁾법을 제정하여 반영하였다. 동법은 2007년 3월 30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이 EU 지침과 다른 점은 기존의 『연방 수자원법(Federal Water Resources Act)』, 『연방 자연보존법(Federal Nature Conservation Act)』, 『연방토양보호법(Federal Soil Protection Act)』의 정의를 준용하면서 관련법에서 약간씩 보완하였고, 재무적 보증 조항은 규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피해법은 제3자에 대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부담손해(the third party liability)가 아니라 환경파괴에 대한 복구 또는 정화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가입방식은 의무보험이 아니며 보험조건 중의 하나인 배상한도액의 설정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피해법에 의한 보험제도를 “USV Policy” 또는 “ELD Insurance”라고 한다. 동 보험을 기존 보험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동 보험은 기존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IL)이나 일반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독립된 보험(stand-alone coverage)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EU 지침상 규정한 배상책임까지를 포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배상책임보험이나 일반배상책임을 가입하고 USV Policy도 가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환경피해법에 의한 보험(USV Policy)은 수질, 토양, 생태계 파괴 등에 관련된 오염복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인데 반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HUK Policy)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동 중인 시설물로부터

63)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u_schad_g_eng.pdf

터 발생한 오염사고로 제3자에 대한 물적 및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IV-2> 독일의 신 환경보험제도(2007)



자료 : GUY CARPENTER(2007),p.11

두 번째, 담보하는 오염사고 유형을 비교하여 보면, 환경배상책임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사고뿐만 아니라 점진적 오염사고도 담보하는 반면에 USV Policy는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사고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인 영업 중에 생긴 오염(허용된 연기나 폐수 배출)이나, 점진적으로 생긴 오염(지하배관 및 탱크의 누출)사고는 담보하지 않는다. 담보기준은 두 보험 모두 표명담보기준이며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사고만 담보한다.

세 번째, USV Policy는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이 생긴 경우 제품을 생산한 제조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 보험에서 약관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2. 일본

가. 관련법규

1973년에 제정된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은 피해자구제를 위한 원인자책임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제도의 대동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환경관련법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폐기물처리의 대책과 관련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법)』이 1970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1991년, 1997년, 2000년에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주로 다이옥신 대책 등의 처리단계별 문제에 대한 대처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산업폐기물관리표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배출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 강화, 산업폐기물의 대량 배출사업자에게 처리계획 등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산업화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확대되는 것을 인식하고 1996년에 수질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지하수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하수 정화 조치 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5월에는 『토양오염대책법』을 제정하여 2003년 2월에 시행하였는데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문제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폐업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오염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지사는 토양오염에 의해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지정 조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오염 제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⁶⁴).

나. 환경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환경관련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 의료폐기물배출자 책임보험, 산업폐기물배출자책임보험이 있다. 그러나 EU나 미국과 같이 민영보험회사와 정부와 같이 협력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보험화를 통한 사회적 리스크감소를 위한 제도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최근에 들어 환경보험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4) 赤堀勝彦(2004), pp.14-16.

1)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으로 담보하고 있다. 1975년에 수질오염과 관련된 풀(pool)을 설립하여 오일탱크, 석유화학공장 등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수질 오염손해만을 담보하고 있다.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별개로 1992년 AIU사, 일본화재보험(현 일본홍아보험), 안전화재(현 손보재팬)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동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시설소유자, 관리자특별약관)로부터 혹은 보험계약자가 하청(하청업자특별약관)을 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인적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정화비용을 담보한다. 여기서 환경오염은 유출, 누출 혹은 배출된 오염물질이 지표 혹은 토양 중, 대기 중 또는 바다,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의 수면 혹은 수중에 존재하여 타인의 신체 장애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괴 등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보통약관 제3조)⁶⁵⁾. 다만, 바다 등 하천오염 사고의 경우 석유물질과 관련된 경우에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고 유탁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된다. 또한 보험은 환경오염대응비용 부담특약을 첨부한 경우에 오염사고 발생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한 피해자 위로를 위한 직원 파견비용, 오염대책본부 설치비용, 신문 등 광고게재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65) 損保總合研究所(1993), p.932

<표 IV-14> 일본 환경배상책임의 담보체계

손해유형/사고구분		영업배상 책임보험	유탁배상 책임보험	환경배상 책임보험
신체장해 재물손괴	배수, 배기에 기인	×	×	○
	상기 이외	급격사고	○(재물)	○
		비급격 사고	×	×
어업권침해	급격사고	×	○	○
	비급격 사고	×	×	○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		×	×	○
행정명령에 의한 정화비용	급격사고	×	△	○
	비급격 사고	×	×	○

주 : 유탁배상책임보험은 석유물질이 대상시설로부터 공공수역(바다, 하천, 운하 등)으로 유출되어 나타난 오염사고를 보상함.

자료 : 赤堀勝彦(2004), p.19.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은 2001년 삼성주우화재가 판매한 상품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인도한 부동산에서 계약상 보상조항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오염정화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토양오염에 관한 사전조사를 행한 부동산에서 약관에 명시된 보상기간 중에 우연하게 오염이 확대되어 있거나 오염 확대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것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 오염 확대의 판단은 토양의 오염에 관계된 환경기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오염확인 비용 및 컨설팅 비용 등의 추가지출 비용도 담보된다.

2) 기타 환경관련 보험

의료폐기물 배출자 책임보험은 2000년 『폐기물처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 수탁업체가 불법적으로 폐기한 경우에 배출자의 책임도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손보재팬사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동 보험은 병원, 진료소 등 의료기관의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폐기되어 『폐기물처리법』,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치명령, 제거비용의 구상을 받았을 때에 폐기물의 철거나 오염토지의 정화와 관련된 비용,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에

의해 발생한 건강피해 등의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책임보험은 손보재팬사가 2002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배출자인 기업이 GPS를 활용한 불법폐기물 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투기되어 『폐기물처리법』,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치명령, 제기비용의 구상을 받은 경우에 의료폐기물 배출자 책임보험과 같이 보상하는 보험이다.

3) 보험회사의 시장인식

일본의 환경배상책임보험시장은 다른 일반 보험과 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보험가입실적은 매우 적고 정확한 통계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오염유발자인 기업들의 보험가입 등의 관심도가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와세다대학 桑名謹三교수가 일본 손해보험회사 상위 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일본 환경보험시장 현상분석66”에 의하면, 일본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 의료 및 산업폐기물 배출자책임보험을 모두 판매하는 회사는 8개사이며 12개사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 IV-15> 일본 환경배상책임보험 판매현황

보 험 종 류	판매 회사	판매하지 않은 회사	미 응답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8	12	0
토양오염정화비용보험	6	13	1
의료폐기물배출자 책임보험	3	16	1
산업폐기물배출자 책임보험	2	17	1
위 보험 중 하나	8	12	0

자료 : 桑名謹三(2006), p.93.

이와 같이 일본 손해보험사들이 환경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이유로는 “1) 역선택 문제가 크게 존재한다. 즉 오염 위험도가 낮은 급격한 사고는 시설소

66) 桑名謹三(2006), p.93.

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기업만이 동 보험의 수요가 있어 지나친 위험만 남게 된다. 2) 점진적인 오염손해도 담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오염이 진행하여 일시에 확대하는 오염은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3) 환경오염에 대한 법률기준이 차제에 엄격책임기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에 수반하여 담보범위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4) 과거에 문제가 없던 화학물질이 그 후 환경오염문제가 되어 소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재보험에 의한 리스크분산이 어렵다” 등을 들고 있다.

<표 IV-16> 일본 보험사가 환경보험 인수하지 않는 이유

환경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이유	회사수(%)
환경리스크는 복잡하여 정형화가 곤란하다	6 (85.0)
역선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57.1)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0 (0)
재보험 구입이 곤란하다	5 (71.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사정이 곤란하다	3 (42.9)
미응답	1 (28.6)

자료 : 桑名謹三(2006), p.97.

또한 환경보험의 수요자인 기업측면의 문제점을 보면, “1) 서면심사 및 전문가에 의한 실사조사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보험료 수준이 개별 언더라이터의 판단에 결정된다. 2) 조사비용을 기업이 부담한다, 3) 보험체결시 사전에 보험회사에 의한 제3자적 심사에서 철저하게 오염원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한다. 4) 고액의 보험료에 비해 사고시 배상금액 중 자기부담금부담비율이 높아 리스크전가 효과 예측이 어렵고 부보장점이 감소된다” 는 점을 들고 있다.

桑名謹三(2006)는 일본의 환경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안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환경오염리스크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패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같이 오염유발자가 엄격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환경오염리스크의 거대성으로 인해 보험자는 600억엔 한도로 보상하는 원자력 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일정 한도내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보된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재보험폴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로는 환경오염리스크의 거대성으로 보험료가 과도할 만큼 많기 때문에 계약자의 환경오염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여 노출 리스크정도(환경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기 위한 요율제도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로는 이외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ISO 14001 인증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 의무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투자의 관점에서 보험가입을 유도하며, 보상금액과 자기부담금액을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유연하게 적용, 환경보험에 대한 인센티브로 납입보험료에 대해 세금 우대적용, 기업이 환경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고 있으나 환경회계로서 보험료를 내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업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세트상품으로써 종합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하여 패키지할인 적용 등을 통해 보험 부보를 촉진한다. 또한 보험기간을 5년 이상 10년의 장기계약으로 하고 보험료는 연납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법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표 IV-17> 일본 환경보험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필요사항

필요사항	판매사	비판매사	계
리스크의 정량화를 위한 기술축적	4	7	11
재보험구입을 위한 재보험사와 교섭	1	2	3
강제 부보화	2	3	5
재보험폴(1호그룹)설립	1	4	5
재보험폴(2호그룹)설립	0	1	1
정부가 재보험의 담보 제공	1	4	5
정부의 보험료 일부 부담	0	1	1
기타 사항	3	1	4
미 응답	1	2	3

주 : 재보험폴 1호는 보험업법제10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폴(원자력 폴)로 보험료율 협정이 가능하며, 제2호의 폴은 동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폴(자동차 대인폴)로 재보험은 공동처리하는 가능하나 요율협정은 불가능한 폴을 말한다.

자료 : 桑名謹三(2006), p.99.

V. 국내 환경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 활용방안

1. 보험제도 활용 필요성

가. 환경오염 리스크관리 필요성 증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리스크는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라 매년 잠재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오염 및 폐기물의 방출 현황은 OECD의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표 II-3>). 이는 정부가 지속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 및 적용을 하고 기업들은 이에 맞도록 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온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경감의 원동력이 된 것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회 단체들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국내의 환경관련 사회단체는 2006년 12월 현재 환경실천연합회 등 308개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로 자연생태계 환경소송의 대부분이 사회단체가 주체된 경우이며, 최근에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표 II-10> 참조).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환경오염기준 부적합율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중 해상오염 외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오염,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기업체는 2006년 말 현재 14만 217개이다. 이들 업체 중 환경법령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기업은 5,859개 업체로 4.2%의 부적합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6년 6.1%에 비해 매년 3.7%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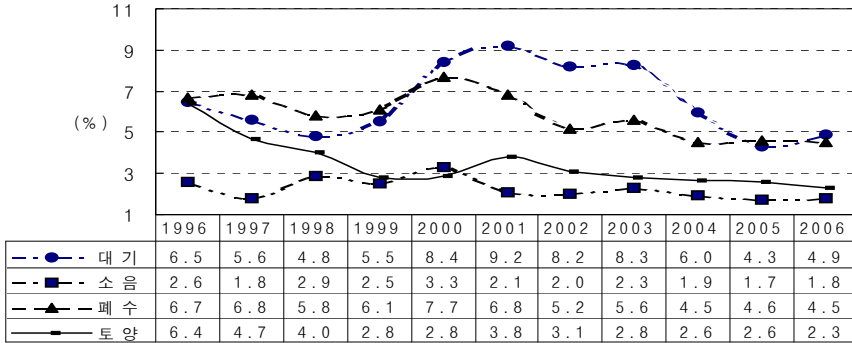
<표 V-1> 국내 기업의 오염기준 부적합율 현황

(단위 : 업체수, %)

구 분	1996			2,006			연평균 증감율		
	단속대상	부적합	비율	단속대상	부적합	비율	단속대상	부적합	비율
대 기	50,256	3,244	6.5	53,411	2,642	4.9	0.6	-2.0	-2.6
소음·진동	21,025	543	2.6	19,034	349	1.8	-1.0	-4.3	-3.4
수질: 폐수	93,014	6,204	6.7	59,914	2,685	4.5	-4.3	-8.0	-3.9
토양:유독물	7,412	475	6.4	7,858	183	2.3	0.6	-9.1	-9.6
계	171,707	10,466	6.1	140,217	5,859	4.2	-2.0	-5.6	-3.7

주 : 단속대상은 환경법령에 의거 단속한 업체수이며, 비율은 부적합 업체수를 단속 대상업체수로 나눈 비율임.

<그림 V-1> 기업들의 환경기준 부적합율 추이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7』, pp.609-614에서 작성

이창윤·이윤미(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적합율은 기업의 종업원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위반율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⁷⁾. 즉,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의 부적합율은 4.0%인데 비해 20명 이하 기업의 경우는 10.2%로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기업 709개를 대상으로 2005년도에 조사한 환경관련 법령 위반 및 처벌기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개 업체가 처벌을 받아 범규위반 처벌율이 14.1%나 되며, 종업원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처벌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0명 미만은 15.5%, 300명 이상은 13.3%).

<표 V-2> 국내 대기 및 폐수 관련법규 위반업체 현황

(단위 : 건, %)

년도	기업규모	기업규모				합계
		20명 미만	21~49	50~299	300명 이상	
2002	위반건수	28	92	169	45	234
	전체업체	269	1,412	2,128	1,168	4,977
	위반율	10.4	6.5	7.9	3.9	6.7
2006	위반건수	38	109	205	65	417
	전체업체	372	2,044	3,018	1,626	7,062
	위반율	10.2	5.3	6.8	4.0	5.9

자료 : 이창윤·이윤미(2006),p.12

67) 이창윤·이윤미(2006),p.12.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기업들의 환경오염 리스크에 국제적 관심증가로 국가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하에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권리확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경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번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일수록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OECD(2001)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에 있어 내적인 장애요인으로 인식측면과 자원측면, 태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식측면에서는 환경법규, 환경경영 체계, 지원 단체 및 정보원에 대해 인식이 낮으며, 자원측면에서는 시간의 부족, 투자재원 부족, 환경관리를 실행할 전문지식 부족, 환경담당 전문 직원 부재,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부족을 들고 있다. 태도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는 믿음, 환경을 경영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 환경관리는 사업과 연관이 없다는 인식, 최고경영층의 현상 유지욕구와 단기성과주의, 환경관리를 통한 잠재적인 비용절감 및 시장편익에 대한 의구심 등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이 환경관리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환경문제가 한 국가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규제들 속에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규제 하에서 경영을 하면 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물론 이러한 규제의 국제적 동조화화는 기후온난화 등의 지구촌 전체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제의 동조화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환경부 등이 규정한 허용 기준치 등을 준수하고 오염으로 인한 기업경영과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간과한다면 자칫 한번의 환경오염 사고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나 EU 국가들은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활용을 권고하는 형태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으나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업만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의 한계점 극복과 국가내 존재하는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적으로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 유용성 증가

환경오염리스크의 보험화는 미국의 경우에 3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환경보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EU의 경우도 환경책임지침을 마련 보험제도를 통한 리스크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리스크를 인수불가능 리스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수가능리스크로 보고 적극적인 법률적 보완과 보험상품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가능 리스크가 되기 위한 기술적 요건과 환경오염 리스크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⁶⁸⁾.

첫째, 다량의 동질 계약자의 집단(mutuality)의 확보 여부이다. 이는 모든 보험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로 담보하는 사고원인(peril)과 통계적 특성이 동일한 집단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환경오염의 경우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원인별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는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작아 실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전가하고 싶은 니드가 부족하다. 또한 환경오염 리스크관리를 잘 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못하는 기업만 가입 하려고 하는 역선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업자의 적극적인 판매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환경오염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능성(assessability)이다. 환경오염과 일반 담보 보험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재물보험의 경우 사고원인과 사고의 결과 즉,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어느 정도 가능하고 피해액의 산정도 피해 재산에 한정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에 환경오염리스크는 오염원별로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매우 곤란하고 오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급격하게 진행된 오염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미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평가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요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리스크측정이 가능한 수질,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등으로 한정하고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 번째, 환경오염 사고발생의 불확실성(randomness)이다. 보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요건으로 하며 고의적인 사고 즉 사고발생 확률이

68) OECD(2003), pp.15-18.

100%에 가까운 이유로 담보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은 명백한 1회의 화재나 충돌과 같은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목적물의 손상을 담보하는 재물보험과는 다르게 법규상 정해진 오염을 누적적으로 해서 오염사고가 될 수가 있고, 종업원 등의 실수나 화재사고⁶⁹⁾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네 번째,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가능한 경제적인 보험료(economic feasibility)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자가 리스크를 전가하는 비용인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리스크는 사고불확실성 등으로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점진적인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여 보험회사의 영업손실이 커지자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리게 되었고 이로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표 IV-8> 참조).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으로 전가하는 환경오염리스크에 일정한 제약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리스크의 보험화를 검토해 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리스크의 발생과 손해정보를 평가가 곤란한 측면과 오염사고 발생시 거대성을 감안하여 보험상품을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오염유발자들의 역선택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보험제도화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업의 문제가 오염만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각종 금융제도나 상품에 연계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소위 금융업의 환경배려형 행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국제적인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업과 관련하여 보면 향후 손해보험회사는 지구촌 환경보존과 인류의 공존을 위한 범 세계적 환경정책의 추진에 따라 리스크 인수만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관련된 방지기능, 방재기능, 정보제공기능 등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환경경영전반에 있어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을 보

69)1991년 구미공단에 소재한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고 이후 17년 만에 유사한 페놀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2008년 3월 1일 새벽에 페놀수지를 만드는 코오롱유화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지 반응기 속에 있던 페놀과 포르말린이 소화용수와 함께 우수관을 따라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취수가 중단되었다.

면, 기업의 환경관리상황을 참고하여 대출을 진행하거나, 자동차보험, 재물보험과 같은 일반보험을 인수할 때 반영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선진국 보험회사들은 상당히 앞선 상태에 있다.

<표 V-3> 향후 손해보험업의 환경경영관련 업무서비스

금융 업무	기업의 환경경 영전반	환경 보전	프로젝트, 신시장	환경 리스크	환경 부하 저감	환경 진달	대 행	중 동	각기관 통 인 형 성
		벤처	지구온난화 문제			발신	행동		
대출 업무	대출심사에 환경배려 반영	환경보전 정책, 비즈니스 우대조치		대출심사에 환경배려 반영	환경 방 침 책 정	환경회계 환경퍼포먼스 표준작성			각종 가이드 라인 작성
		환경분야 프로 젝트 투유자				ISO 14001 취득 환경 감사	환경보고서 발행 환경정보의 제공 컨설팅 서비스제공		
투자 업무	투자처 선정에 환경배려 반영	환경벤처 투자	배출량거 래 증개	신중보험 개발			기부		
		날씨파생상품				환경리스크 인수보험의 환경리스크 반영	기금설립		
보상 업무	일반보험 인수시 환경배려 반영	환경보전대책, 환경비즈니스에 보험							

자료 : 日本 環境廳(2003.3),pp.6-8에서 요약하였음.

두 번째로는 손해보험회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벤처사업투자, 프로젝트 신시장,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등에 있어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보전대책이나 환경비즈니스에 대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과 이산화탄소배출량거래제도 시행 등에 따라 이에 맞는 날씨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장 주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해 종합적인 환경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기업들이 사전적인 규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기업들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가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사후적인 대책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오염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종합적인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기업의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다. 이러한 수요는 대기업은 어느 정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가 기업의 종합리스크관리 서비스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국내 환경보험제도의 활용 방안

가. 환경보험제도의 활용방향

보험상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나 환경오염리스크관련 보험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선진시장인 미국과 독일 등 EU국가의 경우에서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자발적으로 활성화되기 보다는 정부가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고 재무적 대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한 형태이다⁷⁰⁾. 이를 상세히 보면, 1967년 영국 해안에서 침몰한 Torrey Canyon호 사고로 선주책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78년 러브운하의 토양오염사고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수퍼펀드법이 1980년에 시행되었으며, 1989년 엑스발데즈호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기름오염법이 1990년에 제정되어 해양오염방지와 책임 이행 방법을 강구하였다. 독일은 1986년의 산도스사 오염사고가 발생한 뒤에 오염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법을 1991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EU환경책임지침을 반영한 환경피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구비된 환경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7년 태안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로 마련된 법⁷¹⁾은 미국과 같이 해양유류오염 방지와 피해보상을 제도화한 법률이 아닌

70) Martin T. Katzman(1994), Onno Hoffmeister · Reimund Schwarze(2007) 참조

7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98호 2008.3.14 공포)”은 피해어민 등의 생화생계비, 정화비용 등을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보험금등을 초과하여 보상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해 사고의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법이다. 이번 오염사고의 예상 피해액 4,240억원 중 선주배상책임보험(노르웨이 스컬드사) 1,300억원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1,700억원을 합해 3,000억원을 보상받으며 1,24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민들의 성금으로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서 반복적인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V-4> 주요국의 환경사고 후 환경관련법 제정 현황

구분	오염사고명	피해액	대응법안
국제적	Torrey Canyon호 (1967)	영국해안 원유유출	선주책임제도 도입 (P&I)
미국	Love Canal 오염 (1978)	토양오염(950가구피해), 2.2억 달러 배상	슈퍼펀드법 제정(1980)
	엑슨발데즈호 (1989)	해양생태계파괴, 200억달러 이상 보상	기름오염법제정(1990)
독일	산도스사 화재 (1986)	식수원 오염 등 피해액 400억달러이상, 1억 스위스프랑 보상	환경책임법 제정(1991) 환경피해법 제정(2007)
한국	두산전자폐놀유출 (1991)	낙동강 식수원 오염 및 피해자 발생, 수백원보상	-
	씨프린스호 (1995)	여수앞바다 원유유출, 2,500억원 보상	환경책임법안 마련(97년, 00년), 폐기됨
	허베이스퍼리트호 (2007)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35,000ha 오염, 피해액 4,240억원	동 사고 특별법 제정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경제발전 논리에 밀려 수면하에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감안하여 선진국처럼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항구적인 법률 제정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사실상 기업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그러하다. 이는 정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사전적인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

를 준수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환경오염사고는 사고발생빈도가 너무 낮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인식도 적은 실정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적극적인 공급의지는 적고 기업들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관련 상품을 공급하여 왔다. 국내 손해보험 회사들은 환경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의 우선순위를 보면 환경책임법 제정(가중평균 1.4)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국내 실정에 맞는 상품개발(2.9점), 리스크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3.3), 공동인수를 위한 풀제도 도입과 주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보조(4.3),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4.5)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로 볼 때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환경보험을 인수함에 있어 과거와 달리 재무건전성이나 담보력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분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환경오염리스크 담보 보험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환경오염리스크의 광범위성과 거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시장이 형성되어 규모가 증대하는 경우 위험분산체계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환경오염보험의 공동인수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제도가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환경배상책임법이 조속히 제정됨과 더불어 기업들의 보험가입을 촉진 또는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로써 보험제도가 헌법에서 규정한 환경권을 국민들이 누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기업들에게 환경경영을 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환경오염책임법 제정

1) 환경책임법 필요성

국내 환경관련법은 환경오염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규제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오염피해구제에 핵심사항인 제3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원인자에게 책임이 있고 무과실과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원자력오염이나 해양유류오염의 경우에는 오염유발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이행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주요대상인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기타 다른 오염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오염사고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1989년, 1997년, 2000년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으나 회기 내에 입법화되지 못하고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⁷²⁾.

1989년에 박영숙 외 66명의원이 제안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법안』은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환경오염으로 정의하고 유발자에게 무과실,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입증책임도 사업자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배상심의회를 두었고 손해배상 이행수단은 명시하지 않았다.

1997년의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은 김원길외 30명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보험가입조항과 불이행시 벌칙조항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동 입법안은 환경오염손해에 대해 유발자에게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오염유발 위험성이 높은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 또는 공탁하도록 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추정조항을 두어 사업자가 당해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안되어 있었다.

72) 강만옥(2000), 전재경(2003), 박노일(2002)

<표 V-5> 국내 환경책임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1989년 법안	1997년 법안	2000년 법안
법명	환경오염피해배상법	환경오염손해에대한 배상 법안	97년과 동일
목적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대상 오염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환경정책기본법제3조(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책임범리	무과실책임/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	무과실책임/연대책임/소급책임, 입증책임전환	97년과 동일
보호 법익	제3자 인적·물적 손해 배상책임 (휴업손해포함)	제3자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	97년과 동일
배상한도	-	한도설정	97년과 동일
보험가입	-	위험성 높은 시설	97년과 동일
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결정 및 각하 등 심의	-	-
정보제공 요구권	-	피해자에게 부여	97년과 동일
벌칙	진술거부, 문서 불제출 시 6개월 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배상조치불이행: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정보제공불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97년과 동일

자료 : 국회 홈페이지의 법률관련정보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2000년에는 김원길 의원 외 20명 의원이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1997년의 법안과 대동소이하나 대상오염의 경우 일조권이 추가되고 자연생태계 파괴가 제외된 것이 차이점이다. 동 법안도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만 이루어 졌고 회기 내에 입법화되지 못해 자동폐기되었다.

또한 200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정책현안자료집』 73)을 통

7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5년 국정감사정책현안자료집에 의하면 환경책임법의 입법장애요소로 “가. 산업계가 기업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제정을 찬성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 나.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 신청 및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환경관련법이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법체계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도 환경오염책임에 관한 기본원칙(무과실책임의 원칙, 연대책임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 이외에 원자력손해배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광업법

해 환경책임법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과정, 향후 검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사고우연성, 피해의 광범위성, 거대 피해액 인과관계 입증곤란, 고액배상인 경우 책임이행 곤란, 다수 피해인 경우 민사소송만으로 구제받기 곤란)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으로 환경책임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제정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사업자에 대한 파급효과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후 현재 까지 새로운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1989년부터 입법추진이 있어 왔지만 기업의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입법화가 되지 못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1989년 산도스사의 나일강 오염사고이후 바로 엄격책임과 의무보험제도를 규정한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었고 입법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⁴⁾. 이와 같은 국내 현실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구제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2005년의 환경 소송은 수질오염 6건, 폐기물오염 7건 등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고액으로 확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담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또한 오염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확보 외에도 오염지에 대한 정화책임 확보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미국과 EU의 환경책임법을 참고하여 제3자의 피해자 보상책임과 정화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환경책임법 입법방향

환경오염리스크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디에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따라 입법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법안은 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에 비해 미국이나 EU의 환경책임법은 환경

등에도 환경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라. 기존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보험분야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 상충"을 제시하고 있다(http://environment.na.go.kr/servlet/Controller?key=title&value=&usergubun=001&menuId=2005120000078&printAction=list&currPage=1&end_date=&start_date=&record_id=0001100355036&_action=view)

74) Onno Fiffmeeister · Reimund Schwarez(2007),pp.1-11.

오염으로 인한 오염지 정화와 피해자 보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미국 및 EU의 환경책임법안을 비교하여 향후 입법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환경오염손해상책임법안은 방사능 오염, 해양오염, 일조권 등 모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보험 또는 공탁)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환경책임법인 자원보존복구법(RCRA)과 슈퍼펀드법(CERCLA)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잠재책임자에게 환경복구 등의 정화를 위해 엄격책임과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재무적 이행수단으로 보험, 보증, 신용장, 현금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V-6> 미국, EU, 국내입법안의 비교

	미국	유럽	한국 (2000안)
법명	슈퍼펀드법(CERCLA)	환경책임지침	환경책임법안
목적	건강 및 환경보호	환경보호	건강 및 환경보호
대상 오염	수질, 토양오염	수질, 토양, 생태계파괴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환경정책기본법3조)
대책시기	사후조치	사전예방, 사후조치	사후조치
보호 법익	오염지 정화책임(제3자 배상책임 제외)	오염지 및 생태계 정화책임(제3자배상책임제외)	제3자 배상책임(인적, 물적)
책임법리	엄격책임	엄격책임(과실책임 : 일부 생태계 다양성)	무과실책임(입증책임전환)
	연대책임, 소급책임	연대 또는 개인부담 선택, 비소급책임, 확산오염 및 개발리스크면책	연대책임, 중단사업자의 소급책임
책임 부담자	잠재책임부담자(현재 및 과거 소유주 등)	오염유발자	위험성 사업 영위자(시행령)
재무대책 의무화	보험 이행보증 신용장 현금 예탁 자기보험 등	재무대책확보 필요(의무보험 논의 중)	손해배상조치(보험가입 또는 공탁), 가입한도 획정

최근에 제정된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은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환경책임관련법에 반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EU 환경책임지침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생태계파괴에 대해 사전 및 사후 환경정화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책임부담원리는 엄격책임과 연대책임이 적용되나 미국과는 달리 소급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국내 환경책임법의 입법방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환경오염책임법은 오염지복구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복구방법 확보를 입법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입법안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이었다면 향후 제정될 법안은 미국과 EU처럼 오염지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의무를 부여하고 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 제정사례는 독일이다. 독일의 경우 1991년에 시행된 『환경배상책임법』은 오염지 정화와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조치 확보를 위해 존치하며 최근에 EU지침을 반영한 『환경파괴법』은 자연생태계를 포함한 환경보존과 정화책임 이행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적용대상 오염원이다. 미국과 EU의 경우 환경책임법의 적용대상 오염원이 다르지만, 주로 수질 및 토양오염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생태계 파괴오염은 EU만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법안에서 보면 '97년 입법안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자연생태계 파괴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2000년 입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97년 입법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고 2000년 입법안은 환경오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입법안에서는 환경오염만을 한정하되 오염책임 부담자의 가능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소음, 진동, 일조권, 방사능 오염 등은 제외하고 심각한 오염인 수질, 토지오염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제외된 오염은 발생빈도가 적고 오염피해 측정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배상책임법리를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는 오염책임을 부담시키는데 적용할 책임법리이다. 환경오염 유발사업자에게는 환경관련법규의 준수여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가동(normal

operation)을 하는 과정상에서 오염원의 누출로 인해 환경오염이 생긴 경우에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시키는 엄격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오염사고가 생긴 경우 책임자를 규명하기 곤란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환경오염리스크관리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 환경오염 유발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 사업자가 과거에 행한 사업의 결과로 오염이 진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당해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되 법 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정화책임과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 재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벌칙조항을 두어 이행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환경관련법 중 책임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보면,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무과실책임, 배상책임한도, 손해배상조치, 보험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은 방치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과 같은 재정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유류오염배상보장법도 책임부담과 보장계약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토양오염에 대해 잠재오염유발자에게 오염지에 대한 정화책임의 이행수단으로 재무대책을 마련 의무화를 보험가입, 이행보증 증권 구입, 신용장, 현금예탁, 자가보험 등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EU의 환경배상책임지침은 보험 등의 재무대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보장계약조항이 환경책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 등의 대책을 모든 사업자에게 할 것인지 일부 위험시설에만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상에 규정한 환경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모든 시설에 대해 가입의무화를 하여 오염리스크를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로 오염자의 책임부담한도(limit of liability)이다. 오염사고의 대부분의 경우 환경관련법규상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오염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누적적으

로 오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염사고의 거대성으로 인해 오염유발업체는 파산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발자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토양오염이나 해양오염의 경우 오염자에게 일정한도까지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IV-7> 참조). 우리나라도 재물손해와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1사고당 및 연간총한도액을 두고 그 초과에 대해서는 기업이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환경오염피해가 다수의 피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의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개별적인 절차로 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하여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전재경(2003)). 그러나 집단소송으로 인해 본래 입법목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 복구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환경오염피해의 광범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오염 리스크의 측정과 평가가 더욱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어 더욱 많은 분쟁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 등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을 높여 보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EU의 경우에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엄격책임과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을 두어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고 있지 별도의 집단소송제도는 인정하고 않고 있다.

다. 보험상품 및 요율개발

1) 보험약관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과 국내의 실제 상황에서 보더라도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과는 별도로 약관과 요율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상품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영업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적용하는 법리나 리스크 특성이 다르게 때문이다(<표 IV-9> 참조). 이에 따라 독일,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분리해서 독립적인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독립적인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관련 법률에서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인적손해, 물적 손해, 정화비용)와 계약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담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이나 기업유지손실도 보상할 수 있는 특약 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담보기준(trigger)은 환경오염사고의 광범위성과 거대성 때문에 점진적인 오염이나 급격한 오염을 구분하여 담보를 검토해야 한다. 점진적인 오염은 오염사고에 대책 책임부담에 대한 입증과 배상액이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오염유발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볼 때 점진적 오염 또는 급격한 오염에 무관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손해사고기준으로 인한 경우 미국에서 이미 시장실패로 판명된 만큼 손해배상청구기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험기간은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계약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리스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pollution liability insurance)의 보험기간은 1년 이상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야 산출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보험통계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통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보험상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리스크에 대한 사고발생확률과 발생심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보험 출재 등을 통한 보유결정 등이 가능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배상책임상품에 대해서는 7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또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언더라이팅 기술의 미흡으로 해외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시장이 세계 10위권임에도 80년대처럼 보편적인 리스크나 특수한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하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리스크평가와 보험요율산출에 필요한 행정 기관 및 보험실적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집적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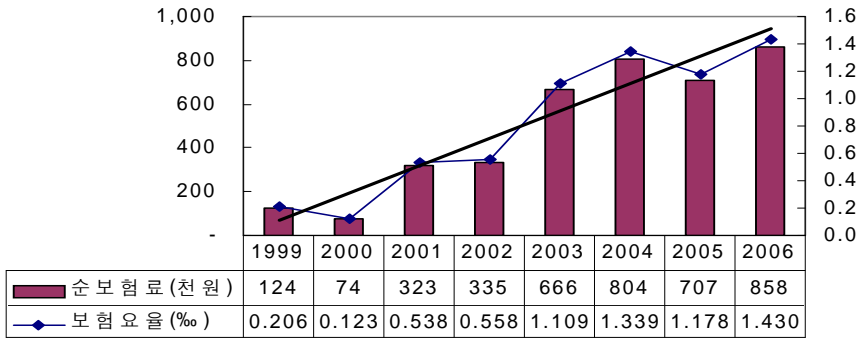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제 소송 및 분쟁 자료에 의해 보험료율 수준을 추정 하여 보았다. 사용한 통계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분쟁위원회의 분쟁해 결건수와 배상액 합의금, 소송건수를 기초로 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오염은 대기오염을 포함한 모든 오염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발생빈도를 보면 7년 평균으로 분쟁발생빈도는 1.9154%(1,000개 사업장에서 2개 사업장에서 오염사고 발생)이며, 소송빈도는 0.1762%(10,000개 사업장에서 1.8개 오염사고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손해심도의 경우에는 분쟁으로 인한 건당 배상합의액은 4,000만원 정도이다. 이는 배상신청금액의 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 소송이 걸려 배상한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을 배상액, 법률비용, 정화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는데 연평균 1억 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초하여 추정된 순보험료는 48만원 정도이며, 매출액 1천원당으로 하면 0.81%로 나타났다.

<표 V-7>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 수준 추정

연도	발생빈도(%)		손해심도(천원)		순보험료 (천원)	영업보험 요율(%)
	분쟁빈도	소송빈도	배상액	손해액		
1999	1.024059	0.064814	43,624	120,750	124	0.20609
2000	0.779342	0.064945	28,094	95,168	74	0.12361
2001	1.625034	0.174590	46,369	198,677	323	0.53810
2002	3.881804	0.103318	40,483	86,364	335	0.55875
2003	4.072127	0.097619	60,913	163,542	666	1.10994
2004	3.486118	0.515883	33,063	230,615	804	1.33992
2005	2.809442	0.516679	34,688	251,626	707	1.17821
2006	3.722002	0.550789	33,063	230,615	858	1.43058
평균	2.674991	0.261080	40,037	172,169	486	0.81065

- 주 : 1) 배상액은 분쟁건수대비 분쟁건의 배상금액 비율임. 손해액은 연도별 소송건수에 대한 보험금으 로 배상액(분쟁배상액의 10배), 법률비용(배상액의 40%), 오염지 정화비용(배상액의 20%)로 추 정하였음
- 2) 순보험료는 분쟁발생빈도와 손해액을 곱하여 산출, 보험료는 순보험료를 예정손해 율(60%)로 나눈 값임

<그림 V-2> 국내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추정 보험요율 수준 및 추이



그러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고 오염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요율 수준은 더 높아 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산출된 보험료율 수준의 추이를 보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볼 때 환경책임법 제정을 통해 보험이 제도화되는 경우에는 보험요율은 2%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염리스크가 크게 존재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평균적인 보험료율 수준 이상을 부담해야 리스크를 적정수준까지 보험으로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보험가입방식

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 임의보험 또는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을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보험제도의 운영 목적과 관련된다. 보험제도가 환경책임법에서 정한 환경오염사고 발생방지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위험집단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오염리스크가 큰 사업자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심하게 존재하면 영업손실이 심해져 1980년대 미국처럼 시장실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오염리스크의 보험제도화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가입의 강제성 또는 가입조항을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 EU국가들의 경우 환경책임법상에서 보험가입 등의 재무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독일의 환경배상책임법은 엄격책임법리와 배상이무이행을 위하여 시설 운영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보증, 은행의 보증 중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가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업정지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독일 손해보험회사들은 대기, 수질, 토양오염에 기인한 인적, 물적 손해 외에 행정상의 정화비용책임, 손해방지비용에 대하여 정상운전에 생긴 점진적인 오염도 담보범위에 포함한 환경배상책임보험(UHV: UmweltHaftpflicht Versicherung)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고 보험가입율은 90%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잠재 환경오염책임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지만 재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무화나 다름없다⁷⁵⁾. 또한 최근에 제정된 EU의 환경책임지침에서도 오염 유발자에게 보험 등의 재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의 강제화조치는 지침시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리스크를 보험화하기 위해서는 역선택 심화, 인수거부 등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공정한 손해사정체계 확립

환경오염리스크는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범위 등에 있어서 일반보험에 비해 다른 특징이 있다. 특히 오염발생과 피해의 인과관계의 규명이 곤란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오염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담보기준도 가능한 인과관계규명이 용이하도록 손해배상청구기준과 표명담보기준 등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운영상 명확화와 더불어 손해사정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확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오염 전문가를 보험산업에서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사고는 특정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해결되기 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또는 시민단체의 문제로 해결되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손해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형태는 프랑스에서 운영되고 있다. 환경오

75) Benjamin J. Richardson(2002),pp.319-322.

염보험을 공동재보험을 인수하는 기관인 Assurpol의 경우 사고처리를 위해 손해사정위원회(claim settlement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표명담보기준으로 하는 독일방식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담보하는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환경부나 전문 평가기관에서 인정하게 되면 이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바. 위험분산 체계

환경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리스크의 리스크평가 곤란 및 거대성을 감안하여 위험분산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위험분산방법으로는 원보험 계약체결에서 공동보험과 풀제도, 재보험방법으로 일정 초과 손해에 대한 기금 적립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 공동보험 또는 풀제도

환경오염리스크를 보험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잠재노출리스크가 매우 큰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공동인수나 풀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인수나 풀제도와 같은 상호협정⁷⁶⁾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환경오염보험 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책임법상에서 오염자의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인수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풀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개별보험회사가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EU국가의 경우 환경오염리스크의 거대성을 감안해 환경보험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를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Assurpol⁷⁷⁾이라는 재보험풀을 구성해 최

7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호협정은 원자력보험풀, 보세화물화재보험 풀, 원자력보험 풀, 국공유물건 화재보험 풀이 운영되고 있다.

77) <http://www.assurpol.fr/>

대 6,000만 유로(2006년)까지 인수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Pool Inquinamento를 통해 2,500만 유로까지 인수하고 있다. 스페인은 Pool Espanol de Riesgos Medio-ambiente을 구성하여 800만 유로까지 인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인수나 보험폴 도입을 제안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⁷⁸⁾.

특히 유럽국가가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한 공동인수 또는 공동 재보험을 허용여부에 대해 EU 차원에서 경쟁제한측면을 검토한 결과, “EEC 특약 제85조 3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요소가 없다고 결정된 바 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한 보고서⁷⁹⁾에 의하면, 프랑스의 Assurpol은 생산 또는 분배와 기술적 경제적 진전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의 무보험대책을 해소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편익이 있고, 경쟁 제한에 필수적인 사항도 아니고 경쟁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환경오염보험을 제도화하기 위하여는 초기에는 보험폴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환경오염기금 및 국가재보험 운영

오염유발자가 환경책임법상에 정한 보상한도액만을 보험에 가입하여 오염 피해 및 정화비용이 그 한도를 초과하거나 가거 오염유발자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에 적립된 환경오염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정화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⁸⁰⁾.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를 담보하는 재해보험에서 일정손해율(예 순수해율 180%)이상의 사고에 대해 국가가 재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보험은 손실의 일정 부분을

78) 桑名謹三(2006), p.97.

79)EU 특약 제85조 3항은 순보험료의 공동산출, 표준약관 작성, 특정 리스크에 대한 공통된 담보 제공을 제외하고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Assurpol은 이들 제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92/96/EEC:Commission Decision of 14 January 1992 relating to a proceeding pursuant to Article 85 of the EEC Treaty(IV/33.100-Assurpo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2D0096:EN:HTML>

80)Benjamin J. Richardson(2002)

국가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기금은 이미 정부가 환경오염 부담금을 매년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되는 금액의 20%를 매년 적립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된다. 2005년의 환경오염부담금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적립하는 경우 160억원 규모가 된다.

또한 기업 등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적정 수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각종 환경부담금 중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과 폐기물 처리 등에 관련된 부담금이나 이행 보증금 등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환경관련 비용의 내부화와 적극적인 환경오염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 다양한 보험가입 유인제도 도입

1) 보험료할인제도 도입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많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 산업에서는 의무보험제도의 경우 다양한 요율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책임보험의 교통법규위반 할인할증제도, 화재보험의 우량할인 제도 등이 있다. 미국 매사츄세츠주의 경우 환경청에서 유독가스 저감인증 등을 받은 경우 보험료할인, 보상한도 확대, 자기부담금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Environmental Insurance Incentives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⁸¹⁾.

따라서 환경오염보험의 경우에도 다양한 가입 유인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 먼저 특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보험료 등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는 ISO 14000을 인증한 기업에 대해 오염리스크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험료 차등적용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리스크관리의 촉진을 기할 수 있다. 나아가 이에 보험실적이 3년 이상 축적되면 경험 손해를 실적에 의한 할인할증제도를 결합한 예정요율체계(schedule rating plan)가 시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자동차보험에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위반여부에 따

81) <http://www.mass.gov/ota/support/incentivesprog.htm#contact>

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실적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2) 환경보험료의 보험료 보조제도 도입

환경오염보험은 사기업의 이익보호라는 관점보다는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환경보험가입 유인을 위해 보험료의 법인세 공제나 보험료 보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 의 경우 환경오염지(브라운필드)의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0%~20%까지 법인세(개인인 소득세)를 공제(credit)하여 주며, 재산세도 10년간에 걸쳐 면제해 준다. 또한 기업에 가입한 환경보험료도 3만 달러와 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준다. 이와 반면에 코네티컷 주는 도시 및 산업지역의 오염지를 개발하여 오염을 제거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 중 최대 1억달러 까지 공제하여 준다. 매사츄세츠주는 보험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5만달러,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인 경우 15만달러까지 지원해준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환경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국가가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60%~90%까지 보조 해주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양식 재해보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정부가 보조해줄 예정이다. 이들 보험과 환경보험을 비교하여 보면 모두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보상의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 자연재해보험은 경제주체의 통제가 곤란한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원인으로 개인의 사적재산피해를 보전해주는 반면에 환경보험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오염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 자연환경훼손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자의 보험료 보조를 통한 보험의 기대목적으로 볼 때는 환경보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재해보험은 특정한 사고로 일시적인 경제적 충격을 해소를 국가 보조하는 것에 비해 환경오염보험은 공공재인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험효용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기업공시제도에 환경리스크 포함

독일의 경우 1998년에 제정된 『통제투명법(Kon Trag: Law on Control & Transparency)』⁸²⁾에 의거 기업의 이사는 기업이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경영리스크(business risk)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 제정으로 독일의 환경보험의 가입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다. 또한 미국의 샤페인 옥슬리법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에 의하면 기업은 환경배상책임을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환경보험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⁸³⁾.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 도입은 없는 상태이나 환경경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다.

82) Onno Hoffmeister · Reimund Schwarze(2007), p.6

83) Patricia A. Henry · Karl J. Russek(2004), p.7.

VI. 결 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접하는 것이 환경이다. 가정에서의 환경, 직장에서의 환경, 자연공간에서의 환경이다. 환경이야말로 개인들은 물론이고 국가적,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1972년 UN차원에서 환경회의가 개최된 이래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지구촌 전체적으로도 더욱 거대한 환경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생활환경이 오염되어 쾌적한 환경이 감소되고 있으며, 수질이나 대기오염, 토지오염 등으로 인한 신체 손해나 재산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07년 12년 5일 발생한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와 2008년 3월에 발생한 코오롱유화의 낙동강 오염사고는 국내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대한 경종을 준다. 국내 기업들은 환경오염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상존하고 있음에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정도에서 오염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염 사고시 피해자는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소수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를 받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오염사고 피해구제를 보면, 396건의 분쟁이 발생하여 이중 62건이 298억원 배상신청을 했으나, 실제 합의 금액은 16억원에 그쳤고 이에 불복한 소송은 32건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피해자가 오염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액 산정도 곤란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요국의 경우 오염자에게 정화 및 배상책임 등을 부담시키기 위해 엄격책임과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소급책임도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입증책임을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등의 재무적 대책을 갖추도록 환경배상책임법에 명시하여 오염자의 원상회복과 피해자 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차례나 『환경오염배상책임법안』이 제출되었지만, 회기 내에 입법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경책임법이 마련되고 이에 기초한 의무가입 형태의 환경보험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환경보험도 동일한 인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오염보험 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독립적인 환경오염배생책임을 개발하고 국내 오염리스크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고 위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관련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보조,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험가입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독일 등과 같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가 기업들의 환경오염리스크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보험이 환경오염 유발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하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장만옥·민동기·임현정, 『환경피해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0.12
- 박노일, 『환경피해보상제도에 대한 법제적 검토』, 국회사무처·법제처,
2002.12
- 이재엽, 「금융기관의 환경책임과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정책
연구』 제3권 제1호(통권 4호), 2004.6
- 이창훈·이윤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12
- 전재경, 『환경책임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 중앙환경분쟁위원회,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관련 여론조사』, 2006.7
- 지수현, 『배상책임보험론』, 보험연수원, 1998
- 추장민·정희성·강상인·박경애, 『환경분쟁조정기능 강화등 중장기 발전 방
향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11
- 환경부, 『환경백서 2007』, 2007
- _____, 『환경통계연감 2007』, 2007
- 桑名謹三."日本の 環境保険マーケットの現状分析-環境保険マーケット擴大に
何が必要か-保険會社へのマーケット調査を通じて", 『損保研究』
Vol. 68 No.2, 2006.8
- 損保總合研究所. 『新種保險約款集』, 1993
- 植田和弘, 『環境經濟學』, 東京: 岩波書店, 1997.
- 日本 環境廳, 金融業における環境配慮行動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3.3
- 赤堀勝彦."企業の環境リスクマネジメントと環境保険について", 『保險學雜
誌』 No.585, 2004.6
- 八頭司 彰久."環境保險の現状と課題", 『保險學雜誌』 Vol.586, 2004.9
- Alistar Ulph·Laura Valentini, "Environmental Liability and the Capital
Structure of Firms", December 1999
- Benjamin J. Richardson, "Mandating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 DUKE ENVIRONMENTAL LAW & POLICY FORUM, Vol.12;293,
Spring 2002
- CEA(Insurer of Europe), *White Paper on Insueability of Environmental Liability*,
January 2007
- _____, *The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Enhancing Sustainable Insurance
Solutions*, February 2008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defra),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Consultation on options for implementing the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November 2006(www.defra.gov.uk)
- Doutora Maria Baptista Antunes, *A FRAMEWORK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NSURANCE
SYSTEMS*, UNIVERSIDADE NOVA DE LISBOA, 2002
- EPA,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Underground Storage Tanks: A Reference Manual*,
2008.3
- GAO, *Hazardous Waste : The Cost and Availability of pollution Insurance*,
October 1988
- GUY CARPENTER, *Cualty Specialty Update*, September 2007
- James W. Broderick · Daniel R. Lavoie · Andrew J.Perel,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nd the Role of Environmental Insurance",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Autumn 2000
- Jurg Spuhler, "The EU Experience and the Challenges in Insuring
Environmental Risk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1 No. 80, July 1996
- _____,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
ability Insurance*, Swiss Re, 1998
- _____, *Environmental Insurance for enterprises: An insurance concept*, Swiss
Re, 1999
- Kenn Anderson · Arthur Harrington, "Environmental Insurance Can reduce
Liability Risk at Brownfield Sites", *TECHNICAL RESOURCES*, Vol.
24, Issue 4, 20006

- Krisen R. Yount · Peter B. Meyer, *State Brownfield Insurance Programs 2006*,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December 2006
- Lucas Bergkamp, "Environmental Risk Spreading and Insurance", *RECIEL*, 12 (3), 2003
- Maleki · Flitner · Trupin, *Commercial Liability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6th Ed., AICPCU, 2005
- Martin T. Katzman,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and the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Risk", *Policy Studies review*, 1986
- _____,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Cato Journal*, 1986
- _____,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and Catastrophic Environmental Risk",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5, No.1, 1988
- M. Power · L. S. McCarty,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Decision-Making in a Social Context", *Human and Ecological Risk Assessment*, 12, 2006
- Michael Faure, *Environmental damage insurance in theory and practice*, UCL Centre for law and the environment and CSERGE, July 2001
- Michael Faure · David Grimeaud, *Financial Assurance Issu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European Centre for Tort and Insurance Law and Maastricht University, 2000
- OECD, *SM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Working Party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01
- _____, *Policy Issues in Insurance : Environmental Risks and Insura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 Insurance in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Related Risks)*, 2003
- _____, *OECD in Figures 2006-2007*, 2007
- Onno Hoffmeister · Reimund Schwarze, *The Winding road to industrial safety, Evidence on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liability on accident prevention in Germany*, University of Innsbruck Working Papers in Economics

and Statistics, 2007-11

- Paul K. Freeman · Howard Kunreuther, "The Role of Insurance and Well-Specified Standards in Dealing with Environmental Risks",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Vol. 17, 1996
- _____, "Managing Environmental Risk through insurance, *Yearbook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Wharton School of UPENN, 2002(<http://opimwharton.upenn.edu/risk/downloads/archive/arch114.pdf>)
- Patricai A. Henry · Karl J. Russek, "Insurance Response to pollution : Past, Present and Future", *The Jone Liner Review*, Vol. 18 No. 1, Spring 2004, pp.5-7.
- Peter B. Meyer,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Insuranc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Conference paper , May 2-3 2002
- Richard S. Betterly, *THE BETTERLEY REPORT: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market Survey 2007*, April 2007
- Robert P. Hartwig · Claire Wilkinson, *Bnvironmental Insuranc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August 2005
- Simon White, *Insurance for ELD Liabilities*, EUROP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SEMINAR ON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14-15 JULY 2006, pp.4-6.
- Swiss Re, *Insuring environmental damage in the European Union*, May 2007
- Terry A'Hearn 외 8인, *RISK, THE ENVIRONMENT AND THE ROLE OF THE INSURANCE INDUSTRY*, The UNEP FI Australian Advisory Committee on Insurance, 2003
- William H. Howard · Margaret A. Mackowsky, "Defending Claims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First-Party Property Insuranc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7 No. 2, April 2002
- Willis Global Risk Solutions, *Environmental Insurance Market Review 2002*, 2003

부 록 : 국내 환경법규

번호	법 률(44)	대 통 령 령(44)	부 령(39)
1	환경정책기본법 (‘90.8.1 제정, ‘07.5.17 4차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1.2.2 제정, ‘06.5.30 9차 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00.8.5 제정, ‘03.6.25 전문개정, ‘06.12.4 3차 개정)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94.12.22 제정, ‘00.2.3 전문 개정, ‘07.1.3 4 차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95.6.1 제정, ‘00.8.17 전문 개정, ‘07.7.4 4차 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5.6.10 제정, ‘00.8.30 전문 개정, ‘07.6.29 6차 개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관한규 칙 (‘98.8.11 제정, ‘07.6.27 4차 개정)
3	환경분쟁조정법 (‘90.8.1 제정, ‘97.8.28 전문개정, ‘07.5.11 3차 개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91.2.2 제정, ‘98.2.24 전문개정, ‘06.7.27 2차 개정)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91.2.2 제정, ‘98.2.28 전문개정, ‘06.7.24 3차 개정)
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1.12.31 제정, ‘07.1.3 2차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92.7.21 제정, ‘07.6.4 7차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92.8.8 제정, ‘07.6.7 5차 개정)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94.1.5 제정, ‘06.12.30 2차 개정)		
6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 치법 (‘91.5.31 제정, ‘99.12.31 전문개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97.6.26 제정, ‘00.6.27 전문개 정, ‘05.12.9 1차 개정)	
7	환경관리공단법 (‘83.5.21 제정, ‘03.5.29 3차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86.12.31 제정, ‘03.11.27 3차 개정)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90.8.1 제정, ‘04.12.31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91.1.28 제정, ‘05.12.28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91.2.2 제정, ‘05.12.30 전부개정, ‘06.7.4 1차 개정)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7.1.26 제정)		
10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 률 (‘04.3.22 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05.10.25 제정)	
1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04.12.31 제정, ‘06.9.27 1차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05.6.13 제정, ‘07.3.27 1차 개정)	
1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06.10.4 제정)		

번호	법률	대통령령	부령
13	자연환경보전법 ('91.12.31 제정, '04.12.31 전부개정, '07.5.17 1차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92.8.31 제정, '05.12.30 전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2.8.31 제정, '05.12.30 전부개정, '06.6.30 1차 개정)
14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99.12.31 제정, '03.12.30 1차 개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00.12.30 제정, '06.12.29 4차 개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00.12.30 제정, '06.7.4 3차 개정)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00.12.30 제정, '07.1.5 4차 개정)
15	자연공원법 ('80.1.4 제정, '01.3.28 전문개정, '06.1.3 2차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80.8.18 제정, '01.9.29 전문개정, '07.7.4 3차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92.5.19 제정, '01.10.17 전문개정, '07.6.29 4차 개정)
16	습지보전법('99.2.8 제정, '07.1.26 3차 개정)	습지보전법 시행령('99.8.7 제정, '07.7.24 3차개정)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99.8.7 제정, '07.7.26 3차 개정)
17	야생동·식물보호법 ('04.2.9 제정, '07.5.17 2차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05.2.7 제정, '05.9.14 1차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05.2.7 제정, '05.9.27 1차 개정)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03.1.23 제정, '05.5.31 1차 개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04.12.30 제정, '05.11.30 1차 개정)	
19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97.12.13 제정, '07.5.17 2차 개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98.6.20 제정, '04.6.25 1차 개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98.7.6 제정, '04.6.30 1차 개정)
2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06.3.24 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07.3.22 제정)	
21	대기환경보전법 ('90.8.1 제정, '07.4.27 전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91.1.28 제정, '96.8.31 전문개정, '06.12.21 10차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1.2.2 제정, '96.9.14 전문개정, '07.3.14 21차 개정)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 제정, '07.1.26 1차 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04.12.30 제정, '07.7.27 2차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04.12.31 제정, '07.6.28 2차 개정)
23	소음·진동규제법 ('90.8.1 제정, '07.4.11 전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91.1.28 제정, '05.12.26 8차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91.2.2 제정, '06.12.29 12차 개정)
2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96.12.30 제정, '03.5.29 전문개정, '06.12.30 3차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97.12.31 제정, '04.12.30 전문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98.1.26 제정, '04.5.28 전문개정, '06.3.13 2차 개정)
25	악취방지법 ('04.2.9 제정, '07.1.3 1차 개정)	악취방지법시행령 ('05.2.7 제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05.2.7 제정, '07.7.4 3차 개정)

번호	법률	대통령령	부령
26	수질환경보전법 (‘90.8.1 제정, ‘05.3.31 전부개정, ‘07.5.17 2차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91.1.28 제정, ‘06.3.31 전부개정, ‘07.7.4 2차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1.2.2 제정, ‘06.4.4 전부개정, ‘07.7.4 4차 개정)
2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99.2.8 제정, ‘05.12.29 2차 개 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8.6 제정, ‘05.9.30 3차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99.4.9 제정, ‘04.4.27 2차 개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99.8.7 제정, ‘01.4.17 1차 개정)
2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02.1.14 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02.7.13 제정, ‘05.9.30 2차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02.4.15 제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시행규칙(‘02.7.29 제정)
2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02.1.14 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2.7.13 제정, ‘05.9.30 1차 개정)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02.4.15 제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02.7.29 제정)
30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02.1.14 제 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7.13 제정, ‘05.9.30 1차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02.4.15 제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02.7.29 제정)
31	기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06.9.27 제정)		
32	수도법 (‘91.12.14 전문개정, ‘07. 4.11 전부개정)	수도법 시행령(‘92.12.9 전문개정, ‘06.6.29 7차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92.12.15 전문개정, ‘06.6.29 7차 개정) 상수원관리규칙 (‘92.12.15 제정, ‘06.6.29 5차 개정)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94.9.13 제정, ‘06.12.28 5차 개정)
33	하수도법 (‘66.8.3 제정, ‘06.9.27 전부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69.12.1 제정, ‘05.8.17 8차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71.6.15 제정, ‘05.9.6 6차 개정)
3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법률(‘91.3.8 제정, ‘02.12.26 4차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91.9.7 제정, ‘97.8.11 전문개정, ‘03.7.25 4차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91.9.9 제정, ‘97.9.18 전문개정, ‘06.7.4 7차 개정)

번호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35	먹는물관리법 (’95.1.5 제정, ’07.4.11 전부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95.5.1 제정, ’06.6.29 6차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95.5.1 제정, ’06.6.30 7차 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95.5.1 제정, ’06.6.29 8차 개정)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94.8.9 제정, ’03.6.18 전문개정, ’06.7.4 1차 개정)
36	토양환경보전법(’95.1.5 제정, ’07.5.17 4차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95.12.29 제정, ’05.6.30 3차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6.1.4 제정, ’06.7.4 5차 개정)
37	폐기물관리법 (’86.12.31 제정, ’91.3.8 전문개정, ’07.4.11 전부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87.4.1 제정, ’91.9.26 전문개정, ’07.1.5 9차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87.5.30 제정, ’96.2.5 전문개정, ’07.2.14 12차 개정)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2.12.8 제정, ’02.2.4 전문개정, ’07.5.11 6차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93.6.24 제정, ’02.12.18 전문개정, ’07.6.11 9차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3.7.31 제정, ’02.12.3 0 전문개정, ’07.6.29 7차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93.8.17 제정, ’03.4.3 전문개정, ’06.3.14 1차 개정)
3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 원순환에 관한 법률(’07.4.27 제정)		
4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률(’03.12.31 제정, ’06.12.28 2차 개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 행령(’04.12.31 제정, ’07.1.5 1차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5.1.19 제정, ’07.1.9 2차 개정)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5.1.5 제정, ’07.1.3 4차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6.30 제정, ’97.12.31 전문개정, ’07.7.4 4차 개정)	
4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 관한법률(’92.12.8 제정, ’07.5.17 4차 개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94.5.28 제 정, ’01.7.16, 4차 개정)	
43	한국환경자원공사법(’93.12.27 제정, ’03.12.30 1차 개정)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94.3.29 제정, ’04.6.11 1차 개정)	
4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00. 1.21 제정, ’05.12.29 1차 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0. 7.10 제정, ’06.6.15 1차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자부소관)(’98.2.28 전문개 정, ’07.2.28 19차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8.2.28 제정, ’07.6.1 19차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90.3.22 제정, ’06.7.4 3차 개정)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99.12.9 전문 개정)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 칙 (’95.1.14 제정, ’01.9.3 2차 개정)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계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검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효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키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3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3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9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증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헌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검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운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6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정책 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관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키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6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손해보험본부 2004. 9
-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손해보험본부 2004. 12
-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
험연구소 2005. 10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_____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8~10회/년) ·조사연구자료(3~5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8~10회/년) ·조사연구자료(3~5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414,4415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
 납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세종문고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이 기 형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전 보험개발원 해상보험팀장, 특종보험팀장, 화재해상팀장

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본부 본부장

현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kihlee@kiri.or.kr)

정책연구자료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 활용방안

발행일	2008년 3월	일
발행인	나 동 민	
편집인	나 동 민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400	
인쇄소	신우씨앤피	

ISBN 978-89-5710-056-1

定價 10,000원